

# 「해양 선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4.

Blue	관심
Yellow	주의
Orange	경계
Red	심각

□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7383호)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해양 선박사고(일반선박)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해양 선박사고(일반선박)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여객선과 어선을 제외한 일반선박 사고발생 등 위기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따른 상황 인지 및 보고·전파, 상황 분석·평가·판단, 조치사항 등 위기대응을 위한 절차·기준·요령과 각종 양식 보도자료 또는 담회문 예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해양선박사고에 대응하여야 한다.
- 다만, 해양선박사고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 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해양선박사고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해양선박사고가 발생하면 가급적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 목 차 -

I. 일반 사항

1. 목 적 ..... 1  
2. 적용 범위 ..... 1  
3. 관련 법규 ..... 2  
4. 용어 정의 ..... 4

II.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1. 위기 형태 ..... 7  
2. 전개 양상 ..... 7  
3. 위기관리 체계  
가. 종합체계도 ..... 8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 9  
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체계 ..... 11  
라. 우리기관의 대응체계 ..... 17

III. 위기관리 기본방향

1. 목 표 ..... 28  
2. 방 침 ..... 28  
3.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 29  
가. 대응개념 ..... 29  
나. 대응지침 ..... 29  
다. 판단 · 고려요소 ..... 30

4. 위기징후 감시  
가. 위기징후 목록 ..... 31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운용 ..... 32  
5. 위기 평가 ..... 34  
6.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가. 위기경보 수준 ..... 35  
나. 위기경보 절차 ..... 36  
7. 비상근무체계  
가. 비상대응기구 구성요령 ..... 39  
나. 비상대응기구 근무체계 ..... 39  
다. 정기보고 및 상황점검회의 ..... 40  
라. 비상대책반 비상근무체계 및 운영 ..... 41  
마. 상황보고 체계도 ..... 42

IV.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해양 선박사고(일반선박)

1. 관심  
가. 상황 ..... 44  
나. 조치사항 ..... 44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50  
라. 유관기관 임무와 역할 ..... 51  
2. 주의  
가. 상황 ..... 53

- 나. 조치사항 ..... 54
-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61
- 라. 유관기관 임무와 역할 ..... 62
- 3. 경계
  - 가. 상황 ..... 64
  - 나. 조치사항 ..... 64
  -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72
  - 라. 유관기관 임무와 역할 ..... 73
- 4. 심각
  - 가. 상황 ..... 75
  - 나. 조치사항 ..... 75
  -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82
  - 라. 유관기관 임무와 역할 ..... 83

**V.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 1. 발생상황 I
  - 가. 상황 ..... 87
  - 나. 조치사항 및 절차 ..... 88
  -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100
  - 라. 유관기관 임무와 역할 ..... 101

**VI. 기관대응수칙**

- 1.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 106
- 2.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 선박사고 대응 프로세스 ..... 107

- 3.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 선박사고 대응 주요 협업기능 ..... 108
- 4. 해양 선박사고 관계기관 주요 임무 ..... 109
- 5. 비상연락망 ..... 110

**VII. 부 록**

**VII. 부 록**

- 1. 사고보고서 ..... 113
- 2. 자체위기평가회의(상황판단회의) 보고서 및 작성요령 ..... 114
- 3. 위기경보 발령문 ..... 115
- 4. YGPA 비상대책반 구성 공문 예시 ..... 116
- 5. 언론브리핑 문안 ..... 117
- 6. 위기상황 대국민 홍보·전파체계 ..... 118
- 7. 주요사고 사례 ..... 130
- 8. 영상회의 시스템 ..... 131
- 9. 언론 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 133
- 10.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 공관 상황전달 체계 ..... 157
- 11. 중앙수습지원단 표준편제와 임무 ..... 159
- 12.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해양선박사고) ..... 160
- 1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관 ..... 162
- 14.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163
- 15. 소속기관 비상연락망 ..... 168
- 16.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169
- 17. 재난현장 대피시 안전취약 계층 특성별 대피 고려사항 ..... 180
- 18. 선박사고 발생 시 대피시설 ..... 195

## 【제 · 개정 이력】

일자 (승인)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유	담당자	협의 기관
'14.11.30		제정	물류기획실	
'15.3.09.	· 매뉴얼의 기본 근거 수정 · 목차 일부 제목 수정 · 법적근거 수정 · 위기경보 발령절차 및 체계 수정 · 종합체계도 수정 ·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대응체계 수정	매뉴얼의 기본 근거 수정 대응체계 수정	물류기획실	
'16.07.21.	· 종합체계도 수정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일부 수정 ·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 수정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수정	「정부조직법」 개정.시행(2013. 3. 23)에 따라 보고체계도 등 개정	물류기획실	
'17.08.08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수정	비상연락망 수정	물류기획실	
'18.01.26.	· 기관대응수칙 변경 · 해양선박사고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수정	실무매뉴얼 반영	물류기획실	
'19.12.	· 해양수산부 실무매뉴얼 반영	실무매뉴얼 반영	안전보안실 (조윤석, 황수범)	
'20.03.06.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수정	비상연락망 수정	안전보안실 (박정철, 황수범)	
'20.03.10.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수정	해양수산부 표준매뉴얼 비상연락망 변경 내용 반영	안전보안실 (박정철, 황수범)	
'20.05.31.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수정	해양수산부 표준매뉴얼 비상연락망 변경 내용 반영	안전보안실 (박정철, 황수범, 장영진)	
'20.10.30.	· 관련 법령, 해양수산부 직제, 비상연락망 등 현행화	해양수산부 실무매뉴얼 변경 사항 반영	안전보안실 (황수범 장영진)	
'20.12.03.	· 대피시설 추가	매뉴얼 정기점검에 따른 개정	안전보안실 (황수범 장영진)	
'20.12.28.	· 적용범위, 현장수습 활동, 기관별 임무 및 역할 등	표준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안전보안실 (황수범 장영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 관리과

일자 (승인)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유	담당자	협의 기관
'21.04.09.	· 적용 범위 현장 수습활동, 기관별 임무역할, 현행화 및 자구 수정	표준 및 실무매뉴얼 개정 사항 반영	안전보안실 (황수범 장영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 관리과
'21.05.07.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도 현행화	부서명 현행화	안전보안실 (황수범 장영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 관리과
'22.04.08.	· 부서명 현행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현행화	재난안전실 (나승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 관리과

# I . 일반사항

## I . 일반사항

### 1 목 적

본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해양 선박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해양 선박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근거로 여객선과 어선을 제외한 일반선박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위기대응 절차 및 조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통하여 조기에 사고를 수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 적용 범위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 1) 선박(여객선과 어선을 포함한다)이 충돌, 접촉, 좌초, 전복, 침몰, 화재 및 폭발 등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2) 유조선, 케미컬 운반선, LPG 운반선 등 위험물 운송선박에 적재된 화물 등의 폭발·화재 등으로 선박 등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3) 그 밖의 해양 선박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재난

### 3 관련 법규

나. 내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에 대한 본부 각 부서,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위기관리 활동

\* 접경해역(일본-중국 등과의 접경해역과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조난 등으로 선박 및 사람이 북측 수역으로 이동·표류할 가능성이 있거나, 북측수역에서 발견되었을 때 매뉴얼상의 기관별 임무·역할 준용 가능

다. 해양 선박사고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로 전개되거나 전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매뉴얼 및 대규모 해양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중 어느 매뉴얼을 적용할 것인지와, 통합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여부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라. 어선 사고의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는 사고 주관부서 담당 과장이 수행하고, 세부 위기관리 활동은 어선의 등록·면허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한 선박사고 재난에 대한 주관부처(외교부)의 협조 요청시, 해양수산부 지원사항에 대하여 본 매뉴얼을 준용 가능

바. 그 밖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해양 선박사고 발생 시에는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을 적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7479호)

나. 해사안전법(법률 제16568호)

다. 선박법(법률 제16160호)

라. 어선법(법률 제16568호)

마. 낚시 관리 및 육성법(법률 제17653호)

바. 해운법(법률 제17065호)

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07호)

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05호)

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

차.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88호)

카.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571호)

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26호)

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법률 제16511호)

## 4 용어 정의

구 분	내 용
국가위기	국가의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비상상황	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로 일상적 대응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나 특별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 진행양상과 대처내용에 따라 결과수습형, 완만진행형, 순간증폭형으로 구분되며, 위기경보 발령과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위기상황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수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결과수습형	상황 자체가 이미 대규모 피해로 발생한 유형 재난의 전조가 없어 「관심」단계 불필요 바로 「심각」단계 발령
완만진행형	상황이 서서히 진해되면서 심각성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유형 「관심」부터 「심각」까지 순차적 또는 상황변화에 따라 대응
순간증폭형	발생 초기에는 저강도 수준이었으나, 대응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급변하면서 중대재난으로 귀결될 수 있는 유형 2차 피해가 발생 가능한 폭발점 확인 및 「심각」단계 발령
위기관리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 해양수산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별표1의3)에 따라 「해양 선박사고」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임
재난관리 책임기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 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2)에 따라 해양수산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립수산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선급
유관기관	해당 재난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실무기관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능·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구 분	내 용
재난관리 단계	예방 :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재난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대비 : 재난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재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재난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대응 : 재난발생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복구 :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재난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  ※ 수습 : 재난의 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
위기경보 수 준	관심(Blue) :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 * 징후 감시활동, 비상연락망 등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 점검
	주의(Yellow) :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 * 정보수집 및 정보공유 활동을 강화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가동
	경계(Orange) :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 조치계획 점검 및 관련기관과 함께 인적·물적 자원 동원 준비
해 양 선박사고	심각(Red) :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위기의 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 *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역량최대 투입, 위기발생에 즉각적 대응태세 유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요령」 제13조제1항1호에 규정된 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 폭발, 침몰, 항방불명, 기관손상, 추진축계 손상, 조타장치 손상, 속구손상, 침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인명 손실이나 선박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해 및 내 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해역
배 타 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해역

## Ⅱ.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 Ⅱ.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 1 위기 형태

가) 다음 유형의 해양 선박사고(의도적·비의도적)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대규모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 경미한 선박 간 충돌 및 부두 접촉 등으로 인한 경상자 발생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수습이 가능하거나 위험성이 낮은 사고는 제외

- 1) 유조선, 케미컬선 등 위험물 운반선의 화재·폭발 등 사고
- 2) 선박 대 선박 또는 선박 대 해상부유물 등과의 충돌, 접촉 등 사고
- 3) 컨테이너, 원목 등 선박 적재화물의 유실, 유출 사고
- 4) 그 밖에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선박사고

☞ 상기 재난 유형에 준하는 사항은 재난의 유형, 상황, 확산 속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

### 2 전개 양상

◆ 선박의 충돌, 접촉, 좌초, 전복, 침몰,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 발생

◆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좌초·침몰·전복된 선박이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



◆ 다수의 인명피해로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 초래

◆ 국내·외 해상 여객 및 화물 수송에 심각한 차질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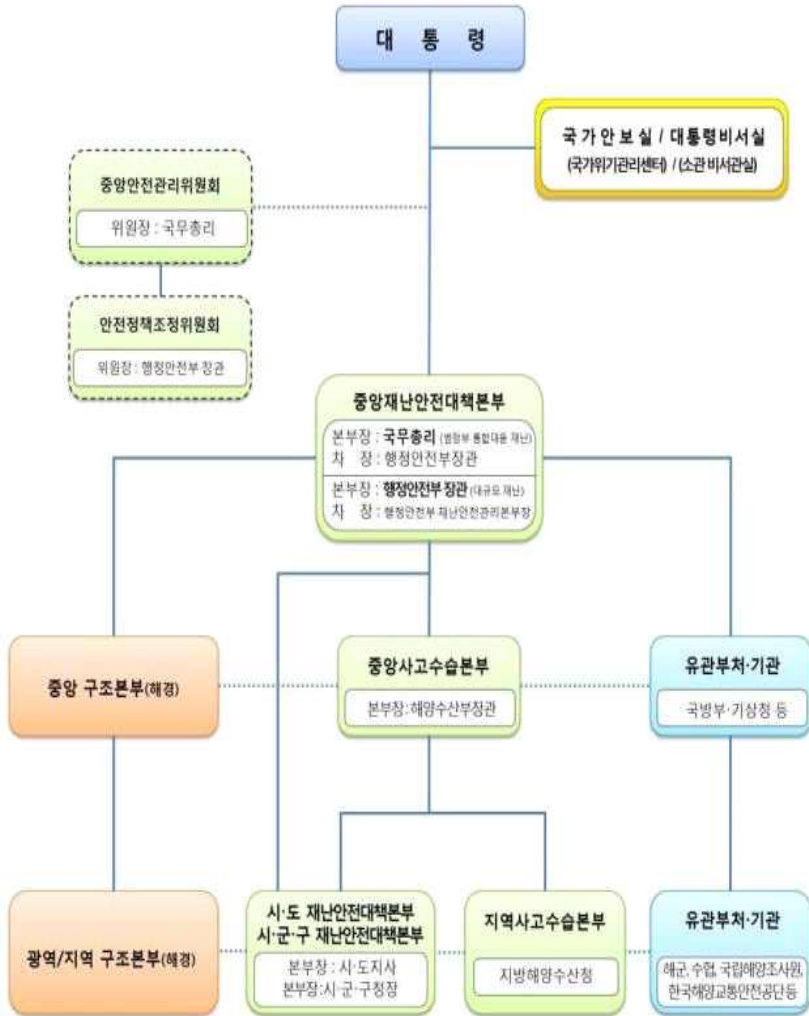
◆ 선박의 입·출항, 선적 및 하역 등 항만운영 마비

◆ 국가 이미지 실추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



### 3 위기관리 체계

#### 가. 종합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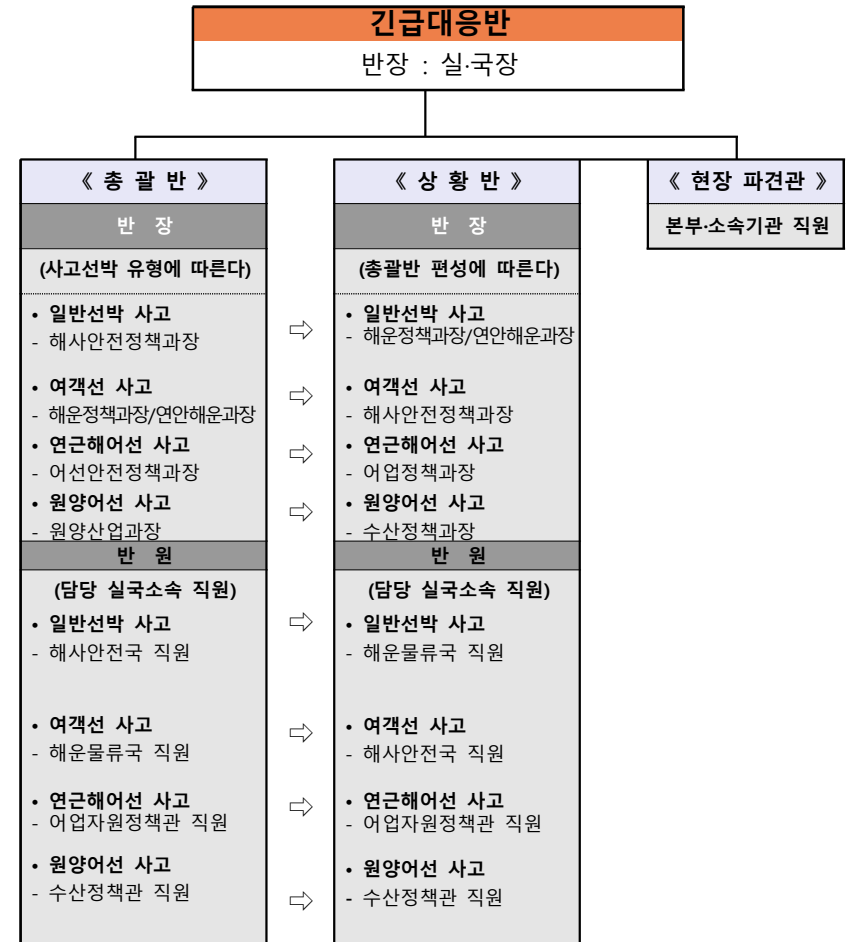
####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구 분	임무와 역할
국 가 안 보 실 (국 가 위 기 관 리 센 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li> <li>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li> <li>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li> </ul>
대 통 령 비 서 실 ( 소 관 비 서 관 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 분야별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li> <li>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li> </ul>
중 앙 안 전 관 리 위 원 회 ( 국 무 총 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li> <li>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li> </ul>
중 앙 재 난 안 전 대 책 본 부 ( 국 무 총 리 또 는 행 정 안 전 부 장 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li> <li>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li> <li>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li> <li>재난분야 재난징후 목록 및 상황정보 종합·관리</li> <li>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건의</li> <li>재난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li> <li>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li> <li>※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음</li> <li>주관기관 요청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조치 등</li> </ul>
지 역 재 난 안 전 대 책 본 부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재난상황 총괄 및 사고수습체계 구축</li> <li>재난현장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 설치·운영(시·군·구 단체장)</li> <li>지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과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및 업무협조 요청</li> <li>생활안정지원, 응급복구, 의료·교통, 물자지원 등(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li> <li>지역사고수습본부와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 등</li> </ul>

구 분	임무와 역할
중 앙 사 고 수 습 본 부 (해 양 수 산 부 장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 조치 및 사고수습</li> <li>- 재난·위기상황을 인근해역 운항선박 또는 종사자에 항행 경보·안전문자 등을 통해 전파</li> <li>* 온라인 통신 불가 시, 소속·유관기관 및 지자체를 통해 여객선터미널, 항 포구 등에 오프라인 전파요청(방송·전광판 등)</li> <li>○ 해양 선박사고 수습 총괄 조정 및 언론 대응</li> <li>○ 피해상황 조사 및 종합상황 관리</li> <li>○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li> <li>○ 재난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지휘</li>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수습지원단 파견 요청(필요 시)</li> <li>○ 선체인양 등 환경 원상복구 대책 강구(보상관련)</li> <li>○ 선박사고 원인규명 특별조사반 운영</li> <li>○ 피해민 지원 대책 강구 등</li> <li>○ 도서민 여객선 이용 또는 해상 화물운송 제한 시 관계부처·지자체 협의를 통한 추가선박 투입</li> </ul>
지 역 사 고 수 습 본 부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관할 해역 재난 피해상황 조사 및 종합상황 관리</li> <li>○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현장 임무 수행 등</li> </ul>
중 앙 구 조 본 부 (해 양 경 찰 청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li> <li>○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 활동의 역할 조정과 지휘·통제</li> <li>○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 등</li> </ul>
광 역 구 조 본 부 (지 방 해 양 경 찰 청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li> <li>○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 협력기관과 수난 구호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 조정과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 등</li> </ul>
지 역 구 조 본 부 ( 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상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조대 편성 및 운영</li> <li>○ 응급환자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긴급이송을 위한 구급대 편성·운영</li> </ul>
중 앙 수 습 지 원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대책본부장 등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권고 또는 조언</li> <li>○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및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li> </ul>

## 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체계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전 대응 체계(긴급대응반)



1.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위기경보 '경계' 수준 발령 즉시 총괄반 담당부서는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긴급 대응반 구성·운영
2. 상황에 따라 실시반 구성(복구대책반, 공보지원반, 사고조사반, 현장파견관 등) 및 인력 등의 운영은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3. 마린나선박의 사고 및 항만내 사고에 대해서는 필요시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각각 해양정책관(해양레저관광과) 및 해운물류국(항만운영과)에서 총괄반·상황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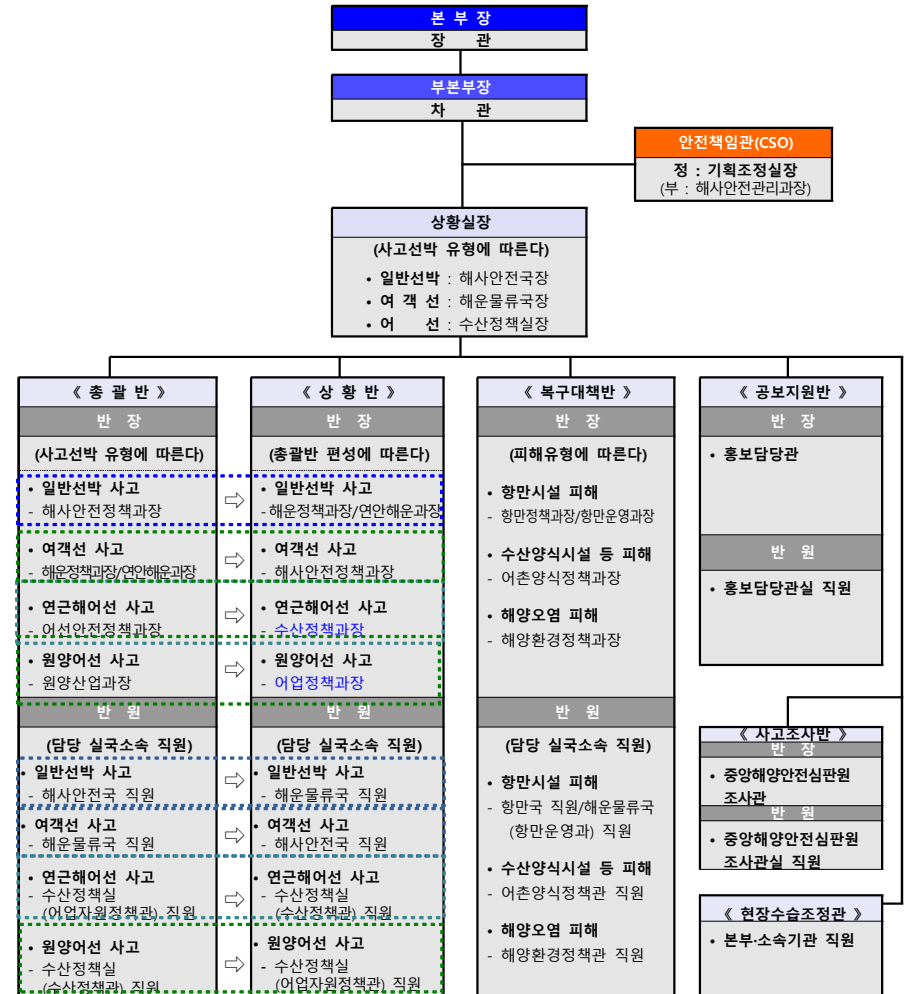
○ 반별 임무 및 역할

구분	임무와 역할
총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대응반 운영 총괄, 장·차관, 안전책임관 및 반장 지시사항 관리 및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운영</li> <li>○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시 지휘</li> <li>○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li> <li>○ 재난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휘</li> <li>○ 해양경찰청 등 긴급구조기관과의 업무지원·협조</li> <li>○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li> </ul>
상황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정보 수집·전파</li> <li>○ 사고수습 진행상황 파악</li> <li>○ 일일상황 보고</li> <li>○ 지역사고수습본부와의 업무연락 등</li> </ul>
현장 파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가족에 사고수습 현황 설명 및 애로·건의사항 청취</li> <li>○ 해수부-지자체-관계기관 간 협조 조율</li> </ul>

\* 반별 임무 및 역할이 지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관장사무를 기준으로 소관 부서를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소관 부서를 정할 수 있다.

2) 중앙사고수습본부

(가) 구성



1.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결정 즉시 총괄반 담당부서는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수습본부를 구성
2. 피해양상 및 수습소요에 따라 실시반 또는 현장반 추가확대 편성이 필요하며, 타 실·국의 지원근무, 총괄상황반 통합운영, 반장 직위 격상 등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반별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마리나선박의 사고 및 항만내 사고에 대해서는 필요시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각 해양정책관(해양레저관광과) 및 해운물류국(항만운영과)에서 총괄반·상황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나) 반별 임무 및 역할

구분	임무와 역할
총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총괄, 본부장 등 지시사항 관리 및 상황판단회의(자체위 기평가회의) 운영</li> <li>○ 지역사고수습본부 지휘</li> <li>○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의 요청</li> <li>○ 재난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휘</li>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운영을 요청(필요시)</li> <li>○ 중앙구조본부와의 업무협조</li> <li>* 선박·선원정보 제공,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 지원, 핫라인·함정영상 및 영상회의를 통한 수습상황 공유</li> <li>○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li> </ul>
상황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정보 수집·전파</li> <li>○ 사고수습 진행상황 파악</li> <li>○ 일일상황 보고</li> <li>○ 지역사고수습본부와의 업무연락 등</li> </ul>
복 구 대책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경감 및 2차사고 예방 조치</li> <li>○ 복구 및 의료 지원 업무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명구조 및 구호지원, 사상자 후송 및 응급조치 지원</li> <li>- 피해자 및 유족 방문 위로, 장례절차 지원</li> </ul> </li> <li>○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피해 배·보상 대책 마련</li> <li>○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지원 등</li> </ul>
사 고 조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사고 원인 조사 실시</li> <li>○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지원 등</li> </ul>
공 보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자료 수집·배포 등 공보업무 총괄</li> <li>○ 언론 동향 보고 및 대응</li> <li>○ 언론기관 업무협조(브리핑, 인터뷰 등) 등</li> </ul>
현장수습 조정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가족에 사고수습 현황 설명 및 애로·건의사항 청취</li> <li>○ 해수부-지자체-관계기관 간 협조 조율</li> </ul>

\* 반별 임무 및 역할이 지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관장사무를 기준으로 소관 부서를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소관 부서를 정할 수 있다.

\* 반별 임무 및 역할은 상황에 따라 총괄반의 주도하에 탄력적인 조정·운영이 가능하다

### 3) 대응 단계별 기관장의 임무와 역할

#### (가) 개요

- 해양 선박사고 초기상황 확인 및 조치사항 지시
- 초기대응 점검 및 상황판단회의 주재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지시 및 사고수습 총괄 지휘
- 중대본 협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지역대책본부장 지휘
  -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장이 지명
  -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시·도 대책본부 및 시·군·구 대책본부 운영시 본부장 포함)을 지휘할 수 있음

#### (나) 재난발생 단계

- 초기상황 확인
  - 피해현황 및 현장 대응상황 파악
  -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경찰청, 국방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외교부장관(해외재난시)과 유선 통화 추가상황 파악
- 조치사항 지시
  - 현장지휘체계 확립
  - 인명피해 최소화방안 강구
  - 2차 피해 확산방지대책 강구

#### (다) 초기대응 및 중수본 운영 단계

- 초기대응 점검 및 조치사항
  -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결과점검
  - 사고현장 방문 및 대응상황 점검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지시 및 사고수습 총괄지휘
  - 사고현장 방문 및 수습상황 점검
  - 필요시 현장수습조정관 임명·파견
- 대국민 홍보 등
  - 언론보도 및 대국민 홍보 총괄
  - VIP 등 방문시 수행 및 사고수습상황 브리핑
-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주재
  - 상황보고 청취 및 자체평가회의 주재
  - 중수본·지수본·지대본 가동 현황 점검
  -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 (라) 범정부적 총력대응 단계

- 중수본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현황 점검 및 대책 지시
  - 언론브리핑 및 대국민 담화문 발표
- 중대본 협조
  - 중대본부장·지대본부장·지수본부장 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및 지원필요사항 검토·지원
  - 중앙긴급통제단 가동(헬기·수색구조 등)
  - 피해자 및 사고관계자 심리상담 지원
  - 인력, 장비 부족분 조달 요청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 VIP 등 현장방문시 수행 및 사고수습상황 브리핑

(마) 수습·복구단계

- 선박사고 사후영향평가 및 재난복구 협력 총괄 지휘
- 위기경보 및 중수본 해체 결정
- (필요시) 현장방문 및 수습상황 점검
- VIP, 총리 상황보고, 현장방문시 수행
- 중대본 및 유관기관 사고수습 협력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 참석
- 재해지역 재정적 지원 검토 및 응급복구, 재난구호 필요 사항 지원 지시

라. 우리 기관의 대응체계

(1) 비상대응반(비상대책반 가동 전 초동대응)

□ 선박사고 발생 시 지역사고수습본부에서 요청하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역사고수습본부 YGPA 대응반으로 참여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 내에는 상황관리반(재난안전실 2명)을 별도로 구성·운영

구분	반장 및 반원	임무와 역할
YGPA 대응반 (지역사고 수습본부)	반장 : 재난안전실장 (여수지사장) 반원 : 소속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고수습본부 요청사항 지원 및 전달</li> <li>○ 유관기관 대책회의 참석 및 참석결과 보고</li> <li>○ 사고선박 선석배정 등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항만운영</li> <li>○ 방제자재 확보 및 방제지원</li> </ul>

※ YGPA 대응반장은 사고 발생지역이 광양항(광양지역) 내 사고일 경우 재난안전실장이, 광양항(여수지역) 및 여수항 내 사고일 경우 여수지사장이 담당

□ 지역사고수습본부가 구성되지 않는 항내 오염사고 중 항만시설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가) 조직도



(나) 구성 및 가동 기준

구분	내용
가동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오염사고 발생가능성 인지</li> <li>※ 피해상황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필요시 상황판단회의 개최)</li> <li>- 여수·광양항의 피해 발생으로 상황관리 및 긴급 초동대응이 필요한 경우</li> </ul>
설치 장소	○ 여수광양항만공사 1층 재난안전센터
총괄 책임자	○ 사장
대응반 인원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장 : 재난안전실장</li> <li>○ 반원 : 재난안전실 실원 2명</li> </ul>
운영·근무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시 재난 상황 모니터링</li> <li>○ 발생 직후부터 비상대책반 구성 전까지 운영</li> </ul>
해제 기준	○ 해양오염방제작업이 종료되거나 해양수산부, 해경청 등이 위기경보 해제 결정하는 경우

(다) 임무 및 역할

단 계	구 분	내 용
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상황 접수·전파	○ 발생 상황 접수 ○ 해양수산부, 여수청 등 유관기관 상황 전파
	상황 파악·보고	○ 여수·광양항 유관 업·단체 피해상황 파악 요청 ○ 해양수산부 등에 초기상황 보고 및 전파
초기 대응	사고수습 운영 준비	○ 비상대책반 가동 및 실무반 편성 전파 ○ 전임직원 비상근무 발령 및 24시간 대응체계 가동
	피해현황 파악	○ 현장대응사항 파악 ○ 장관 특별지시사항 확인 및 전파
	협업	○ 유관기관과 대규모 해양오염 대응 관련 상호 협조체계 가동

○ 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단계

- 위기상황 접수 시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보고
- 해양수산부, 여수청 및 유관기관, 업·단체에 재난 상황 전파
  - \*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유·무선(SNS 포함)으로 보고 및 전파
- 여수·광양항 유관기관, 업·단체 피해현황 파악
- 인명·시설물 피해현황 및 시설물 운영 여부 확인
- 피해현황 파악 후 사장 및 해양수산부 등에 보고

※ 피해현황 보고 내용  
- 개요, 피해현황, 초동대응 현황, 향후 대책 등

○ 초기대응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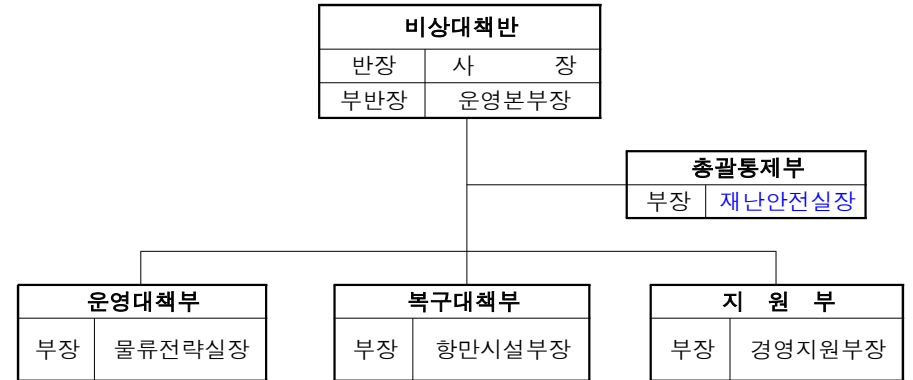
- 비상대책반 가동 준비 및 상황관리반 편성 전파
- 해양수산부의 위기경보 발령시 및 관할 구역내 대형유조선 충돌, 침몰,

좌초사고 및 해양시설 파손 등 해양오염사고 위기징후가 있을 경우

-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소속 및 산하기관에 비상대책반 가동 요청
- 해당 부서 조치사항 확인
- 사장 지시사항 확인 및 전파
  - \* 재난 대응 관련 사장 지시사항을 확인하여 하달 후 조치사항 확인
- 유관기관과 재난 대응 관련 상호 협조체계 가동
  -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상황실에 피해지역 전기, 가스 공급 차단의 필요성 파악 및 공급 차단 요청
  - \*\* 해경·경찰·군과 협의하여 피해지역 통제와 안전활동 지원 요청
- 기타 유관기관과 재난대응 관련 협조

(2) 비상대책반

(가) 조직도



- 설치 장소 : 여수광양항만공사 1층 광양항 재난안전센터

※ 현장대응부장은 피해발생이 광양지역인 경우 물류전략실장이, 여수지역인 경우 여수지사장이 담당

※ 해양수산부가 사고수습본부 설치 시 비상대책반체제로 전환

(나) 가동조건 및 해제기준

구 분	내용
가동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동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에서 재난대책본부가 가동한 경우</li> <li>- 광양항내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설치·운영</li> <li>-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 사고수습본부 운영과 연계하여 설치</li> </ul> </li> <li>○ 사고지역내 유관기관 회의를 통한 현장 지원대책 수립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일 1~2회 회의개최)</li> <li>○ 반장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구역에서 인명 및 시설피해가 발생하여 긴급 초기대응 및 수습 복구, 상황 관리가 필요한 경우</li> <li>※ 피해상황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li> </ul> </li> </ul>
설치 장소	○ 여수광양항만공사 1층 재난안전센터
총괄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장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li> <li>○ 총괄통제부장 : <b>재난안전실장</b></li> </ul>
실무반 인원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장 : 해당부장</li> <li>○ 반원 : 각 실무반별 부서별 3명</li> </ul>
운영근무 및 상황보고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및 근무시간 : 24시간(09:00 ~ 익일 09:00)</li> <li>○ 상황보고 시간 : 1일 2회(09:00/17:00)</li> <li>※ 보고시간은 변동 가능</li> </ul>
축소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비상대책반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 해양수산부 중앙안전대책본부 축소 운영되는 경우</li> </ul>
해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해제되는 경우</li> <li>○ 여수광양항만공사 차원에서 추가적인 상황관리 및 수습·복구 등의 재난대응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li> </ul>

(다) 임무 및 역할

구분	반장 및 반원	임무와 역할
<b>총괄 통제부</b>	부장 : <b>재난안전실장</b> 부원 : 소속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수습반 총괄 지휘 및 반장 보좌</li> <li>○ 비상대책반 설치 및 인원 구성</li> <li>○ 유관기관 대책회의 참석 및 참석결과 보고</li> <li>○ 필요시 유관기관에 지원 요청</li> </ul>
<b>운영 대책부</b>	부장 : 물류전략실장 (여수지사장) 부원 : 물류전략실, 물류단지부, <b>신성장사업실</b> , 여수지사 소속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의 사고수습 조치사항 파악 및 보고</li> <li>○ 인명피해시 사상자 후송 및 응급조치 지원</li> <li>○ 사고원인, 피해상황 조사 및 분석 지원</li> <li>○ 오염사고 발생 시 상황파악 및 보고</li> </ul>
<b>복 구 대책부</b>	부장 : 항만시설부장 부원 : 마케팅부 및 개발사업본부 소속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시설(부두, 교각) 피해발생시 복구 지원</li> <li>○ 침몰선박 관리 지원</li> <li>○ 표지시설 피해발생시 복구 지원</li> <li>○ 소관업무 관련 피해 발생시 복구 지원 등</li> </ul>
<b>지원부</b>	부장 : 경영지원부장 부원 : 경영본부 소속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대책반 행정지원</li> <li>○ 필요시 현장 언론취재지원센터 설치</li> <li>○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등 위기대응 홍보 등</li> </ul>



(3) 대응체계

(가) 비상대책반장의 임무 및 역할

단 계	내 용
초기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명 및 시설물 피해 최소화 우선 실시 지시</li> <li>○ 신속하고 철저한 오염 피해상황 파악 지시</li> <li>○ 피해현황 및 현장조치 진행사항 확인</li> <li>○ 필요시 현장방문 및 수습상황 점검</li> <li>○ 지시사항 하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명 구조·구급 우선 실시</li> <li>- 신속한 시설물 점검 및 복구계획 수립·진행</li> <li>- 항만운영 정상화 계획 수립</li> <li>- 현장 지휘체계 확립(현장파견관 파견 등)</li> </ul> </li> </ul>
비상대책반 운영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확산 방지 및 조기수습 지시</li> <li>○ 유관기관에 긴급 수습 협조·지원 당부</li> <li>○ 2차 피해 방지 지시</li> <li>○ 항만공사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파악 및 조치 지시</li> </ul>
수습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한 피해복구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적 지원 및 응급복구, 재난구호 등 필요사항 지원 지시</li> </ul> </li> <li>○ 필요시 현장방문 및 복구상황 점검</li> </ul>

(나) 총괄통제부장의 임무 및 역할

단 계	내 용
초기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시 유관기관과 유선으로 추가상황 파악 지시</li> <li>○ 사장 지시사항 확인 및 각 실무반별 내용 하달</li> </ul>
비상대책반 운영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대책반 상황실 총괄 운영</li> <li>○ 피해상황 고려하여 실무반 축소 및 통합 등 조정 지시</li> </ul>
수습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복구 관련 활동 총괄 지휘</li> <li>○ 응급복구 등 수습상황 점검 및 필요시 추가 조치 지시</li> </ul>

(다) 총괄통제부의 임무 및 역할

단 계	내 용
비상대책반 운영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반 피해현황 집계 및 보고</li> <li>○ 긴급점검 결과 종합 및 응급복구 등 대응조치사항 확인</li> <li>○ 비상대책본부의 요청사항 대응</li> <li>○ 재난현장에 현장 파견관 파견</li> <li>○ 13가지 협업기능에 해당하는 유관기관과 상호 협업</li> <li>○ 피해상황을 고려, 비상대책본부 실무반별 임무 조정 및 보고·전파</li> </ul> <p>※ 현장파견관 임무와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현장 대응사항 파악</li> <li>- 피해가족 애로사항 청취</li> <li>- 재난대응 상황에 대해 대민 설명(수색·구조 및 방제 상황 등)</li> <li>- 기타 지원 및 협조사항 검토 및 본부차원에서 지원해야할 사항 확인 후 보고</li> </ul>
수습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유관기관과 사고수습 협력체계 가동</li> <li>○ 유관기관 및 업·단체에 응급복구, 재정적 지원, 재난구호 등 수습복구 관련 필요사항의 지원 방안 검토</li> <li>○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비상대책본부 해제 검토</li> <li>○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제 시 YGPA 비상대책반 해제 검토</li> </ul>

(라) 운영대책부의 임무 및 역할

단 계	내 용
초기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양항 유관 업·단체로부터 항만운영상 피해 등 정확한 피해현황 파악 후 총괄부로 보고</li> </ul>
비상대책반 운영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부에서 재난대응 관련 정보 요청시 해당 내용 확인 후 보고</li> <li>○ 비상대책반 요구사항 확인 후 상황반으로 보고(상황에 따라 직접 보고)</li> <li>○ 항만운영 관련 확인 사항 점검</li> <li>○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항만운영 정상화 계획 수립 및 지원</li> <li>○ 에너지 공급시설 피해복구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li> <li>○ 항만 인근 임항교통시설 피해복구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li> <li>○ 상황을 고려하여 여수청, 교통관제센터와 협조하여 선박 대피 및 입·출항 통제하도록 협조요청</li> <li>○ 육상·해양오염 피해현황 파악 후 상황반으로 보고</li> <li>○ 오염발생 시 재난현장 및 환경정비 협업기관에 재난관리물자 지원 요청</li> <li>○ 와 협업</li> <li>○ 대규모 통신시설 피해복구 관련 협업</li> </ul>
수습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양항 유관 업·단체 피해복구금액 종합 후 상황반으로 보고</li> <li>○ 피해 시설물에 대한 복구계획 등 관련 세부계획 수립 후 상황반으로 보고</li> <li>○ 비상대책반 실무반을 축소하거나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 축소 및 해제 진행</li> </ul>

(마) 지원부의 임무 및 역할

단 계	내 용
초기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 파악</li> </ul>
비상대책반 운영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대책반 실무반 편의 지원 및 기타 행정 지원</li> <li>○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시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요청('기관대응수칙 협업기능' 참고)</li> <li>○ 필요시 해양수산부 민간협력과 또는 인천시와 협조하여 재난 발생지역으로 자원봉사자 지원 요청</li> </ul>
수습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대책반 실무반을 축소하거나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 축소 및 해제 진행</li> </ul>

(바) 복구대책부의 임무 및 역할

단 계	내 용
초기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운영상 피해 등 정확한 피해현황 파악 후 총괄상황반으로 보고</li> </ul>
비상대책반 운영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반에서 재난대응 관련 정보 요청시 해당 내용 확인 후 보고</li> <li>○ 비상대책본부 요구사항 확인 후 상황반으로 보고(상황에 따라 직접 보고)</li> <li>○ 피해를 입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설물 정밀점검 후 결과 확인</li> <li>○ 대응조치사항 확인·점검</li> <li>○ 지역합동조사단 인원 1명 파견(요청시)</li> </ul>
수습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양항 유관 업·단체 피해복구금액 종합 후 상황반으로 보고</li> <li>○ 피해 시설물에 대한 복구계획 등 관련 세부계획 수립 후 상황반으로 보고</li> <li>○ 비상대책반 실무반을 축소하거나,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 축소 및 해제 진행</li> </ul>

(사) 지원부(홍보)의 임무 및 역할

단 계	내 용
초기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 파악</li> </ul>
비상대책반 운영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대책반 상황반 지원 및 기타 행정 지원</li> <li>○ 언론기관의 취재에 대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li> <li>○ 언론기관 취재 협조,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li> </ul>
수습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대책반 실무반을 축소하거나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 축소 및 해제 진행</li> </ul>

###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 1 목 표

- 가. 지속적 감시체계 구축 등 사고 예방활동 강화로 해양 선박사고로 인한 재난 발생 사전방지
- 나. 해양 선박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가동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2 방 침

- 가. 해양 선박사고 발생 대비태세 확립
  - 1) 해양 선박사고 관계 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유지
  - 2) 사고대응 물자·장비 점검·정비 및 자재 확보, 비축
  - 3) 재난대응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
- 나. 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 및 수습체계 강화
  - 1) 사고발생 초기 상황파악, 보고 및 전파 체계 명확화
  - 2) 정확한 상황판단으로 기관 간 지휘체계 일원화
  - 3)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유관기관, 업·단체 등의 재난역량 총동원
  - 4) 사고원인 조사, 재발방지 대책 및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시행
- 다. 신속·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 불안 해소
  - 1) 신속한 상황파악 및 정확한 정보 공개로 국민 신뢰 확보
  - 2) 유언비어 등으로 인한 국민 동요 및 심리적 공황 방지

### 3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 가. 대응개념

- 1) 목표 :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인명·선박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예방
- 2) 대응방향
  - (가) 선박사고 대응체계 가동을 통한 피해최소화
  - (나) 사고에 따른 2차 피해 예방활동 전개

#### 나. 대응지침

- 1) 사고 접수시 가능한 6하 원칙에 따라 사고개요, 피해상황, 오염여부, 긴급조치 상황 등을 신속히 파악하되, 보고서 수정, 단계별 보고 등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
- 2) 신속한 수습을 위해 지방해양경찰서, 국방부,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인근 자치단체 등 가용인력과 장비 총동원 태세 항시 유지
- 3) 지휘부의 의사결정 및 상황판단을 위한 신속·정확한 상황보고 체계 유지
  - \* 상황보고에 있어서의 신속성과 정확성의 균형을 유지하여 적절히 조치
- 4) 수색·구조활동 지원, 항행장애물 제거·긴급수거계획 검토, 2차 피해 확산 방지 및 사고수습 진행상황 보고·전파체계 유지하고 지시사항 이행 및 선박인양, 배·보상 방향 검토 등 추가조치 현장조치 이행

#### 다. 판단/고려요소

- 1) 사고선박의 유형(연안·국제여객선/일반화물선/화학물질운반선/어선 등) 및 규모 등 선박제원, 선적국, 보험가입 여부 등
- 2) 사고전개(피해) 양상
  - \* 인명피해 발생, 화물해상 유출, 화학물질 종류 및 유출량, 유해성, 확산속도, 확산범위, 양식장 또는 항만오염 가능성 등
- 3) 인력·장비 등 지원 가능한 수습자원 및 수습능력 확보 여부
- 4) 즉시 현장지원 가능 인근선박 및 해상기상(특보) 전망 등

## 4 위기징후 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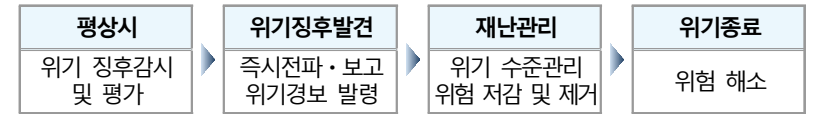
### 가. 위기징후 목록

위기형태 (7개)	위기징후 (11개)	감시수단 (14개)	감시방법	위기경보	조치
1. 기상악화 및 이용객 급증	1.1. 해양기상 요인 (현황, 전망)	○ 기상특보 발효현황	○ 기상특보 모니터링 (태풍, 풍랑 등)	관심 (풍수해 등 자연재난 위기경보 연계 고려)	○ 비상근무체계, 필요시 대책반 가동
		○ 태풍 발생 및 내습	○ 기상청 태풍정보 ○ 美日 태풍 현황, 예측 ○ 과거 유사태풍 등		○ 어선통제, 항만운영 통제
○ 3개월 기상전망		○ 기상청 예측자료 ○ 행안부 보고서	○ 시기별 안전대책 수립시 반영		
	1.2. 선박 및 이용객 급증요인	○ 시기별 이용객 통계 (추정 포함)	○ 대책기간 현황, 계획 (설, 추석, 행락철 등)	관심 (급증 정도 고려)	○ 특별대책반 운영 및 상황관리 강화
		○ 연안 및 국제여객선, 화물선 운항현황 ○ 출어선 현황	○ 일일 상황보고서		○ 상황 전파
2. 선박사고 빈발시기	2.1. 사고통계 특성고려 빈발시기 도래	○ 최근 5년간 해양선박 사고통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월별 해양선박사고 통계 분석 ○ 사고유형 ○ 발생 시간 및 지역	관심 (발생빈도 고려)	○ '월간해양사고 예방정보' 포스터 제작, 홍보 ○ 상황관리 강화
3. 화물선 등 충돌·화재·폭발사고	3.1. 사고빈발 시기 도래	○ 최근 5년간 화물선 등 일반선박 사고통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월별 화물선사고 분석 ○ 사고유형(충돌, 침몰 등) ○ 발생 시간 및 지역	관심 (발생빈도 고려)	○ 상황관리 강화
	3.2. 최근 발생사고	○ 최근 화물선 사고발생 및 수습 중인 사고	○ 화물선 사고보고서 ○ 일일상황보고 등	주의~심각 (상황판단회의)	○ 상황관리 강화 ○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반 등 운영
4. 해상부유물 충돌 사고	4.1. 사고기인 해상부유물 발생 (컨테이너, 원목 등)	○ 해상부유물 표류 여부 모니터링	○ 사고보고서 ○ 일일상황보고 등	주의~심각 (상황판단회의)	○ 상황관리 강화 ○ 항행경보 발령 ○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반 등 운영
5. 타 재난유형 사고에 따른 복합재난	5.1. 지진 등의 타 재난유형에 따른 선박사고 발생 우려	○ 타 재난유형 사고발생 모니터링	○ 사고보고서 ○ 일일상황보고 등	관심~심각 (타 재난유형 위기경보 고려 상황판단회의)	○ 비상근무체계, 필요시 대책반 가동

###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운용

- 근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20조(징후감시체계 운용)
  -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 위기징후 활동 상태를 지속 감시하고, 징후포착 시 징후정보 수집활동 강화

#### 2) 감시체계 및 운용



- 재난관리주관기관은 기상, 대·내외 환경, 통계 등 위기형태에 따른 위기징후를 징후목록별 감시수단을 통해 상시 감시

- ▶ **위기형태** : 유형별로 대해 위기가 어떻게 나타날지 형태
  - \* 선박통항·운항환경, 기상환경, 선종별 특징에 따른 유형 7개 구분
- ▶ **징후목록** : 위기형태별(7개) 유발될 수 있는 징후들을 도출 목록화
  - \* 선박 통항량 증가, 사고증가, 타 재난에 의한 사고발생 등 11개 징후
- ▶ **감시수단** : 징후목록별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 수단
  - \* 선박통항량 및 사고 통계, 기상전망 등 징후목록별 11개 수단

-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징후감시 평가보고서를 매주(목요일 까지) 행정안전부를 통해 BH(국가위기관리센터)에 제출하며, 위기경보 변경 시에는 수시 제출
- 또한, 소관 재난유형 별 관련 부서(기관)의 위기징후 감시 및 평가를 종합·관리

< 위기징후 감시와 평가, 경보 과정 >



< 위기징후 감시제 운용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주관기관	유관기관
◇ 징후목록작성 지침 운용 • 목록 종합 관리  ◇ 징후감시활동 방향 제시 • 중점감시 대상, 감시방법 등  ◇ 징후감시결과 보고, 전파 • 재난상황관리 등에 활용	◇ 징후목록 작성 및 관리 • 새로운 징후목록 발굴, 징후목록 최신성 유지  ◇ 위기징후 감시 • 특이징후 집중 감시  ◇ 주기적 징후분석 • 평가	◇ 징후감시  ◇ 위기징후에 따라 소관 분야 위기 관리
→	지침 방향	
	←	←
	감시 결과 목록 제출	→
		징후 정보 상호 교류

**5** 위기 평가

가. 근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21조(위기평가)

나.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 운영

- 대규모 해양 선박사고 위기징후 포착 또는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수준의 평가를 위한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를 개최

다.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 운영방법

(1) 회의시기 : 해양 선박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등 위기징후 포착 및 위기발생 예상 시

- 총괄부장의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 개최 건의 또는 비상대책반장의 개최 지시에 따라 개최

-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위급 상황시에는 유·무선으로]개최 가능

(2) 회의장소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또는 신속한 개최 가능장소

(3) 회의구성

- 안전책임관(정·부), 사고 관련 주관부서의 담당과장(간사),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 항만국장, 해양산업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 등

(4) 회의방법

- 회의참석 대상자에 유·무선 또는 문자·SNS를 통해 회의 소집
- 야간, 공휴일 등 신속히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상황반장이 부분부장 등과 유 무선 또는 문자·SNS, 서면 등으로 간략히 협의가능, 이 경우 회의결과는 문자·SNS를 통해 참석대상자에 전파·공유

## 6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 가. 위기경보 수준

경보 구분	판단 기준*	우리기관 임무	대응 단계
-	○ 위기징후 감시결과, 징후목록이 포착되지 않은 상태	위기징후 감시 및 사고예방 활동 - 해양안전 대책 수립시행 (점검·교육·훈련·협의회 등) - 매뉴얼 관리·운영	예 방
관 심	○ 위기징후 감시를 통해 통계적 시기도래, 기상요인 등에 의한 징후관련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재난으로 발전 가능성이 적은 상태  * 태풍내습, 해양사고 급증시기, 특별 대책기간, 타 재난 발생 등	위기징후활동 감시 및 비상연락망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사전 점검	대 비
주 의	○ 선박의 충돌, 화재, 폭발, 좌초, 전복, 침몰, 적재화물의 유실·유출, 기타 선체 손상 등 해양 선박사고로 인하여 위기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날 때  ○ 기상특보 발표 등 해상·기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선박이 기관고장 등 자력운항이 불가하여 구조 활동이 필요한 경우	위기 징후감시 및 정보공유 강화 - 상황판단회의 개최 (필요 시 관계기관 참여 영상회의) - 사고정보 파악(지방청, 해경청), 관계기관 전파(BH, 행안부 등) -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항행경보 발령 등	
경 계	○ 선박의 충돌, 화재, 폭발, 좌초, 전복, 침몰, 적재화물의 유실·유출, 기타 선체 손상 등 해양 선박사고로 인하여 위기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 가능성이 농후할 때  ○ 기상특보 발효 등 해상·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선박의 조난상황을 접수·확인하는 등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체계화된 협업대응 가동 - 상황판단회의 개최 (필요 시 관계기관 참여 영상회의) -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 미운영 시 긴급 대응반 또는 사고수습대책반 구성 * 현장파견관 배치, 관계기관	
심 각	○ 선박의 충돌, 화재, 폭발, 좌초, 전복, 침몰, 적재화물의 유실·유출, 기타 선체 손상 등 해양 선박사고로 인하여 위기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총력대응 - 상황판단회의 개최 (필요 시 관계기관 참여 영상회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가용장비·인력 신속투입	

\* 재난 및 사고의 유형이 복잡하고 다변화됨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를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위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피해범위가 한정되고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지역단위 위기경보 발령

\* 위기상황은 진행양상에 따라 결과수습형의 경우 바로 심각, 완만진행형은 순차 격상, 순간증폭형은 2차 피해 발생시점에 따라 심각경보 발령

### 나. 위기경보 절차

#### 1)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 개최시기 : 해양 선박사고 발생으로 인한 재난 징후를 포착하거나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소 집 자 : 해양수산부 안전책임관(CSO)

\* 정 : 기획조정실장, 부 : 해사안전관리과장

○ 소집(참석)대상

- 안전책임관(정·부), 사고 관련 주관부서의 담당과장(간사),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 항만국장, 해양산업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원양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 등

- 선박사고가 다음과 관계된 경우, 소관 국·과장이 추가로 참석

· 여객선과 관계된 사고시 해운물류국장 (해운정책과장 또는 연안해운과장 포함)

· 마리나업과 관계된 사고시 해양산업정책관 (해양정책과장 또는 해양레저과장 포함)

· 항만과 관계된 사고시 항만국장 (항만정책과장 또는 항만운영과장 포함)

· 어선과 관계된 사고시 어업자원정책관 또는 수산정책관 (어선정책팀장 또는 원양산업과장 또는 수산자원정책과장 포함)

○ 회의주재 : 안전책임관(CSO).

- 다만, 안전책임관 부재시 참석자 중 직제순에 따라 최고 선임자가 회의를 주재하되, 긴급 시에는 회의 구성원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회의방법 :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 문자·SNS 또는 유·무선 회의로 의견을 취합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간사는 가능한 통화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붙임 서식(부록 1의 서식 2)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다.  
긴급시, 상황보고서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 평가내용 : 사고 위험수준 평가, 위기경보 수준 및 발령여부,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 현장파견관 파견여부 등
  -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미운영시 사고수습대책반(반장 : 실·국장) 운영, 사고대책반 미운영시 긴급대응반(반장 : 실·국장)을 운영
- 위기평가지 고려사항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 기간, 파급 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 2) 위기경보 발령

- 발령권자 : 해양수산부장관(시행 : 해사안전관리과장)
- 발령시기 :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결정 즉시
  - \* 붙임 「위기경보 발령체계」 참조
- 통보기관 :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재난대응정책과, 사회재난대응정책과), 해양경찰청(상황센터),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
  - \* 외국적 선박 또는 외국 선원 관련 사고로 인한 위기경보 발령 시, 외교부(상황실)에 전파
- 통보방법 : 공문(부록 1의 서식 3)으로 시행,  
긴급시 상황보고서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전파
  - \* 종합상황실은 문자·SNS를 통해 관련부서 담당자에 위기경보 발령사실을 전파하고, 상황전파메신저를 통해 관계기관 전파 병행

## 3) 사전협의

- (가) 범정부적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심각」 수준의 경보 발령과 해제 또는 「심각」 수준에서 위기경보 수준을 하향조정\*할 경우에는 상황점검회의 및 국가위기관리센터·행정안전부(산업교통재난대응과)와 협의결과에 따라 발령하되 단, 중앙사고수습본부장(부재시 부분부장)은 필요시 직권으로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음
  - \* 위기경보 하향 시 고려사항 : 수색·구조활동이 종료되거나 인명·재산 피해가 확정되는 등 “대응” 단계에서 “복구” 단계로 전환되는 경우
- (나)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위급상황의 경우 우선 심각경보 발령 후, 즉시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에 전파
- (다) 위기경보가 없는 상황에서 돌발사고 발생 시 사고 접수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초동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보고체계에 따라 지체없이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인근 해양경찰서 및 소방서, 군부대 등) 등에 협조 요청
- (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위기단계 임무와 역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탄력적 운영가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필요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 7 비상근무체계

### 가. 비상대응기구 구성요령

- 1) 구성시기 :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대응기구 편성 즉시
- 2) 구성절차
  - 주관부서는 비상대응기구(중앙사고수습본부·지수본·긴급대응반) 편성기관·시각·장소를 명시하여 공문 발송
  - 종합상황실에서는 실무반 편성부서에 연락(유·무선 또는 문자메세지), 필요 시, 당직실에서 근무부서에 비상응소 연락 지원
    - \* 응소대상자가 응소 불가 시 사무분장 상 업무대행자 소집 연락

### 나. 비상대응기구 근무체계

- 1) 근무시기 : 비상대응기구 편성 수신 즉시 응소
- 2) 근무장소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정부세종청사 5동 563호)
- 3) 근무인원 : 실무반\* 별 반장(과장), 반원(사무관·주무관 각 1명)
  - \* (실무반 구성·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선종별 실무매뉴얼 상 비상대응기구, 사고양상 등을 고려하여 실무반 구성 및 반별 임무 확정
- 4) 근무교대 : 24시간 운영, 12시간 주·야 교대

#### <비상대응기구 근무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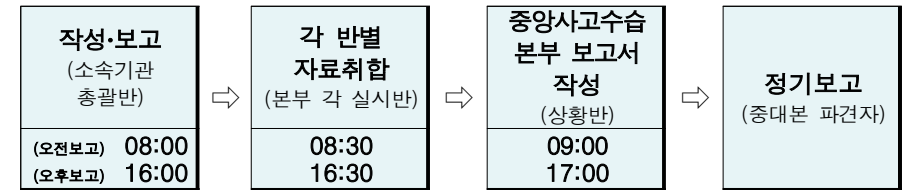
- 반장(과장) : (주간) 09:00~21:00, (야간) 21:00~익일 09:00, 근무지 유선대기
- 사무관급 : (주간) 09:00~21:00, (야간) 21:00~익일 09:00, 종합상황실 근무
- 주무관급 : (주간) 11:00~23:00, (야간) 23:00~익일 11:00, 종합상황실 근무

- \* 야간 근무자는 초과근무(일별 4시간) 또는 대체휴무 지정
- \*\* 식사 등 이석 시에도 교대로 실시하여 반별 최소 1인 이상 근무 유지하고, 반장은 1시간 이내 응소가능 지역에서 유선 대기

- 5) 인수인계 : 근무교대 30분 전부터 전임자와 합동근무 실시
  - 초기 근무조는 종합상황실 상황요원에게 사고보고서 등 비상근무를 위한 자료 인수

### 다. 정기보고 및 상황점검회의

- 1) 정기보고 : 매일 09시, 17시 정기보고서 작성, 대·내외 전파
  - 각 실시반 및 지역사고수습본부는 정기보고(08시, 16시 기준) 자료를 상황반에 행정망 전자문서로 제출
  -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실시반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실시반에 08시 기준 보고자료 제공
    - \* 정기보고 시간 및 회수는 중앙재난대책본부 보고시간,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추가피해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반 수시보고



- 2) 상황점검회의 : 매일 09시, 17시 상황점검회의 실시
  - 회의주재 :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시 본부장(장관) 주재, 긴급대응반 회의 시 대응반장 주재(부재 시 차상급자 주재)
  - 회의준비·진행은 총괄반에서 수행, 회의는 상황보고(상황반장), 실시반 별 조치사항 보고(실시반장), 현안 논의 등 실시
    - \* 필요 시, 소속·유관기관은 재난영상회의를 통해 참석

라. 비상대책반 비상근무체계 및 운영(여수광양항만공사)

□ 비상근무체계

구분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비상대책반	- 상황관리	- 비상대책반 설치 및 운영 준비	○ 비상대책반 설치 및 운영 - 총괄통제부, 운영대책부, 복구대책부, 지원부 운영	
비상근무	- 총괄통제부 상황전파	- 예비 상황근무자 명단 작성 - 각 실무반 1명 유선대기	- 총괄통제부 2명 - 운영대책부 2명 - 복구대책부 1명 - 지원부 1명	- 총괄통제부 2명 - 운영대책부 2명 - 복구대책부 2명 - 지원부 2명
근무시간	- 평시근무	- 24시간 유선대기	- 당일 08:30부터 ~ 익일 09:00까지	

□ 비상근무 운영

○ 근무시간

- 발령 시(당일 08:30)부터 ~ 익일 09:00까지

○ 근무방법

- 근무자는 1층 비상대책반(재난안전센터)에 정위치 근무

→ 비상근무자는 비상근무 시 익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휴일 비상근무 시 휴일근무시간 인정 및 휴무로 반영

ex) 금요일 근무(당일 08:30 ~ 익일 09:00)시 대체휴무(1일) 반영

토요일 근무(당일 08:30 ~ 익일 09:00)시 대체휴무(2일) 반영

일요일 근무(당일 08:30 ~ 익일 09:00)시 익일 휴무 및 대체휴무(1일) 반영

\* 근무 후 ERP(근무상황부) '비상근무'대체휴무' 승인 후 시행

- 24시간 근무 후 익일 휴무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비상근무자 편성 시 총괄통제부, 실무반 구성(임무 병행 등)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음.

- 실무반은 근무요원 변경 시 사전에 근무변경 명단을 작성하여 총괄통제부에 제출 하여야 함.

○ 근무 내용

- 상황접수 및 전파

- 현장순찰 결과 파악(주간 13시, 야간 22시 1일 2회 실시)

※ 현장순찰시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 실시

- 일일상황보고 2회(상급기관 요청 시)

- 실무반의 반장이 보고사항 취합 후 총괄통제부장에 보고 후 종합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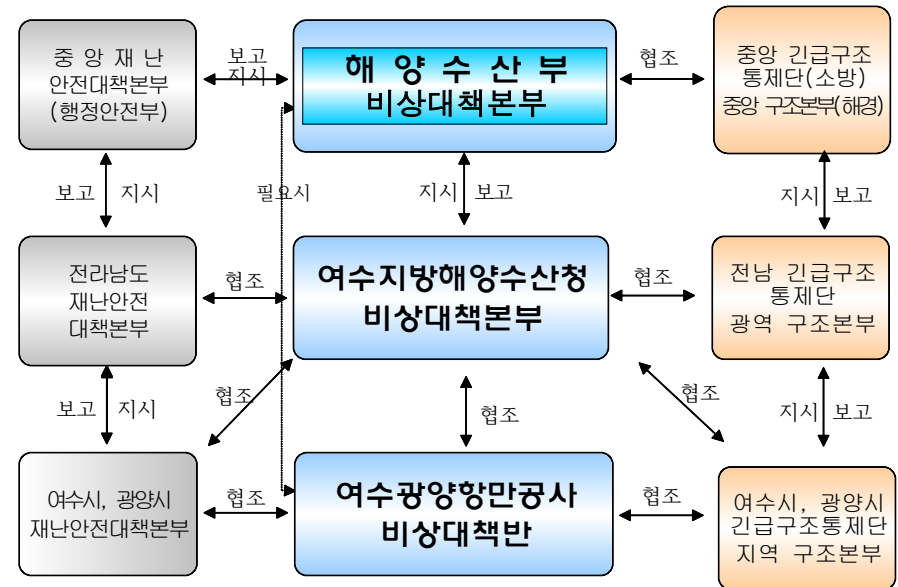
- 재난 상황판 정리

- 근무교대

· 전임 근무자와 교대근무자는 30분간 합동근무 및 업무 인수인계

· 피해상황 및 피해통계(선박, 항만시설), 응급복구 조치사항

마. 상황보고 체계도(여수광양항만공사)



# IV.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 IV.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 위기경보 '관심' 수준은 재난관리 업무 체계 상 '대비' 단계에 포함되나, 수준별 조치사항 흐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난대응 매뉴얼에 수록

### 1 관심

#### 가. 상황

##### □ 개요

- 0000년 0월 00일 광양항을 출항하여 중국 대련항으로 항해중이던 국적 화물선 황룡호[총톤수 53백톤, 선적항 인천, 적재화물 50백톤(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 2천톤과 의류 등 잡화 3천톤)]가 같은 날 20:00경 광양항 남서방 7마일 해상에서 중국 대련항을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입항중이던 중국 국적 화물선 해룡호(총톤수 30백톤, 선적항 대련, 적재 화물 의류 등 잡화 20백톤)와 충돌한 사고임

##### □ 피해상황

- 인명피해 : 황룡호 선원 1명 경상, 해룡호 선원 2명 경상
- 물적피해 : 황룡호 좌현 선미 굴곡(길이 5미터, 깊이 30cm), 해룡호 좌현 선미 수면상 1미터 부근의 선체 파공(길이 약 3미터, 높이 20cm)
- 오염피해 : 없음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가) 위기징후 식별	(가-1) 사고접수 및 상황파악	YGPA 재난안전실, 당직실
(나) 긴급조치	(나-1) 수색·구조활동 (나-2) 안전조치 이행 (나-3) 비상소집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선청, 해양경찰서 YGPA 재난안전실, 당직실
(다) 보고 및 전파		YGPA 재난안전실,
(라) 위기수준평가		YGPA 비상대책본부
(마) 위기경보 발령		YGPA 비상대책본부
(바) 위기경보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해양경찰서, 국방부, 소방서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YGPA 재난안전실, YGPA 사고유형에 따른 담당부서
(사)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YGPA 재난안전실, 지방해양수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 2) 조치내용

### [가] 위기징후 식별

#### 가-1. 사고접수 및 상황파악(부록 1의 서식 1)

- 신고자 : 행위자 또는 사고 목격자
- 접수처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청) 등
- 보고(통보) : 사고를 접수한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청)는 신속히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로 보고(통보), 관계기관에 전파

#### 가-2. 상황파악 요령

- 가능한 6하 원칙에 따르되 해양경찰서(청), 지방해양수산청, 선사, 보험사, GICOMS,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가정보 입수

#### 가-3. 상황파악 요소

-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원인, 인적·물적 피해, 오염 여부
- 사고선박 제원, 소유자 및 대리점, 승선인원, 화물, 보험 현황
- 오염 확산 여부, 부근 해역 교통 장애 여부
- 해양·기상정보, 해경·국방부 등 구조세력 출동상황, 응급조치 사항

### [나] 긴급조치

#### 나-1. 수색·구조 활동

- 협조요청기관 : 해양경찰서(청), 국방부,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자치단체 등
- 협조요청사항 : 인력·장비 지원 및 수색·구조 활동 지원

#### 나-2. 안전조치 이행

-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경찰서(청), 항만공사의 통제 하에 사고인근 해역 운항 및 부두 접안 통제 실시
- 항행안전방송 실시(해양경찰청 VTS센터 협조)
- 선박침몰에 따른 해상 부유물로 항행안전에 위협을 미치거나 해양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장애물 제거 명령 조치(지방청)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0조), 해사안전법(제2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배타적 경제수역법(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해당 장애물 소유자(점유자,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 운항자를 포함)에게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거 명령
- 유류오염 발생시 선주(선박대리점)에 대한 방제명령(해양경찰청)

#### 나-3. 비상소집(필요시)

- 소집명령 : YGPA 사장 지시 및 **재난안전실장** 비상 소집 요구시
- 소집대상 : 물류전략실, **항만개발부** 등 필요 부서 비상 소집
  - \* 비상소집 대상은 사고의 유형과 전개양상, 피해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필요시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선사 등 필요시 참석조치

## (다) 보고 및 전파

### 다-1. 보고 및 전파요령

- 최초 상황보고는 유·무선으로 가능한 6하 원칙에 따라 보고하되, 피해상황 및 조치상황을 중심으로 신속·간결·명료하게 보고
- 추가사항은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2보, 3보 등 추보 실시
- 인터넷, 유·무선, 팩스,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파

### 다-2. 보고 및 전파 대상 기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해양수산부, 관련 유관기관 등
- 외교부(외국적 선박 또는 외국 선원 관련 사고 발생시)

## (라) 상황판단회의(위기경보 수준 평가)

라-1. 개최시기 : 해양 선박사고로 인한 재난 징후를 포착하거나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라-2. 소집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비상대책반장(부재시 운영본부장이 대행 가능)

### 라-3. 참석대상

- 총괄통제부, 운영대책부, 복구대책부, 지원부 등 실무반 부장

라-4. 회의주재 : 사장. 다만, 사장 부재시 참석자 중 직제 순에 따라 최고 선임자가 회의를 주재하되, 긴급시에는 회의 구성원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라-5. 회의방법 :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 유·무선 회

의로 의견을 취합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간사는 가능한 통화 내역을 상세히 기록

라-6. 평가내용 : 선박사고에 따른 위험수준 평가, 위기경보 수준 및 발령 여부 결정, 비상대책본부 반구성 여부

### 라-7. 위기평가지 고려사항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 기간, 파급 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라-8. 평가결과 보고(부록 1의 서식 2)

- 해양수산부 및 관계부서에 보고(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전파, 긴급시, 상황보고서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전파

## (마) 위기경보 발령

마-1. 발령시기 : 상황판단회의 종료 즉시

마-2. 발령권자 : 해양수산부장관(시행자 : 해사안전관리과장)

마-3. 발령사항 : 위기경보 수준 및 조치 사항(부록 1의 서식 3), 긴급시, 상황보고서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위기경보 발령

마-4. 전파기관 :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재난대응정책과, 사회재난대응정책과), 해양경찰청(상황센터),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

- 외국적 선박 또는 외국 선원 관련 사고 발생시 외교부(상황실)에 전파

마-5. 위기경보가 없는 상황에서 돌발사고 발생시 사고 접수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초동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보고체계에 따라 지체없이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인근 해양경찰서 및 소방서, 군부대 등) 등에 협조 요청

**(바)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바-1. 사고대응 체계 점검

- 관계 부처(기관),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지방해양수산청 등) 근무자 확인
- 출동인원 및 장비 작동여부, 물자확보 등 대응태세 점검

바-2. 위기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위험정보 수집

**(사)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사-1. 위기경보 해제 결정 및 전파

- 위기해소 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위기경보 해제 및 관계기관 전파

사-2.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전파(필요시)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 서	임무 및 역할
여수광양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위기징후 감시활동 강화</li> <li>○ 해양사고 상황 접수 및 유관기관 전파</li> <li>○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및 협조체제 점검 등 비상대응기구 가동 준비</li> <li>○ 항만 내 사고 취약시설 등 정비·점검</li> <li>○ 수습·복구 인력·장비 등 확인</li> <li>○ 해양사고 원인 조사 체계 사전 점검 등</li> </ul>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위기징후 감시활동 강화, 위기경보 발령</li> <li>○ 해양사고 상황 접수 및 유관기관 전파</li> <li>- (필요 시) 재난문자를 통해 재난상황 및 위기경보 현장주민·이용객 통보(또는 행안부에 문자 발송요청)</li> <li>○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및 협조체제 점검 등 비상대응기구 가동 준비</li> <li>○ 해양사고 원인 조사 체계 사전 점검 등</li> </ul>
여수지방 해양수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대응)상황 총괄 모니터링</li> <li>○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점검</li> <li>○ 항로표지시설 및 복구 관련 시설·장비 확인·점검</li> <li>○ 보고체계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확인·점검 등</li> </ul>
어업 관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지도선을 통한 기상특보·정보 전파</li> <li>○ 기상특보 대비 어업 관련 사전점검 및 지도</li> <li>○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li> </ul>
국립해양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안해역 해양관측 및 예측(조석, 조류 등) 활동 강화</li> <li>○ 사고예상지점 측량자료 검토</li> <li>○ 사고위험 해역 항행경보 발령 등</li> </ul>
국립수산과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예방을 위한 수산자원 조사, 연안어장 환경 모니터링 등 수산과학조사 활동 이행</li> <li>○ 본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임무와 역할 등 점검</li> <li>○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 상시 운영 및 전파체계 유지</li> <li>○ 해양재난 대응을 위한 수산과학조사선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 점검 및 훈련계획 검토</li> </ul>

라. 유관기관 임무와 역할

부 서	임무 및 역할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li> <li>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li> <li>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li> </ul>
대통령비서실 (소관비서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 분야별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li> <li>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li> </ul>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국무총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li> </ul>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li> <li>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해양경찰청 상황실 연계 24시간 모니터링 및 보고</li> <li>초기상황판단회의 운영</li> <li>주관기관 상황분석 보고서 등 각종 정보 수집·전파</li> <li>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 상황 전파 및 초기대응 지시</li> <li>국가 재난대응 위기관리 매뉴얼 조정·승인</li> </ul>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관할 해경서 및 관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전파</li> <li>관할해역 내 해상교통관제 강화</li> <li>구조본부 가동에 관한 훈련에 따른 단계별 조치</li> <li>현장 구조활동 총력 전개 및 해양오염 발생시 긴급방제 작업</li> <li>구조 유관기관·단체 구조자원 동원 및 현장지휘구조세력 긴급 출동 조치 및 현장 구조활동 총력 전개</li> <li>2차사고 방지를 위한 사고현장 안전관리 조치</li> <li>사망자 신원확인 등 수사</li> <li>접경해역(중국·일본 등과의 접경해역과 북방한계선 인근해역)에서는 가능한 통신망을 활용하여 복측 등에 상황 통보 또는 수색 구조 협조요청 및 관계기관 공유(국방부·통일부에 복측 협조통신 요청)</li> </ul>
소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수산부로부터 재난상황 접수·전파</li> <li>구조인력, 장비 등 확인</li> <li>응급상황 발생 시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제공(추가)</li> </ul>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상자 이송 및 응급의료 지원체계 확인</li> <li>피해자 가족 관리 및 지원체계 확인</li> <li>사고수습 상황실, 인력, 차량(앰블런스) 등 행정적 지원계획 검토</li> <li>인근 병원, 장례식장 현황 등 확인</li> </ul>
국 방 부 (해군 제3함대, 31사단 95연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탐색 구조부대 등 수색·구조 및 방제 인력, 장비 지원</li> <li>선박사고 피해 응급환자 치료 및 수송 지원(지역 의무부대) 등</li> <li>접경해역(중국·일본 등과의 접경해역과 북방한계선 인근해역)에서는 가능한 통신망을 활용하여 복측 등에 상황 통보 또는 수색구조 협조요청 및 관계기관 공유 (해수부·해경청 등의 요청에 의거 복측 협조통신 시행)</li> </ul>
광주지방기상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기상정보 제공</li> </ul>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 피해에 대한 예산 및 세제지원 등에 대한 지원계획 준비</li> </ul>
교 육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상상태 및 항행경보 확인</li> <li>해당 시도 교육청에 재난상황 전파, 안전조치 이행 지시</li> <li>선박이용 현장체험 학습에 대한 안전활동 지도·점검 계획 확인 등 학생 안전대책 준비</li> </ul>

부 서	임무 및 역할
외 교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안전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재난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서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필요시 외국 당국 및 유관기관 등에 지원 협조 요청 등</li> <li>접경해역의 재난상황에 대한 외국과 정보교환 지원</li> </ul>
통 일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박, 선원 등 복측 관련 사항에 대한 외교·안보 기관간 협력·지원</li> <li>접경해역(중국·일본 등과의 접경해역과 북방한계선 인근해역)에서는 가능한 통신망을 활용하여 복측 등에 상황 통보 또는 수색구조 협조 요청 및 관계기관 공유 (해수부·해경청 등의 요청에 의거 복측 협조통신 시행)</li> </ul>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현장 홍보활동 지원 등</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급의료지원시스템 점검</li> <li>피해자(가족 포함) 및 사고관계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관리 및 심리상담 지원계획 검토 등</li> </ul>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원 외의 자가 관계된 해양 선박사고 대비 산재 보상관련 규정 등 검토</li> </ul>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발생 대비 가족돌봄 및 정서안정, 청소년 심리 정서 안정</li> </ul>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공기 등 육·공 교통수단과 관계된 해양 선박사고 발생대비 협력·지원 방안 검토 등</li> </ul>
관할지방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현장 인근 질서유지, 해안수색 지원 계획 검토</li> </ul>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여수지부 및 운항관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등으로부터 통보된 사고상황 접수·전파(해양사고예방센터)</li> <li>연안여객선 사고상황 접수·전파(운항관리실)</li> <li>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확인 등</li> </ul>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예방 교육 및 출어선 안전지도, 홍보방송 실시</li> <li>사고대비 어업피해 대책반 운영체제 구축·운영계획 검토</li> </ul>
선박검사 대행기관 (한국선급 여수광양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위험 선박 검사이력 확인</li> <li>유관기관 등에 대한 상황 전파</li> <li>ERS(긴급응답서비스) 긴급 대책반 구성 검토</li> <li>사고 / 손상 조사 및 기술검토 등</li> </ul>
해양환경공단 여수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류오염 발생시 방제 초동조치</li> <li>유류오염 방제를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li> <li>선박 화재시 예선(소방) 지원</li> </ul>

## 2 주의

### 가. 상황

#### □ 개요

- 0000년 0월 00일 광양항을 출항하여 중국 대련항으로 항해중이던 국적 화물선 황룡호[총톤수 53백톤, 선적항 부산, 적재화물 50백톤(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 2천톤과 의류 등 잡화 3천톤)]가 같은 날 20:00경 광양항 남서방 7마일 해상에서 중국 대련항을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입항중이던 중국 국적 화물선 해룡호(총톤수 30백톤, 선적항 대련, 적재 화물 의류 등 잡화 20백톤)와 충돌한 사고임

#### □ 피해상황

- 인명피해 : 황룡호 선원 2명 경상, 해룡호 선원 2명 경상
- 물적피해 : 황룡호 좌현 선미 굴곡(길이 5미터, 깊이 30cm), 해룡호 좌현 선미 수면상 1미터 부근의 선체 파공(길이 약 3미터, 높이 20cm)
- 오염피해 : 해룡호로부터 연료유(벙커 C유) 약 100리터 유출
- \* 사고해역 기상 악화 예상(21:00기준 사고해역 풍랑주의보 발효 예정)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가) 위기징후 식별	(가-1) 사고접수 및 상황파악	YGPA <a href="#">재난안전실</a>
(나) 긴급조치	(나-1) 수색·구조활동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국방부, YGPA <a href="#">재난안전실</a> , 지자체
	(나-2) 안전조치 이행	지방청, 해양경찰서
	(나-3) 비상소집	YGPA <a href="#">재난안전실</a>
(다) 보고 및 전파		YGPA <a href="#">재난안전실</a>
(라) 위기수준평가		YGPA 비상대책본부
(마) 위기경보 발령		YGPA 비상대책본부, 해양수산부
(바) 위기경보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해양경찰서, 국방부, 소방서,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YGPA <a href="#">재난안전실</a> , YGPA 사고유형에 따른 담당부서
(사)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YGPA <a href="#">재난안전실</a> , 지방해양수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 2) 조치사항

#### [가] 위기징후 식별

##### 가-1. 사고접수 및 상황파악(부록 1의 서식 1)

- 신고자 : 행위자 또는 사고 목격자
- 접수처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청) 등
- 보고(통보) : 사고를 접수한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청)는 신속히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로 보고(통보)

##### 가-2. 상황파악 요령

- 가능한 6하 원칙에 따르되 해양경찰서(청), 지방해양수산청, 선사, 보험사, GICOMS,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가정보 입수

##### 가-3. 상황파악 요소

-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원인, 인적·물적 피해, 오염 여부
- 사고선박 제원, 소유자 및 대리점, 승선인원, 화물, 보험 현황
- 오염 확산 여부, 부근 해역 교통 장애 여부
- 해양·기상정보, 해경·국방부 등 구조세력 출동상황, 응급조치 사항



## (나) 긴급조치

### 나-1. 수색·구조 활동

- 협조요청기관 : 해양경찰서(청), 국방부,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자치단체 등
- 협조요청사항 : 인력·장비 지원 및 수색·구조 활동 지원

### 나-2. 안전조치 이행

-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경찰서(청),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통제 하에 사고인근 해역 운항 및 부두 접안 통제 실시
- 항행안전방송 실시(해양경찰청 VTS센터 협조)
- 선박침몰에 따른 해상 부유물로 항행안전에 위험을 미치거나 해양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장애물 제거 명령 조치(지방청)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0조), 해사안전법(제2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배타적 경제수역법(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해당 장애물 소유자(점유자,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 운항자를 포함)에게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거 명령
- 유류오염 발생시 선주(선박대리점)에 대한 방제명령(해양경찰청)

### 나-3. 비상소집(필요시)

- 소집명령 : YGPA 사장 지시 및 **재난안전실장** 비상 소집 요구시
- 소집대상 : 물류전략실, **항만개발부** 등 등 실무부서
  - \* 비상소집 대상은 사고의 유형과 전개양상, 피해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필요시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선사 등 필요시 참석조치

## (다) 보고 및 전파

### 다-1. 보고 및 전파요령

- 최초 상황보고는 유·무선으로 가능한 6하 원칙에 따라 보고하되, 피해상황 및 조치상황을 중심으로 신속·간결·명료하게 보고
- 추가사항은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2보, 3보 등 추보 실시
- 인터넷, 유·무선, 팩스,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파

### 다-2. 보고 및 전파 대상 기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해양수산부, 관련 유관기관 등
- 외교부(외국적 선박 또는 외국 선원 관련 사고 발생시)

## (라) 상황판단회의(위기경보 수준 평가)

라-1. 개최시기 : 해양 선박사고로 인한 재난 징후를 포착하거나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라-2. 소집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비상대책반장(부재시 운영본부장이 대행 가능)

라-3. 참석대상

- 총괄통제부, 운영대책부, 복구대책부, 지원부 등 실무반 부장

라-4. 회의주재 : 사장. 다만, 사장 부재시 참석자 중 직제 순에 따라 최고 선임자가 회의를 주재하되, 긴급시에는 회의 구성원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라-5. 회의방법 :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 유·무선

회의로 의견을 취합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간사는 가능한 통화내역을 상세히 기록

라-6. 평가내용 : 선박사고에 따른 위험수준 평가, 위기경보 수준 및 발령 여부 결정,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 여부

라-7. 위기평가지 고려사항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 기간, 파급 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라-8. 평가결과 보고(부록 1의 서식 2)

- 해양수산부 및 관계부서에 보고(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전파 긴급시, 상황보고서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전파

### **(마) 위기경보 발령**

마-1. 발령시기 : 상황판단회의 종료 즉시

마-2. 발령권자 : 해양수산부장관(시행자 : 해사안전관리과장)

마-3. 발령사항 : 위기경보 수준 및 조치 사항(부록 1의 서식 3) 긴급시, 상황보고서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위기경보 발령

마-4. 전파기관 :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재난대응정책과, 사회재난대응정책과), 해양경찰청(상황센터),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

- 외국적 선박 또는 외국 선원 관련 사고 발생시 외교부(상황실)에 전파

마-5. 위기경보가 없는 상황에서 돌발사고 발생시 사고 접수기관은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및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초동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보고체계에 따라 지체없이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인근 해양경찰서 및 소방서, 군부대 등) 등에 협조 요청

### **(바)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바-1. 사고대응 체계 점검

- 중앙사고수습본부(해양수산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지방해양수산청 등) 편성요원 확인 및 부재시 대리근무자 편성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점검 및 자체 대비태세 점검 요청 공문 발송 (IPS, IPOC 등)
- 출동인원 및 장비 작동여부, 물자확보 등 대응태세 점검

바-2. 위기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위험정보 수집(해양경찰청 VTS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협조)

- 해당 선박의 위기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정보를 수집하여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종합상황실) 전파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행정절차를 통한 자료요청을 받은 경우 사고인근해역에 확보 가능한 위성자료(사진 등)를 제공·분석하여 해사안전관리과(종합상황실)로 전파

바-3. 인근 해역 통항 안전실태 점검

- 여수광양항만공사 소관시설 등에 안전실태 점검

**[사]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사-1. 위기경보 해제 결정 및 전파

- 위기해소 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위기경보 해제 및 전파

사-2.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전파(필요시)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 서	임무 및 역할
여수광양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위기징후 감시활동 강화</li> <li>○ 위기상황 모니터링</li> <li>○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운영</li> <li>○ 해양재난 정보수집, 관계 기관 전파 등 정보 공유 활동 강화 (안전취약계층 대피절차 등 포함)</li> <li>○ 피해규모 예측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대응 계획 사전 검토</li> <li>○ 항만 내 사고 취약시설 등 정비·점검 강화</li> <li>○ 수습·복구 인력·장비·물자 점검 및 출동태세 확인</li> <li>○ 항행경보 요청 등 해당 해역 항해선박 주의 조치 시행 등</li> <li>○ 재난 위기징후 감시활동 강화</li> </ul>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위기경보 발령</li> <li>○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운영</li> <li>○ 관계부처 및 지자체 대책 회의 개최(필요시)</li> <li>○ 해양재난 정보수집, 관계 기관 전파 등 정보 공유 활동 강화 (안전취약계층 대피절차 등 포함)</li> <li>- 항행경보 요청 및 필요 시 종사자 안전문자 발송</li> <li>- (필요 시) 재난문자를 통해 재난상황 및 위기경보 현장주민·이용객 통보(또는 행안부에 문자 발송요청)</li> <li>○ 피해규모 예측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대응 계획 사전 검토</li> <li>○ 항행경보 요청 등 해당 해역 항해선박 주의 조치 시행 등</li> <li>○ 재난징후 파악, 보고 및 초동조치 이행</li> </ul>
여수지방 해양수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필요 여부 검토</li> <li>○ 선박구조 요청시 해양경찰서에 협조 요청</li> <li>○ 해양오염사고 대비 관련기관 방재대응태세 준비 협조 요청</li> <li>○ 선박검사기관과 합동점검반 가동 준비</li> <li>○ 관계기관 및 사고선박 관련자 등 비상연락체계 가동 등</li> <li>○ 어업지도선 등을 통한 조업어선 안전 조치</li> </ul>
어업 관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징후 파악, 보고 및 초동조치 이행</li> <li>○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가동 등</li> </ul>
국립해양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예상 지역 해양관측 및 예측(조석, 조류 등) 활동 집중 실시</li> <li>○ 사고예상지점 측량자료 상세 검토</li> <li>○ 사고위험 해역 항행경보 발령 실시 강화 등</li> </ul>
국립수산과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예방을 위한 수산 과학조사, 연안 어장환경 모니터링 등 시험 조사 활동 강화</li> <li>○ 본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임무와 역할 등 점검·확인</li> <li>○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 상시 운영 및 전파체계 유지</li> <li>○ 해양재난 대응을 위한 수산과학조사선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 점검 및 필요시 자체 훈련실시</li> </ul>

라. 유관기관 임무와 역할

부 서	임무 및 역할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초기 상황을 파악, 보고 및 전파</li> <li>○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li> <li>○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li> </ul>
대통령비서실 (소관비서관실)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국무총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분야별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li> <li>○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li> <li>○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li> </ul>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상황 접수, 모니터링, 예·경보 발령 및 전파</li> <li>- 재난관련 각종 정보수집 및 분석</li> <li>○ 상황판단회의 운영</li> <li>○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안전조치, 공조 및 대응지원 요청</li> </ul>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관할 해상 및 관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전파</li> <li>○ 관할해역 내 해상교통관제 강화</li> <li>○ 구조본부 가동에 관한 훈령에 따른 단계별 조치</li> <li>○ 현장 구조활동 총력 전개 및 해양오염 발생시 긴급방제 작업</li> <li>○ 구조 유관기관·단체 구조자원 동원 및 현장지휘구조세력 긴급출동 조치 및 현장 구조활동 총력 전개</li> <li>○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사고현장 안전관리 조치</li> <li>○ 사망자 신원확인 등 수사</li> <li>○ 접경해역(중국·일본 등과의 접경해역과 북방한계선 인근해역)에서는 가능한 통신망을 활용하여 북측 등에 상황 통보 또는 수색구조 협조요청 및 관계기관 공유(국방부·통일부에 북측 협조통신 요청)</li> </ul>
소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로부터 재난상황 접수·전파</li> <li>○ 사고 초동대응에 가능한 장비·인력 현황 확인 등</li> <li>○ 응급상황 발생 시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제공(추가)</li> </ul>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청시) 사고인근해역 확보가능한 위성자료여부 검토·제공</li> </ul>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청시) 위성자료 분석 및 결과통보</li> </ul>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상자 이송 및 응급의료 지원체계 점검</li> <li>○ 피해자 가족 관리 및 지원체계 점검</li> <li>○ 사고수습 상황실, 인력, 차량(앰블런스) 등 행정적 지원 준비 (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li> <li>○ 인근 병원, 장례식장 현황 등 확인</li> </ul>
국 방 부 (해군 제3함대, 31사단 95연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색 구조부대 등 수색·구조 및 방제 인력, 장비 지원</li> <li>○ 선박사고 피해 응급환자 치료 및 수송 지원(지역 의무부대) 등</li> <li>○ 접경해역(중국·일본 등과의 접경해역과 북방한계선 인근해역)에서는 가능한 통신망을 활용하여 북측 등에 상황 통보 또는 수색구조 협조요청 및 관계기관 공유 (해수부·해경청 등의 요청에 의거 북측 협조통신 시행)</li> </ul>
광주지방기상청 기회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기상정보 제공</li> <li>○ 사고수습 및 복구 예산 지원 검토 등</li> <li>○ 기상상태 및 항행경보 확인</li> </ul>
교 육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시도 교육청에 재난상황 전파, 안전조치 이행 지시</li> <li>○ 선박이용 현장체험 학습에 대한 안전활동 지도·점검 계획 확인 조치 통보 등</li> </ul>

부 서	임무 및 역할
외 교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안전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에 따라 해외재난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서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필요시 외국 당국 및 유관기관 등에 지원 협조 요청 등</li> <li>○ 접경해역의 재난상황에 대한 외국과 정보교환 지원</li> </ul>
통 일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선원 등 북측 관련 사항에 대한 외교·안보 기관간 협력·지원</li> <li>○ 접경해역(중국·일본 등과의 접경해역과 북방한계선 인근해역)에서는 가능한 통신망을 활용하여 북측 등에 상황 통보 또는 수색구조 협조 요청 및 관계기관 공유 (해수부·해경청 등의 요청에 의거 북측 협조통신 시행)</li> </ul>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현장 홍보활동 지원 등</li> <li>○ 중앙비상 진료대책본부 구성 및 가동</li> <li>- 응급의료지원시스템 점검 및 동원 가능 응급의료자원 확인</li> <li>*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및 긴급의료(인력, 앰블런스 등)</li> <li>○ 의료기관 정보제공,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li> <li>○ 피해자(가족 포함) 및 사고관계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관리 및 심리상담 지원계획 상세 검토 등</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정보제공,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li> <li>○ 피해자(가족 포함) 및 사고관계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관리 및 심리상담 지원계획 상세 검토 등</li> </ul>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원 외의 자가 관계된 해양 선박사고 대비 산재 보상관련 규정 등 검토</li> </ul>
여정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발생 대비 가족 돌봄 및 정서안정, 청소년 심리정서 안정</li> </ul>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기 등 육·공 교통수단과 관계된 해양 선박사고 발생대비 협력·지원 방안 상세 검토 등</li> </ul>
관할지방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현장 인근 질서유지, 해안수색 지원 계획 상세 검토</li> </ul>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여수지부 및 운항관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경 및 수협으로부터 통보된 해양사고 보고서를 통한 사고유형 분석(위기 징후 감지)</li> <li>○ 인근 운항 여객선에 정보제공</li> <li>○ 선박안전기술 관련 정보(선박검사 이력) 제공 등</li> <li>○ 해운조합·선사 등을 통한 승선자 현황 파악·보고</li> <li>○ 연안여객선 운항 모니터링</li> <li>○ 연안여객선 출항 전 점검</li> <li>○ 연안여객선 종사자 안전교육 등</li> </ul>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예방 교육 및 출어선 안전지도, 홍보방송 실시</li> <li>○ 사고대비 어업피해 대책반 운영체제 구축·운영 계획 검토</li> </ul>
선박검사 대행기관 (한국선급 여수광양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위험 선박 검사이력 확인</li> <li>○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상황전파</li> <li>○ ERS(긴급응답서비스) 긴급 대책반 구성 검토</li> <li>○ 사고 / 손상 조사 및 기술검토 강화 등</li> </ul>
해양환경공단 여수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류오염 발생시 방제 초동조치</li> <li>○ 유류오염 방제를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li> <li>○ 선박 화재시 예선(소방) 지원</li> </ul>

### 3 경계

#### 가. 상황

<p><b>□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00년 0월 00일 광양항을 출항하여 중국 대련항으로 항해중이던 국적 화물선 황룡호(총톤수 53백톤, 선적항 부산, 적재화물 50백톤(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 2천톤과 의류 등 잡화 3천톤))가 같은 날 20:00경 광양항 남서방 7마일 해상에서 중국 대련항을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입항중이던 중국 국적 화물선 해룡호(총톤수 30백톤, 선적항 대련, 적재화물 의류 등 잡화 20백톤)와 충돌한 사고임</li> </ul> <p><b>□ 피해상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명피해 : 황룡호 선원 2명 중상, 해룡호 선원 2명 중상</li> <li>○ 물적피해 : 황룡호 좌현 선미 굴곡(길이 5미터, 깊이 30cm), 해룡호 좌현 선미 수면상 1미터 부근의 선체 파공(길이 약 3미터, 높이 20cm) 되었으며 파공부위가 확대 중</li> <li>○ 오염피해 : 해룡호로부터 연료유(벙커 C유) 약 10kl 유출 중</li> <li>* 사고해역 기상 악화 예상(21:00기준 사고해역 풍랑주의보 발효)</li> </ul>
---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가) 위기징후 식별	(가-1) 사고접수 및 상황파악	YGPA <b>재난안전실</b>
(나) 긴급조치	(나-1) 수색·구조활동	지방청, 해양경찰서, 국방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지자체
	(나-2) 안전조치 이행	지방청, 해양경찰서
	(나-3) 비상소집	YGPA <b>재난안전실</b>
(다) 보고 및 전파		여수광양항만공사 <b>재난안전실</b>
(라) 위기수준평가		여수광양항만공사 <b>재난안전실</b>
(마) 위기경보 발령		여수광양항만공사 <b>재난안전실</b> , 해양수산부
(바) 사고대응조직 설치가동		사고유형에 따른 담당부서
(사) 현장수습활동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경찰서, 국방부, 소방서,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아)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YGPA <b>재난안전실</b> , 지방해양수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 2) 조치내용

#### [가] 위기징후 식별

##### 가-1. 사고접수 및 상황파악(부록 1의 서식 1)

- 신고자 : 행위자 또는 사고 목격자
- 접수처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청) 등
- 보고(통보) : 사고를 접수한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청)는 신속히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로 보고(통보)

##### 가-2. 상황파악 요령

- 가능한 6하 원칙에 따르되 해양경찰서(청), 지방해양수산청, 선사, 보험사, GICOMS,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가정보 입수

##### 가-3. 상황파악 요소

-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원인, 인적·물적 피해, 오염 여부
- 사고선박 제원, 소유자 및 대리점, 승선인원, 화물, 보험 현황
- 오염 확산 여부, 부근 해역 교통 장애 여부
- 해양·기상정보, 해경·국방부 등 구조세력 출동상황, 응급조치 사항

## (나) 긴급조치

### 나-1. 수색·구조 활동

- 협조요청기관 : 해양경찰서(청), 국방부,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자치단체 등
- 협조요청사항 : 인력·장비 지원 및 수색·구조 활동 지원

### 나-2. 안전조치 이행

-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경찰서(청), 항만공사의 통제 하에 사고인근 해역 운항 및 부두 접안 통제 실시
- 항행안전방송 실시(해양경찰청 VTS센터 협조)
- 선박침몰에 따른 해상 부유물로 항행안전에 위협을 미치거나 해양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장애물 제거 명령 조치(지방청)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0조), 해상안전법(제2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배타적 경제수역법(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해당 장애물 소유자(점유자,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 운항자를 포함)에게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거 명령
- 유류오염 발생시 선주(선박대리점)에 대한 방제명령(해양경찰청)

### 나-3. 비상소집

- 소집명령 : YGPA 사장 지시 및 **재난안전실장** 비상 소집 요구시
- 소집대상 : 물류전략실, 여객사업팀, 항만시설부, **항만개발부**, 기획조정실, 경영지원부 등 필요부서 비상소집
  - \* 비상소집 대상은 사고의 유형과 전개양상, 피해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필요시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선사 등 필요시 참석조치

## (다) 보고 및 전파

### 다-1. 보고 및 전파요령

- 최초 상황보고는 유·무선으로 가능한 6하 원칙에 따라 보고하되, 피해상황 및 조치상황을 중심으로 신속·간결·명료하게 보고
- 추가사항은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2보, 3보 등 추보 실시
- 인터넷, 유·무선, 팩스,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파

### 다-2. 보고 및 전파 대상 기관

- 해양수산부 장·차관, 관련 실·국·과장
-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 외교부(외국적 선박 또는 외국 선원 관련 사고 발생시)

## (라) 상황판단회의(위기경보 수준 평가)

라-1. 개최시기 : 해양 선박사고로 인한 재난 징후를 포착하거나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라-2. 소집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비상대책반장(부재시 운영본부장이 대행 가능)

라-3. 참석대상

- 총괄통제부, 운영대책부, 복구대책부, 지원부 등 실무반 부장

라-4. 회의주재 : 사장. 다만, 사장 부재시 참석자 중 직제 순에 따라 최고 선임자가 회의를 주재하되, 긴급시에는 회의 구성원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라-5. 회의방법 :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 유·무선 회의로 의견을 취합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간사는 가능한 통화내역을 상세히 기록

라-6. 평가내용 : 사고 위험수준 평가, 위기경보 수준 및 발령여부, 비상대책본부 구성, 현장과견관 파견여부 등

라-7. 위기평가지 고려사항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 기간, 파급 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라-8. 평가결과 보고(부록 1의 서식 2)

- 장·차관 및 관계부서에 보고(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전파 긴급시, 상황보고서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전파

### [마] 위기경보 발령

마-1. 발령시기 : 상황판단회의 종료 즉시

\* 중앙사고수습본부장(부재시 부분부장)은 필요시 직권으로 위기경보 발령가능

마-2. 발령권자 : 해양수산부장관(시행자 : 해사안전관리과장)

마-3. 발령사항 : 위기경보 수준 및 조치 사항(부록 1의 서식 3) 긴급시, 상황보고서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위기경보 발령

마-4. 전파기관 :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재난대응정책과, 사회재난대응정책과), 해양경찰청(상황센터), 국무조

정실,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

○ 외국적 선박 또는 외국 선원 관련 사고 발생시 외교부(상황실)에 전파

마-5. 위기경보가 없는 상황에서 돌발사고 발생시 사고 접수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초동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보고체계에 따라 지체없이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인근 해양경찰서 및 소방서, 군부대 등) 등에 협조 요청

### [바] 사고대응조직(비상대책반) 설치가동

바-1. 구성·운영 주체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부록 1의 서식 4 참조)

바-2. 유형 : 여수광양항만공사 비상대책반

바-3.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 지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광역 또는 중앙)구조본부와 연계 운영(협조·지원 관계)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구조본부는 기관별 판단에 따라 구성·운영

### [사] 현장 수습활동

사-1. 여수광양항만공사 비상대책반 현장지휘소 운영,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지방해양수산청 등)과 연계

사-2. 사고현장에 현장과견관\* 파견(필요시)

\* 피해가족 대상 애로사항 청취 및 수색·구조활동 설명, 수습상황 총괄모니터링 및 본부 비상대응조직 연락관 역할 등 수행

사-3. 긴급구조활동 실시 :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

사-3. 인명 구조 및 방제활동 지원(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등)

사-4. 대응자원 조정(해경·소방, 국방부,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

사-5. 현장통제, 경계구역 선정 등 선박통행 제한 등

사-6. 접경해역(중국·일본 등과의 접경해역과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는 유관기관(국방부, 통일부, 해경청 등)은 가용한 통신망을 활용하여 북측 등에 상황 통보 또는 수색구조 협조요청 및 관계기관 공유 (국방부·통일부는 해수부·해경청 등의 요청에 의거 북측 협조통신 시행)

○ 상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총괄반은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운영 종료와 관련하여 수습 진행경과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해양수산부에 지체없이 보고

아-5. 위기경보 수준 조정·해제 결정 및 전파

아-6. 사고지역 복구 관련 사항을 해양수산부 소관 부서, 재난관리책임 기관(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등) 및 지자체(시·군·구)에 인계

○ 복구 관련 사항을 인계받은 부서는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 및 사고 소관 부서)에 수습상황을 보고

아-7.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전파(필요시)

## (아)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아-1.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

아-2. 사고지역 복구(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등)

아-3. 사고수습 처리상황 종합 보고(지역사고수습본부)

아-4. 상황종료 판단[YGPA 비상대책반, 중앙사고수습본부]

○ 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소속기관에만 지역사고수습본부가 운영 중에 사고 수습이 충분히 진행된 경우,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운영을 종료할 수 있음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 및 역할
여수광양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상황 집중감시 및 유관기관에 전파 등 정보 공유를 통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가동</li> <li>○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운영</li> <li>○ 비상대책본부 운영</li> <li>○ 항만 내 사고 취약시설 등 정비·점검 심층 강화</li> <li>○ 수습 및 복구 인력·장비 투입(필요시)</li> <li>○ 비상연락망 유지 및 재난상황 모니터링 강화</li> </ul>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상황 집중감시 및 유관기관에 전파 등 정보 공유를 통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가동</li> <li>- 항행경보 요청 및 종사자 안전문자 발송</li> <li>- (필요 시) 재난문자를 통해 재난상황 및 위기경보 현장주민·이용객 통보(또는 행안부에 문자 발송요청)</li> <li>* 온라인 통신 불가 시, 소속·유관기관 및 지자체를 통해 여객선 터미널, 항·포구 등에 오프라인 전파요청(방송·전광판 등)</li> <li>○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운영</li> <li>○ 긴급대응반 운영 설치·운영(필요 시 중수본 구성)</li> <li>○ 단계별·기관별 임무와 역할 확인·점검 및 유관 기관 구조세력 인·물적 자원 동원요청 준비</li> <li>○ 선박사고 원인분석 조사체계 구축</li> <li>○ 공보지원반 구성 및 브리핑 계획 검토 등</li> </ul>
지역사고 수습본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상황 모니터링 강화</li> <li>○ 사고발생 관련 신속 보고·전파 및 공유체계 강화</li> <li>○ 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li> <li>○ 사고 대응체계 가동, 유관기관 협조</li> <li>- 관계기관 인력·장비 동원 협조 요청</li> <li>- 해양경찰청의 구조·방제작업 등 지원</li> <li>○ 피해확산 방지 활동 / 선박운항 통제 등</li> </ul>
어업 관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지도선 등의 수색·구조 협조 지원</li> </ul>
국립해양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예상 지역 해양관측 및 예측(조석, 조류 등) 활동 집중 실시 강화</li> <li>○ 사고예상 지점에 대한 측량자료 정밀 검토</li> <li>○ 사고위험 해역 항행경보 발령 지속 실시 등</li> </ul>
국립수산과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예방을 위한 수산과학조사, 연안 어장환경 모니터링 등 시험조사 활동 모니터링 집중 강화</li> <li>○ 분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협력체계 가동 준비</li> <li>○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 운영 강화(24시간), 상황 전파체계 유지</li> <li>○ 해양재난 대응을 위한 수산과학조사선 안전사고 대응 훈련강화 및 실태점검 등</li> </ul>

라. 유관기관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 및 역할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li> <li>○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li> <li>○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li> </ul>
대통령비서실 (소관비서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분야별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li> <li>○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li> </ul>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li> </ul>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상황 모니터링 강화</li>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상황보고 및 전파</li>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앙수습지원단 구성 및 현지 파견</li> <li>○ (필요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대책회의 개최 등 범정부 재난대응 협업체계 가동 검토</li> </ul>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 해경서) 및 관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전파</li> <li>○ 관할해역 내 해상교통관제 강화</li> <li>○ 구조본부 가동에 관한 훈련에 따른 단계별 조치</li> <li>○ 현장 구조활동 총력 전개 및 해양오염 발생시 긴급방제 작업</li> <li>○ 구조 유관기관·단체 구조자원 동원 및 현장지휘구조세력 긴급출동 조치 및 현장 구조활동 총력 전개</li> <li>○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사고현장 안전관리 조치</li> <li>○ 사망자 신원확인 등 수사</li> <li>○ 접경해역(중국·일본 등과의 접경해역과 북방한계선 인근해역)에서는 가능한 통신망을 활용하여 북측 등에 상황 통보 또는 수색구조 협조요청 및 관계기관 공유(국방부·통일부에 북측 협조통신 요청)</li> </ul>
소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에 현장 상황관리관 파견 및 필요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중앙119구조본부 출동</li> <li>○ 응급상황 발생 시 중앙119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제공</li> </ul>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발생 초기 현장대응조치 총괄</li> <li>○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비상지원본부 가동</li> <li>○ 사상자 이송 및 응급의료 지원체계 가동 준비</li> <li>○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확인</li> <li>○ 지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및 업무협조 요청</li> <li>○ 피해자 가족 관리 및 지원방안 마련</li> <li>○ 사고수습 상황실, 인력, 차량(엠블런스) 등 행정적 지원체계 가동 준비</li> <li>○ 인근 병원, 장례식장 현황 파악 등</li> </ul>
국방부 (해군 제3함대 31사단 95연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색 구조부대 등 수색·구조 및 방제 인력, 장비 지원</li> <li>○ 선박사고 피해 응급환자 치료 및 수습 지원(지역 의무부대) 등</li> <li>○ 접경해역(중국·일본 등과의 접경해역과 북방한계선 인근해역)에서는 가능한 통신망을 활용하여 북측 등에 상황 통보 또는 수색구조 협조요청 및 관계기관 공유 (해수부·해경청 등의 요청에 의거 북측 협조통신 시행)</li> </ul>

부서	임무 및 역할
기획재정부	○ 사고수습 및 복구 예산 지원 검토 등
교육부	○ 재단상황 보고·전파 ○ 학생 관련 피해 발생 시 대책본부 구성여부 검토 ○ 구조본부 등에 승선자 명부 등 제공 검토 등
외교부	○ 「재단안전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재단의 경우 중앙재단 안전대책본부장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서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필요시 외국 당국 및 유관기관 등에 지원 협조 요청 등 ○ 접경해역의 재난상황에 대한 외국과 정보교환 지원
통일부	○ 선박, 선원 등 북측 관련 사항에 대한 외교·안보 기관간 협력·지원 ○ 접경해역(중국·일본 등과의 접경해역과 북방한계선 인근해역)에서는 가능한 통신망을 활용하여 북측 등에 상황 통보 또는 수색구조 협조요청 및 관계기관 공유 (해수부·해경청 등의 요청에 이기 북측 협조통신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현장 홍보활동 지원 등 ○ 응급의료지원시스템 가동준비 및 응급의료지원 지원 준비
보건복지부	-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및 긴급의료(인력, 앰블런스 등) ○ 피해자(가족 포함) 및 사고관계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관리 및 심리상담 지원 준비 등
고용노동부	○ 선원 외의 자가 관계된 해양 선박사고 대비 산재 보상관련 규정 등 검토
여성가족부	○ 사고발생 시 가족 돌봄 및 정서안정, 청소년 심리정서 안정, 직업상담·훈련 등 취업연계 지원계획
국토교통부	○ 항공기 등 육·공 교통수단과 관계된 해양 선박사고 발생대비 협력·지원 방안 상세 검토 강화 등
관할지방경찰청	○ 사고현장 인근 질서유지, 해안수색 지원 계획 상세 검토 강화 ○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유언비어 수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지부 및 운항관리센터)	○ 선박안전기술 관련 정보(선박검사 이력) 제공 등 ○ 인근 운항 여객선에 정보제공 및 긴급구조 지원 요청 ○ 재난징후 모니터링 강화 및 보고·전파 ○ 연안여객선 사고로 인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시 운항관리자 파견 및 수습 지원(필요시)
한국해운조합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	○ 사고 연안여객선의 증전자 세부현황, 화물·보험 현황 등을 구조기관 및 유관기관에 제공 ○ 출어선 안전지도 및 홍보방송 실시 ○ 출어선 안전 해역으로 대피제도 등
선박검사 대행기관 (한국선급 여수광양지부)	○ 사고위험 선박 검사이력 확인 ○ 유관기관 상황 전파 ○ 필요시 ERS(긴급응답서비스) 긴급 대책반 구성 - 안전성 평가 및 분석, 구난 대책 수립 ○ 사고 / 손상 조사 및 상세 기술 검토안 마련 등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 (요청시) 확보가능한 사고인근해역 위성정보 제공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 (요청시) 확보가능한 사고인근해역 광학위성자료 분석 및 결과제공
광주지방기상청	○ 사고해역 상세 해양기상정보 유관기관 제공
해양환경공단 여수지사	○ 유류오염 발생시 방제 조동조치 ○ 유류오염 방제를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 선박 화재시 예선(소방) 지원

## 4 심각

### 가. 상황

#### □ 개요

- 0000년 0월 00일 광양항을 출항하여 중국 대련항으로 항해중이던 국적 화물선 황룡호(총톤수 53백톤, 선적항 부산, 적재화물 50백톤(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 2천톤과 의류 등 잡화 3천톤))가 같은 날 20:00경 광양항 남서방 7마일 해상에서 중국 대련항을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입항중이던 중국 국적 화물선 해룡호(총톤수 30백톤, 선적항 대련, 적재화물 의류 등 잡화 20백톤)와 충돌한 사고임

#### □ 피해상황

- 인명피해 : 황룡호 선원 3 중상, 해룡호 선원 3명 중상 및 2명 실종
- 물적피해 : 황룡호 좌현 선미 굴곡(길이 5미터, 깊이 30cm), 해룡호 좌현 선미 수면상 1미터 부근의 선체 파공(길이 약 3미터, 높이 20cm)되었으며 파공부위가 확대(길이 약 5미터, 높이 30cm). 사고현장 기상악화로 파공부위를 통한 해수가 해룡호 선내 유입되면서 기관실 침수 시작
- 오염피해 : 해룡호로부터 연료유(벵커 C유) 약 20㎩ 유출중이며, 조류를 따라 유출유는 연안으로 이동중이며 양식장 피해가 예상됨  
\* 사고해역 기상 악화 예상(21:00기준 사고해역 풍랑주의보 발효)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가) 위기징후 식별	(가-1) 사고접수 및 상황파악	YGPA <a href="#">재난안전실</a>
(나) 긴급조치	(나-1) 수색·구조활동	지방청, 해양경찰서, 국방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지자체
	(나-2) 안전조치 이행	지방청, 해양경찰서
	(나-3) 비상소집	YGPA <a href="#">재난안전실</a>
(다) 보고 및 전파		여수광양항만공사 <a href="#">재난안전실</a>
(라) 위기수준평가		여수광양항만공사 <a href="#">재난안전실</a>
(마) 위기경보 발령		여수광양항만공사 <a href="#">재난안전실</a> , 해양수산부
(바) 사고대응조직 설치가동		사고유형에 따른 담당부서
(사) 현장수습활동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경찰서, 국방부, 소방서,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아)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YGPA <a href="#">재난안전실</a> , 지방해양수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 2) 조치내용

### [가] 위기징후 식별

#### 가-1. 사고접수 및 상황파악(부록 1의 서식 1)

- 신고자 : 행위자 또는 사고 목격자
- 접수처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청) 등
- 보고(통보) : 사고를 접수한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청)는 신속히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로 보고(통보)

#### 가-2. 상황파악 요령

- 가능한 6하 원칙에 따르되 해양경찰서(청), 지방해양수산청, 선사, 보험사, GICOMS,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가정보 입수

#### 가-3. 상황파악 요소

-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원인, 인적·물적 피해, 오염 여부
- 사고선박 제원, 소유자 및 대리점, 승선인원, 화물, 보험 현황
- 오염 확산 여부, 부근 해역 교통 장애 여부
- 해상·기상의 상태, 해경·국방부 등 구조세력 출동상황, 응급조치 사항

### [나] 긴급조치

#### 나-1. 수색·구조 활동

- 협조요청기관 : 해양경찰서(청), 국방부,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관할 자치단체 등
- 협조요청사항 : 인력·장비 지원 및 수색·구조 활동 지원

#### 나-2. 안전조치 이행

-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경찰서(청), 항만공사의 통제 하에 사고인근 해역 운항 및 부두 접안 통제 실시
- 항행안전방송 실시(해양경찰청 VTS센터 협조)
- 선박침몰에 따른 해상 부유물로 항행안전에 위협을 미치거나 해양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장애물 제거 명령 조치(지방청)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0조), 해사안전법(제2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배타적 경제수역법(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해당 장애물 소유자(점유자,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 운항자를 포함)에게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거 명령
- 유류오염 발생시 전주(선박대리점)에 대한 방제명령(해양경찰청)

#### 나-3. 비상소집(필요시)

- 소집명령 : YGPA 사장 지시 및 **재난안전실장** 비상 소집 요구 시
- 소집대상 : **재난안전실**, 물류전략실, **항만개발부** 등 비상대책반
  - \* 비상소집 대상은 사고의 유형과 전개양상, 피해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필요시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선사 등 필요시 참석조치

## (다) 보고 및 전파

### 다-1. 보고 및 전파요령

- 최초 상황보고는 유·무선으로 가능한 6하 원칙에 따라 보고하되, 피해상황 및 조치상황을 중심으로 신속·간결·명료하게 보고
- 추가사항은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2보, 3보 등 후보 실시
- 인터넷, 유·무선 팩스,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파

### 다-2. 보고 및 전파 대상 기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해양수산부, 관련 유관기관 등
- 외교부(외국적 선박 또는 외국 선원 관련 사고 발생시)

## (라) 상황판단회의(위기경보 수준 평가)

라-1. 개최시기 : 해양 선박사고로 인한 재난 징후를 포착하거나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라-2. 소집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비상대책반장(부재시 운영본부장이 대행 가능)

### 라-3. 참석대상

- 총괄통제부, 운영대책부, 복구대책부, 지원부 등 실무반 부장

라-4. 회의주재 : 사장. 다만, 사장 부재시 참석자 중 직제 순에 따라 최고 선임자가 회의를 주재하되, 긴급시에는 회의 구성원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라-5. 회의방법 :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 유·무선 회의로 의견을 취합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간사는 가능한 통화내역을 상세히 기록

라-6. 평가내용 : 사고 위험수준 평가, 위기경보 수준 및 발령여부, 비상대책본부 구성, 현장파견관 파견여부 등

### 라-7. 위기평가지 고려사항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 기간, 파급 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라-8. 평가결과 보고(부록 1의 서식 2)

- 해양수산부 및 관계부서에 보고(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전파 긴급시, 상황보고서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전파

## (마) 위기경보 발령

마-1. 발령시기 : 상황판단회의 종료 즉시

\* 중앙사고수습본부장(부재시 부분부장)은 필요시 직권으로 위기경보 발령 가능

마-2. 발령권자 : 해양수산부장관(시행자 : 해사안전관리과장)

마-3. 발령사항 : 위기경보 수준 및 조치 사항(부록 1의 서식 3) 긴급시, 상황보고서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위기경보 발령

마-4. 전파기관 :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재난대응정책과, 사회재난대응정책과), 해양경찰청(상황센터),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

- 외국적 선박 또는 외국 선원 관련 사고 발생시 외교부(상황실)에 전파

#### 마-5. 사전협의

- 협의시기 : 범정부적 차원의 평가와 조치가 요구되는 "심각" 수준의 경보발령과 해제 또는 위기경보 수준 조정시
- 협의기관 : 행정안전부(사회재난대응정책과)
- 단,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위기 상황의 경우 우선 경보발령 조치를 시행한 후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에 보고(통보)

마-6. 위기경보가 없는 상황에서 돌발사고 발생시 사고 접수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초동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보고체계에 따라 지체없이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인근 해양경찰서 및 소방서, 군부대 등) 등에 협조 요청

#### (바) 사고대응조직(비상대책반) 설치가동

- 바-1. 구성·운영 주체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 바-2. 유형 : 여수광양항만공사 비상대책반
- 바-3.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 지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광역 또는 중앙)구조본부와 연계 운영(협조·지원 관계)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구조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청 또는 기관별 자체 판단에 따라 구성·운영

#### (사) 현장 수습활동

- 사-1. 여수광양항만공사 비상대책반 현장지휘소 운영,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지방해양수산청 등)과 연계
- 사-2. 사고현장에 현장과건관\* 파견(필요시)  
\* 피해가족 대상 애로사항 청취 및 수색·구조활동 설명, 수습상황 총괄모니터링 및 본부 비상대응조직 연락관 역할 등 수행
- 사-3. 긴급구조활동 실시 : 해양경찰청, 소방청, 국방부 등
- 사-4. 인명 구조 및 방제활동 협조·지원(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등)
- 사-5. 대응자원 조정(해경·소방, 국방부,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
- 사-6. 현장통제, 경계구역 선정 등 선박통행 제한 등
- 사-7. 접경해역(중국·일본 등과의 접경해역과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는 유관기관(국방부, 통일부, 해경청 등)은 가용한 통신망을 활용하여 북측 등에 상황 통보 또는 수색구조 협조요청 및 관계기관 공유(국방부·통일부는 해수부·해경청 등의 요청에 의거 북측 협조통신 시행)

#### (아)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 아-1.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
- 아-2. 사고지역 복구(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등)
- 아-3. 사고수습 처리상황 종합 보고(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 아-4. 상황종료 판단(중앙사고수습본부)
- 아-5. 위기경보 수준 조정·해제 결정 및 전파(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회의)
- 아-6. 사고지역 복구 관련 사항을 해양수산부 소관 부서,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등) 및 지자체(시·군·구)에 인계
  - 복구 관련 사항을 인계받은 부서는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 및 사고 소관 부서)에 수습상황을 보고
- 아-7.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전파(필요시)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 및 역할
여수광양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대책반 설치 등 사고대응 지휘 체제 구축</li> <li>지자체, 국방부, 해경, 소방 등에 가용한 구조세력 긴급지원</li> <li>사고해역 통제, 침선부표 설치, 침몰선 인양계획 수립 검토 및 2차 피해 예방대책 마련</li> <li>항만 내 피해발생에 따라 수습 및 복구 인력·장비 긴급 투입</li> </ul>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양수산부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등 사고대응 총괄지휘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수본 상황실 설치 및 근무자 편성, 근무요령 등 교육</li> <li>소속기관에 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 지시</li> <li>BH, 행정안전부, 지방청 등 유관기관에 중수본 설치 사실 통보</li> <li>(필요 시)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중대본에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요청</li> </ul> </li> <li>지자체, 국방부, 해경, 소방 등에 가용한 구조세력 긴급지원 요청</li> <li>사고해역 통제, 침선부표 설치, 침몰선 인양계획 수립 검토 및 2차 피해 예방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행경보 요청 및 종사자 안전문자 발송</li> <li>(필요 시) 재난문자를 통해 재난상황 및 위기경보 현장주민·이용객 통보(또는 행안부에 문자 발송요청)</li> <li>* 온라인 통신 불가 시, 소속·유관기관 및 지자체를 통해 여객선터미널, 항포구 등에 오프라인 전파요청(방송·전광판 등)</li> </ul> </li> <li>사고수습 진행상황 관계 기관에 지속 전파 및 언론 브리핑 실시(필요시)</li> <li>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시 부대변인 추천 및 운영</li> </ul>
지역사고수습본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에 따른 지원·협조</li> <li>재난상황 모니터링 강화, 신속 보고·전파 및 공유체계 집중 강화</li> <li>사고 대응체계 가동, 유관기관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기관 인력·장비 동원 협조 요청</li> <li>해양경찰서의 구조·방제작업 등 지원</li> <li>사상자 발생시 이송 등 지원</li> <li>선주 및 피해자간 보상협의 지원</li> </ul> </li> <li>부표설치 및 인양·예인, 오염제거 등 사후처리 등 피해확산 방지 활동 및 선박운항 통제 강화 등</li> </ul>
어업관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업지도선 등의 수색·구조 협조 지원 및 진행 상황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지속 보고</li> </ul>
국립해양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구조 및 사고수습 지원을 위한 해도 제공</li> <li>사고해역 조석, 조류 등 해양관측 정보 제공</li> <li>3차원 해저지형도 등 사고해역 수로측량 정보 제공(필요시)</li> <li>사고위험 해역 항행경보 발령 및 항행통보 지속 실시 등</li> </ul>
국립수산과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름, 화학물질 등 유출에 따른 해양환경오염 여부 및 어장 및 양식장 오염 등 2차 피해 가능성 조사</li> <li>사고 발생지역 수산자원조사, 연안 어장환경 모니터링 등 정밀 조사 지속 실시</li> <li>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 운영(24시간), 본부 및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유지 등</li> </ul>

라. 유관기관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 및 역할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분야 위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li> <li>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대응반 운영</li> <li>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li> </ul>
대통령비서실 (소관비서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 분야별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li> <li>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li> </ul>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li> <li>위기관리체계 조사·평가 및 개선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발생 원인, 단계별 대응활동 분석·평가, 안전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 제시</li> </ul> </li> <li>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활용(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문기관·단체로 구성)</li> </ul>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수습 총력대응 체제 유지(재난대응 협업체계 본격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범정부 재난대응 협업체계 가동(필요시)</li> <li>재난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보고·전파 계속</li> <li>사고 관련 유관기관 공무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 요청</li> <li>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직원 현장상황관리관 현지 파견 및 중앙수습지원단 구성, 주관기관 요청 시 파견 조치</li> <li>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li> <li>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사고상황 점검 및 수습대책 마련 등(필요시)</li> <li>재난사태 선포·건의(필요시)</li> <li>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또는 재난복구 비용 등 지원 필요성 검토 등(필요시)</li> </ul> </li> <li>자원봉사 등 육상지원세력 협조요청(필요시)</li> <li>국민행동요령 전파(주관부처와 공동대응)</li> <li>자원봉사 활동 협조요청 및 취합</li> </ul>
중앙수습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대책본부장 등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권고 또는 조언</li> <li>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및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li> </ul>
서해지방해양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전파</li> <li>관할해역 내 해상교통관제 강화</li> <li>구조본부 가동에 관한 훈령에 따른 단계별 조치</li> <li>현장 구조활동 총력 전개 및 해양오염 발생시 긴급방제 작업</li> <li>구조 유관기관·단체 구조자원 동원 및 현장지휘구조세력 긴급출동 조치 및 현장 구조활동 총력 전개</li> <li>2차사고 방지를 위한 사고현장 안전관리 조치</li> <li>사망자 신원확인 등 수사</li> <li>접경해역(중국·일본 등과의 접경해역과 북방한계선 인근해역)에서는 가용한 통신망을 활용하여 북측 등에 상황 통보 또는 수색구조 협조요청 및 관계기관 공유(국방부·통일부에 북측 협조통신 요청)</li> </ul>
소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긴급통제단 가동(헬기지원,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등)</li> <li>수중, 해상, 항공, 해안 탐색 및 사상자 구조·이송 지원</li> </ul>
한국항공우주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청 시) 확보가능한 사고인근해역 광학위성자료 제공</li> </ul>

부 서	임무 및 역할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수습 총력 지원(상황실, 인력, 차량, 장비 등)</li> <li>-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총괄</li> <li>- 사고수습 상황실, 인력, 차량(앰블런스) 등 행정적 지원체계 가동</li> <li>- 지역내 유관기관과 협조·지원체계 가동 및 관계기관에 사고수습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요청</li> <li>○ 피해 규모 발생 시 중대본 지원요청 및 재난사태 선포 건의</li> <li>○ 피해자 가족 임시거처소 등 마련</li> <li>○ 자원봉사자 행정지원 등</li> <li>○ 의료·방역대책, 교통대책, 부족물자 지원대책 시행</li> <li>- 재난현장 인근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li> <li>○ 사상자 이송 및 응급의료 체계 가동</li> <li>- 인근 병원·장례식장 현황 파악, 유관기관에 정보 제공 등</li> </ul>
국 방 부 (해군 제3함대 31사단 95연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색 구조부대 등 수색·구조 및 방재 인력, 장비 지원</li> <li>○ 선박사고 피해 응급환자 치료 및 수송 지원(지역 의무부대) 등</li> <li>○ 접경해역(중국·일본 등과의 접경해역과 북방한계선 인근해역)에서는 가용한 통신망을 활용하여 복측 등에 상황 통보 또는 수색구조 협조 요청 및 관계기관 공유(해수부·해경청 등의 요청에 의거 복측 협조통신 시행)</li> </ul>
광주지방기상청	○ 사고해역 상세 해양기상정보 제공 강화
기획재정부	○ 사고수습 및 복구 예산 지원 검토 등
교 육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관련 재난상황 신속 보고·전파</li> <li>○ 구조본부 등에 학생·교사 등의 승선자 현황 제공 등 사상자 신원확인 및 장례비 등 사고수습지원</li>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사항 교육청(학교) 전달, 희생학생 유가족 요구사항 처리</li> <li>○ 학생 심리상담실 설치 및 심리치료 등 피해자(학생 및 가족 포함) 가족 지원</li> <li>○ 전문 상담교사 배치 등 피해학교 정상화 대책 마련 등</li> <li>○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지원 등</li> <li>○ 학생 관련 피해 발생 시 대책본부 구성 및 중수본, 중대본 등에 긴급 구조세력 지원 요청</li> </ul>
외 교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재난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서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필요시 외국 당국 및 유관기관 등에 지원 협조 요청 등</li> <li>○ 접경해역의 재난상황에 대한 외국과 정보교환 지원</li> </ul>

부 서	임무 및 역할
통 일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선원 등 북한 관련 사항에 대한 외교·안보 기관간 협력·지원</li> <li>○ 접경해역(중국·일본 등과의 접경해역과 북방한계선 인근해역)에서는 가용한 통신망을 활용하여 복측 등에 상황 통보 또는 수색구조 협조요청 및 관계기관 공유(해수부·해경청 등의 요청에 의거 복측 협조통신 시행)</li> </ul>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현장 홍보활동 지원</li> <li>○ 언론(신문·방송 등) 분석 지원</li> <li>○ 온라인 여론 수렴 및 대응 지원 등</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의료지원시스템 가동 및 응급의료자원 지원</li> <li>-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및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li> <li>○ 피해자(가족 포함) 및 사고관계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관리 및 심리상담 지원 등</li> <li>○ 피해자 보호시설 방역 실시</li> </ul>
고용노동부	○ 선원 외의 자가 관계된 해양 선박사고 대비 산재보상 관련 상담 및 보상처리 등 고용·노동 관련 업무 지원 등
여성가족부	○ 재난 피해 가족 돌봄 및 정서안정, 청소년 심리정서 안정, 직업 상담·훈련 등 취업연계 지원체계 가동 등
국토교통부	○ 항공기 등 육·공 교통수단과 관계된 해양 선박사고 발생대비 협력 지원 체계 가동 등
관할지방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현장 인근 교통통제 등 질서 유지, 해안수색 지원</li> <li>○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유언비어 수사</li> </ul>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여수지부 및 운항관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합동상황반 구성·운영</li> <li>○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기술 관련 정보(선박검사 이력) 제공 등</li> <li>○ 인근 운항 여객선에 정보제공 및 긴급구조 지원 요청</li> <li>○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시 운항관리자 파견 및 수습 지원 등 해양 사고 상황에 따른 정부활동 지원</li> </ul>
한국해운조합	○ 사고 연안여객선의 승선자 세부현황, 화물·보험 현황 등을 구조기관 및 유관기관에 제공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어선 안전지도 및 홍보방송 실시</li> <li>○ 출어선 안전 해역으로 대피제도 등</li> </ul>
해양환경공단 여수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류오염 발생시 방제 초동조치</li> <li>○ 유류오염 방제를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li> <li>○ 선박 화재시 예선(소방) 지원</li> <li>○ 사고위험 선박 검사이력 확인</li> </ul>
선박검사 대행기관 (한국선급 여수광양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 상황 전파</li> <li>○ 필요시 ERS(긴급응답서비스) 긴급 대책반 구성</li> <li>- 안전성 평가 및 분석, 구난 대책 수립</li> <li>○ 사고 / 손상 조사 및 상세 기술 검토안 마련 등</li> </ul>



# V.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 V.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 1 발생상황

#### 가. 상황

##### □ 개요

- 2000년 0월 0일 러시아 보스토니치항을 출항하여 광양항 입항 중인 A호[총톤수 20백톤, 러시아 국적, 적재화물(유연탄)]가 광양항에서 출항중인 국적 급유선 B호[차항 광양항, 총톤수 5백톤, 화물 벙커C유 10KL]와 광양항 북방파제 남동쪽 1.5마일 해상에서 충돌함

##### □ 세부내용

- (일 시) 2000년 0월 0일, 10시경
- (장 소) 광양항 남동쪽 1.5마일 해상
- (피 해)

인적피해	- A호: 선원 20명중→9명 중·경상, 2명 실종 - B호: 선원 10명중→4명 중상, 3명 실종, 2명 사망
물적피해	- A호는 좌현 선수 수면상 1미터 부근 선체 파공(10MX2M) - B호는 좌현 중앙 선체 파공(20MX3M)되고, 선체가 좌현으로 심하게 기울 상태임(→ 침몰될 가능성이 높음)
기타피해	- 급유선 B호의 화물(벙커C유) 잔존유(약 2KL)가 일부 유출되고 선체에서 화재가 발생함

##### □ 기타사항

- (기상상태) 풍향은 북북서에 바람은 초속 10미터, 파고는 약 1.5미터로 향후 24시간내 더 악화될 것으로 예보
- (언론보도) 양 선박 충돌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한국적 급유선 B호는 선체 파공 및 화재로 인해 침몰 가능성이 있음. 기상상태 불량으로 수색 및 구조에 어려움이 예상됨



## 나. 조치사항 및 절차

###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 부 내 용	비 고
(가) 초동조치	(가-1) 사고접수 및 상황파악	YGPA 재난안전실, 당직실
(나) 긴급조치	(나-1) 긴급 수색·구조활동요청 (나-2) 안전조치 이행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YGPA 재난안전실, 당직실
(다) 비상소집 및 상황판단회의	(다-1) 비상소집 (다-2) 상황판단회의	YGPA 재난안전실, 비상대책본부
(라) 위기경보발령		YGPA 재난안전실, 비상대책본부, 해양수산부
(마) 사고대응조직 설치		사고유형에 따른 담당부서
(바) 사고수습활동		해양경찰서, 국방부, 소방서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YGPA 재난안전실
(사)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YGPA 재난안전실, 지방해양수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 2) 조치내용

### (가) 초동조치

#### 가-1. 사고접수 및 상황파악(부록 1의 서식 1)

- 신고자 : 행위자 또는 사고 목격자
- 접수처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청) 등
- 보고(통보) : 사고를 접수한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청)는 신속히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로 보고(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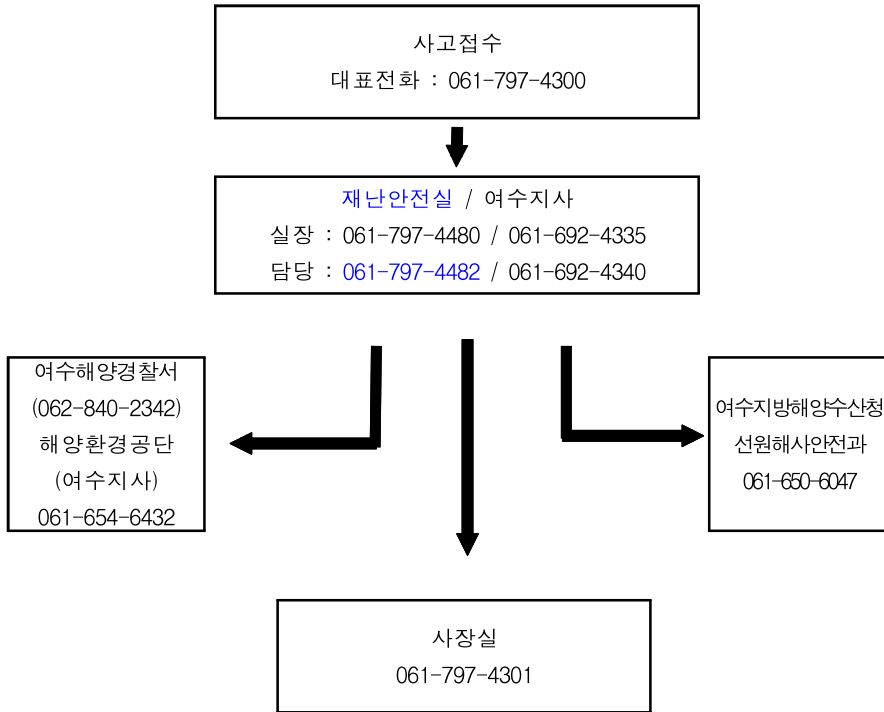
#### 가-2. 상황파악 요령

- 가능한 6하 원칙에 따르되 해양경찰서(청), 지방해양수산청, 선사, 보험사, GICOMS,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가정보 입수

#### 가-3. 상황파악 요소

-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원인, 인적·물적 피해, 오염 여부
- 사고선박 제원, 소유자 및 대리점, 승선인원, 화물, 보험 현황
- 오염 확산 여부, 부근 해역 교통 장애 여부
- 해상·기상 상태 및 기타 요청에 필요한 사항

## 여수광양항만공사 상황발생 접수·보고 체계



※ 각 팀 대표전화(061-797- )

재난안전실	물류전략실	항만개발부	항만시설부	여수지사	경영지원부
4480	4420	4520	4530	692-4335	4340

## (나) 긴급조치

### 나-1. 긴급 수색·구조 활동 요청

- 협조요청기관 : 해양경찰서(청), 국방부,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자치단체 등
- 협조요청사항 : 가용 선박 및 인력,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 진압 용 특수 약제, 유처리제 및 유회수기 등

### 나-2. 안전조치 이행

-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경찰서(청), 항만공사의 통제 하에 사고인근 해역 운항 및 부두 접안 통제 실시
- 항행안전방송 실시(해양경찰청 VTS센터 협조)
- 선박침몰에 따른 해상 부유물로 항행안전에 위협을 미치거나 해양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장애물 제거 명령 조치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0조), 해사안전법(제2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배타적 경제수역법(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해당 장애물 소유자(점유자,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 운항자를 포함)에게 해양수산부장관,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거 명령
- 항만 내 취약시설 등 정비·점검
- 유류오염 발생시 선주(선박대리점)에 대한 방제명령(해양경찰청)

## [다] 비상소집 및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다-1. 비상소집

- 소집명령 : 재난안전실장, 관련부서 대상 상황전파 및 사장 보고
- 소집대상 : 재난안전실, 항만시설부 등 관련부서

### 다-2.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① 상황판단회의 개최 : 위급상황으로 인해 유선개최(비상대책반장 주관)
  - ② 경보단계 발령 전파 : 상황판단회의 결과 “심각”단계로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유관기관 전파
  - ③ YGPA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 설치장소 : 여수광양항만공사 1층 재난안전센터
    - 반 장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 구 성 : 총괄통제부, 운영대책부, 복구대책부, 지원부
    - 설치기간 : 선박사고 처리 완료시까지
      - ※ 상황에 따라 본부장(사장)이 기간조정 가능
    - 임 무 : 지역사고수습본부 임무기능에 협조 및 지원
      - 현장상황 및 정보의 전파·보고
      - 관할구역 내 해상교통 통제 및 안전 확보
      - 선박 해양사고 등으로 인해 관할구역 항만시설이 손상된 경우 시설 복구·수리 및 비용 구상 등 조치
- \* 여수·광양항 항계내 지역에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을 칭함

### ○ 설치 및 운영

- 비상대책반의 사고대응반을 사전에 구성
  - 주요내용 : 비상대책반 명칭, 설치기간, 장소, 각 부 편성 및 부별 주요임무, 근무방법, 운영내용, 사무기기 임차, 통신시설 가설, 업무용 차량임차 등 실명으로 구성하고 임무를 사전에 고지
  - 현장대응부의 사무실, 개별 통신망 파악 유지
- 사고규모에 적합한 신속적인 조직 운영
  - 사고규모에 적합하게 신속적인 비상대책본부 구성·운영
- 비상대책반 설치 검토
  - 각 실/팀장 및 사장 협의 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수산부 유선 보고
  - 설치필요성, 설치규모, 장소 등 검토
- 기 구성된 비상대책반 현장대응부 가동
  - 사고규모에 따라 탄력적 인원 구성
- 시차별 상황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 수시로 변하는 현장상황을 확인·평가하여 대응전략을 수정하여 시행
- 해경과 연계한 현장 확인 및 응급조치 지원
  - 선체기울기, 파공위치 및 크기, 구획별 침수 및 기름탱크 파손여부, 기름유출상태, 해저와 접촉여부 등 확인
  - 파공부위 봉쇄 등 응급조치 지원
- (보고) 평가결과의 사장 보고(부록 1의 서식 2), 관계부서 통보 및 관계기관 전파, 긴급시, 상황보고서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전파

#### ④ 현장 선박 이동 예인 조치 지원

- 선박 이동·예인 조치 전 합동점검반(필요시)\* 구성을 통해 선박감항성, 2차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 등 파악 및 안전조치

\* 여수청(선원해사과), KR, KOMSA, KOEM, 소방서 및 분야 전문가 등

- 선박 예인 및 이동 조치시 안전성, 2차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합동 대책회의 개최 등[선주, P&I, 여수청 각 팀, 해경, KR, KOMSA, KOEM, 소방서 및 필요시 분야 전문기관 등]

#### ⑤ 현장 방제작업 지원요청

- 해양경찰서 및 해양환경공단 방제작업 실시 요청
- YGPA 비상대책반 → 지역사고수습본부 → 해경서 및 해양환경공단
  - 관계기관(해양환경공단 여수지사) 비상연락망 (061-654-6431)
    - ※ 공단 출동지시 내용을 오염행위자, 보험사에 통보

#### ⑥ 세부 사고상황 파악

- 지역사고수습본부 상황실 상황보고서 접수·배부
  -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정보 공유
- 현장 선체상태 및 기름유출상황 파악(해경과 협조)
  - 사고현장 선원, 선주감독, 도착함정, 항공기, 현장도착 직원 대상으로 확인
  - 선체상태 : 과공위치, 과공크기, 기울기, 침몰위험, 선체상태 등
  - 해상유출상황 : 유종/유출량, 오염범위, 오염상태 확산 이동상태, 해안오염범위(지명/범위), 해안오염상태
- Check List에 의한 기본정보 확인(해경과 협조)
  - 선주, 선원, 출항지 해양수산청 직원에게 확인

- 사고개요 : 일시·장소, 사고유형, 사고접수접수자, 일시, 신고자, 연락처) 등
- 선박제원 : 선명, 선종, 총톤수, 국적, 건조일, 선체구조, 전장, 선폭, 깊이, 흘수(선수, 선미), 선장(이름, 연락처), 승무원수, 선주(상호, 연락처), 대리점(상호, 연락처) 등
- 기름적재량 : 연료유(총량 및 탱크별 적재량), 화물유(총량 및 탱크별 적재량), 화물종류(품명, 적재량)
- 보험가입사항 : P&I 보험, 선체보험, 승무원보험 등 가입회사 및 금액
  - ※ 사고선사의 대응능력 평가자료로 활용
- 시차별 조치사항 기록 유지
- 어장, 양식장 및 주요 입해시설 현황 파악 ※해경 조사자료 활용
- 시차별 유출유 확산예측 ※해경 보고서 활용
- 현장사진, 동영상 자료 입수·보고
  - 현장출동직원이 오염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상황실 및 해양수산부 전송 (#4949 재난영상전송 시스템, e-mail, Webhard 등)
    - ※ 사고규모 평가, 방제작치 및 홍보자료 등에 활용

#### ⑦ 초기 상황보고·전파

- 광양항 등 현장 → 상황반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상황반 → 해양수산부
- 광양항 등 현장에서 사고현장 파악한 내용을 상황라인을 통해 수시 보고·전파
- 초기 보고서는 초동조치사항 위주로 파악된 내용만을 가지고 신속하게 작성 보고·전파

#### ⑧ 언론보도 신속·적극적 대응

- 해양수산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사전 승인과 해경(방제대책본부)과

사전 협의를 통해 보도자료 작성, 배포

※ 여수광양항만공사 단독 판단에 의한 언론대응 금지

- 오보 및 비난보도 진상파악 시정
- 현장 언론취재지원센터의 설치
  - 원활한 상황파악과 언론보도활동 지원을 위해 사건현장과 가깝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현장 언론취재지원센터 설치
  - 언론인들의 취재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 서비스와 기자재 확보
  - 현장 언론취재지원센터는 본부와 핫라인을 통해 언론취재지원 및 본부의 대언론 방침을 수시로 교환
  - 사고현장에 출입하는 언론인 가이드 및 언론 취재현황 관리
  - 출입 기자단에게 제도개선 계획, 영상자료(VNR),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편의 제공

## (라) 위기경보 발령

- 라-1. 발령시기 :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종료 즉시
  - \* 중앙사고수습본부장(부재시 부분부장)은 필요시 직권으로 위기경보 발령가능
- 라-2. 발령권자 : 해양수산부장관(시행자 : 해사안전관리과장)
- 라-3. 발령사항 : 위기경보 수준 및 조치 사항(부록 1의 서식 3)
- 라-4. 전파기관 :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

황실, 재난대응정책과, 사회재난대응정책과), 해양경찰청(상황센터),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

- 외국적 선박 또는 외국 선원 관련 사고 발생시 외교부(상황실)에 전파

## 라-5. 사전협의

- 협의시기 : 범정부적 차원의 평가와 조치가 요구되는 "심각" 수준의 경보발령과 해제 또는 위기경보 수준 조정시
- 협의기관 : 행정안전부(사회재난대응정책과)
- 단,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위급 상황의 경우 우선 경보발령 조치를 시행한 후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에 보고(통보)

## (마) 사고대응조직(비상대책반) 설치

- 마-1. 구성·운영 주체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 마-2. 유형 : 여수광양항만공사 비상대책반
- 마-3.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 지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광역 또는 중앙)구조본부와 연계 운영(협조·지원 관계)

## **[바] 사고수습활동**

바-1. 사고현장에 현장파견관\* 파견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에 연락관 파견

\* 피해가족 대상 애로사항 청취 및 수색·구조활동 설명, 수습상황 총괄모니터링 및 본부 비상대응조직 연락관 역할 등 수행

바-2. 긴급구조활동 실시 : 해양경찰청, 소방청, 국방부 등

바-3. 긴급구조기관(해경)의 지휘와 통제하에 인명 구조 및 방제활동 지원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등)

바-4. 유관기관에 대한 공조·협력 지원요청(필요시) 등

바-5. 접경해역(중국·일본 등과의 접경해역과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는 유관기관(국방부, 통일부, 해경청 등)은 가용한 통신망을 활용하여 북측 등에 상황 통보 또는 수색구조 협조요청 및 관계기관 공유(국방부·통일부는 해수부·해경청 등의 요청에 의거 북측 협조통신 시행)

## **[사]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사-1.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

사-2. 사고지역 복구(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등)

사-3. 사고수습 처리상황 종합 보고(중앙사고수습본부)

사-4. 상황종료 판단(중앙사고수습본부)

사-5. 위기경보 수준 조정·해제 결정 및 전파(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회의)

사-6. 복구 관련 사항을 해양수산부 소관 부서,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등) 및 지자체(시·군·구)에 인계

사-7.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전파(중앙사고수습본부)

사-8. 선주 및 선주보험사등과 선박 인양계획 협의·검토

사-9.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지원 및 장례절차 지원방안 검토

### 3) 체크리스트

조치절차		조치내용	수행여부		비고
			YES	NO	
초동조치	사고접수 및 상황파악	• 사고 상황보고서 접수, 추가정보 등 입수			• 지방청 또는 해경청(서)는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 보고
		• 상황전파·보고			• 사고상황 전파(종합상황실)
긴급조치	긴급 수색·구조요청	• 가용선박, 인력 등 수색 구조, 방재자원 등 지원요청			• 국방부, 해경청(서), 지방해수청, 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 사고인근해역 운항 및 부두접안 통제(필요시)			• 지방청
	안전조치 이행	• 항행안전방송			• 해경청 VTS
		• 장애물제거명령조치			• 소관부처 및 지자체
• 유류오염시 방제명령				• 해양경찰청	
비상소집·상황판단회의	비상소집	• 안전책임관 소집명령에 따라 해사 안전관리과장이 소집			• 사고 관련 실·국(부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
	상황판단회의	• 위기경보수준 결정, 긴급조치사항 보완여부,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여부 결정 등			• 안전책임관 부재시 최고선임자 주재, 긴급시 탄력적 조정
위기경보 발령	관심·주의·경계단계	• 상황판단회의 종료시 즉시발령			• 국가안보실 행안부, 해양경찰청,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등 전파(단, 긴급시 우선 경보발령 후 보고·통보)
	심각단계	• 심각단계 경보발령 해제 또는 경보수준 조정시 행안부 협의 필요			
사고대응조치설치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 중앙(지역) 사고수습본부 설치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구조본부 설치시 연계 운영
사고수습	직원파견	• 사고현장 수습조정관 파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탄관 파견			
	방제활동 지원	• 해경청 지휘·통제하 인명구조·방제활동 지원			• 지방해수청, 어업관리단 등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사고조사	•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사고지역 복구	• 사고지역 복구			• 지방해수청, 지자체
	상황 판단	• 사고수습 처리 상황 종합보고 및 상황중료 판단			• 중앙사고수습본부
	위기경보 조정	• 위기 등급 조정, 통보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회의
	복구사항 인계	• 소관부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자체 인계			
	선박인양	• 선주·보험사 선박인양 계획 검토			• 필요시
피해자지원	• 피해자 및 유족 배보상 지원 및 장례절차 검토				

###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구분	반장 및 반원	임무와 역할
총괄 통제부	부장 : 재난안전실장 부원 : 소속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수습반 총괄 지휘 및 반장 보좌</li> <li>○ 비상대책반 설치 및 인원 구성</li> <li>○ 유관기관 대책회의 참석 및 참석결과 보고</li> <li>○ 필요시 유관기관에 지원 요청</li> </ul>
	부장 : 물류전략실장 (여수지사장) 부원 : 소속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의 사고수습 조치사항 파악 및 보고</li> <li>○ 인명피해시 사상자 후송 및 응급조치 지원</li> <li>○ 사고원인, 피해상황 조사 및 분석 지원</li> <li>○ 오염사고 발생 시 상황파악 및 보고</li> </ul>
복구 대책부	부장 : 항만시설부장 부원 : 운영본부 및 <b>개발사업본부</b> 소속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시설(부두, 교각) 피해발생시 복구 지원</li> <li>○ 침몰선박 관리 지원</li> <li>○ 표지시설 피해발생시 복구 지원</li> <li>○ 소관업무 관련 피해 발생시 복구 지원 등</li> </ul>
	부장 : 경영지원부장 부원 : 경영본부 소속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대책반 행정지원</li> <li>○ 필요시 현장 언론취재지원센터 설치</li> <li>○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등 위기대응 홍보 등</li> </ul>

- ※ 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지 않을 경우 각 주관부서 별로 임무 활동을 실시하며, 총괄부 임무는 사고 주관부서에서 수행
- ※ 각 부서별 인원·임무는 사고의 유형과 전개양상, 피해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라. 유관기관 임무와 역할

부 서	임무 및 역할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li> <li>○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후속대응반 운영</li> <li>○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li> </ul>
대통령비서실 (소관비서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분야별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li> <li>○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li> </ul>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국무총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li> <li>○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사항 검토(해당시)</li> </ul>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수습 총력대응 체제 유지(재난대응 협업체계 본격 가동)</li>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범정부 재난대응 협업체계 가동(필요시)</li> <li>- 재난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보고·전파 계속</li> <li>- 사고 관련 유관기관 공무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 요청(필요시)</li>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직원 현장상황관리관 현지 파견 및 중앙수습지원단 구성·운영</li>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필요시)</li>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사고상황 점검 및 수습대책 마련 등(필요시)</li> <li>○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또는 재난복구 비용 등 지원 필요성 검토 등(필요시)</li> <li>○ 자원봉사 등 육상지원세력 협조요청(필요시)</li> <li>○ VIP 중대본 상황실 방문에 따른 상황보고 등</li> </ul>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 활동 협조요청 및 취합</li> <li>○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교부 필요성 검토 등</li> </ul>
소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긴급통제단 가동(헬기지원,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등)</li> <li>○ 수중, 해상, 항공, 해안 탐색 및 사상자 구조·이송 지원</li> </ul>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보가능한 사고인근해역 광학위성자료 검토·제공</li> </ul>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성자료 분석 및 결과통보</li> </ul>

부 서	임무 및 역할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수습 총력 지원(상황실, 인력, 차량, 장비 등)</li> <li>-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총괄</li> <li>- 사고수습 상황실, 인력, 차량(앰블런스) 등 행정적 지원체계 가동</li> <li>- 지역내 유관기관과 협조·지원체계 가동 및 관계기관에 사고수습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요청</li> <li>○ 피해자 가족 임시거처소 등 마련</li> <li>○ 자원봉사자 행정지원 등</li> <li>○ 의료·방역대책, 교통대책, 부족물자 지원대책 시행</li> <li>- 재난현장 인근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li> <li>○ 사상자 이송 및 응급의료 체계 가동</li> <li>- 인근 병원·장례식장 현황 파악, 유관기관에 정보 제공 등</li> </ul>
국 방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색 구조부대 등 수색·구조 및 방제 인력, 장비 지원</li> <li>○ 선박사고 피해 응급환자 치료 및 수송 지원 (지역 의무부대) 등</li> </ul>
기 상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해역 상세 해양기상정보 제공 강화</li> </ul>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수습 및 복구 예산 지원 검토 등</li> </ul>
교 육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관련 재난상황 신속 보고·전파</li> <li>○ 구조본부 등에 학생·교사 등의 승선자 현황 제공 등 사상자 신원확인 및 장례비 등 사고수습지원</li>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사항 교육청(학교) 전달, 희생학생 유가족 요구사항 처리</li> <li>○ 학생 심리상담실 설치 및 심리치료 등 피해자(학생 및 가족 포함) 가족 지원</li> <li>○ 전문 상담교사 배치 등 피해학교 정상화 대책 마련 등</li> <li>○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지원 등</li> <li>○ 학생 관련 피해 발생 시 대책본부 구성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중대본 등에 긴급 구조세력 지원 요청</li> </ul>
외 교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재난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서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필요시 외국 당국 및 유관기관 등에 지원 협조 요청 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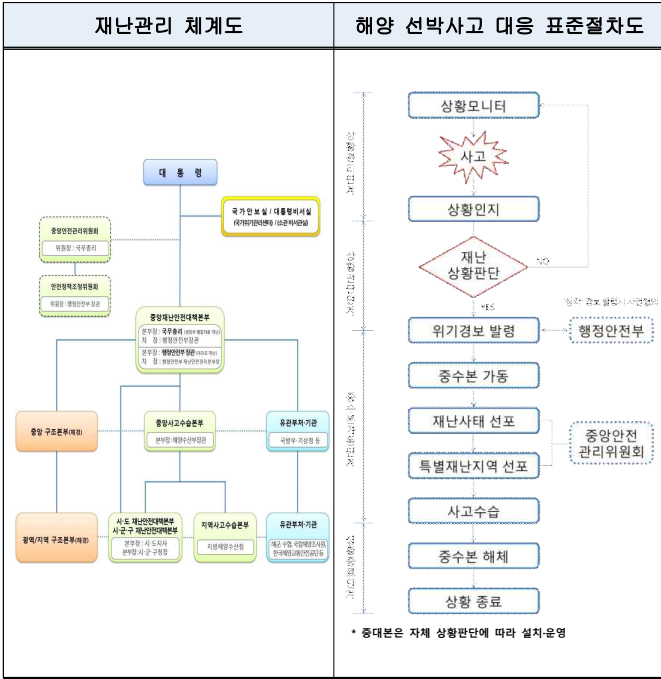


부 서	임무 및 역할
통 일 부	○ 선박, 선원 등 북한 관련 사항에 대한 외교·안보 기관 간 협력·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현장 홍보활동 지원 ○ 언론(신문·방송 등) 분석 지원 ○ 온라인 여론 수렴 및 대응 지원 등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지원시스템 가동 및 응급의료자원 지원 -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및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 피해자(가족 포함) 및 사고관계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관리 및 심리상담 지원 등 ○ 피해자 보호시설 방역 실시
고용노동부	○ 선원 외의 자가 관계된 해양 선박사고 대비 산재보상 관련 상담 및 보상처리 등 고용·노동 관련 업무 지원 등
여성가족부	○ 재난 피해 가족 돌봄 및 정서안정, 청소년 심리정서 안정, 직업상담·훈련 등 취업연계 지원체계 가동 등
국토교통부	○ 항공기 등 육·공 교통수단과 관계된 해양 선박사고 발생대비 협력·지원 체계 가동 등
경 찰 청	○ 사고현장 인근 교통통제 등 질서 유지, 해안수색 지원 ○ 사망자 신원확인 및 유언비어 수사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 자체 합동상황반 구성·운영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기술 관련 정보(선박검사 이력) 제공 등 ○ 인근 운항 여객선에 정보제공 및 긴급구조 지원 요청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시 운항관리자 파견 및 수습 지원 등 해양사고 상황에 따른 정부활동 지원
한국해운조합	○ 사고 연안여객선의 승선자 세부현황, 화물·보험 현황 등을 구조기관 및 유관 기관에 제공
수협중앙회	○ 출어선 안전지도 및 홍보방송 실시 ○ 출어선 안전 해역으로 대피제도 등
한국선급	○ 유관기관 상황전파 ○ 사고 / 손상 조사 기술 지원 - 안전성 평가 및 분석, 구난 대책 수립 지원

# V. 기관대응수칙

관련 매뉴얼  
 ○ 「해양 선박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표준매뉴얼 : 해양수산부  
 ○ 「해양 선박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광역시도(11)

**I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II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 선박사고 대응 프로세스**

구분	재난발생 단계 (상황계수 및 보고-전파)	초동대응 단계	비상대책반 운영	수습복구 단계
초기 대응 부서	<b>상황계수</b> ● 초기상황 파악 및 판단 - 위기상황확인 및 보고 · 전파  <b>상황전파 및 보고</b> ● 대응소관부서 전파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경 등 유관기관 전파 ● 필수요원 비상소집	● 추가피해(인·물적) 및 현장대응상황(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경, 해군, 지자체 등 유관기관) 파악 ● 피해상황 모니터링 및 내부 보고체계 유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해경의 상황보고서 접수 및 전파	● 피해 및 대처상황 모니터링 ● 재난안전대책지원본부 운영(본부장 : 사장) - 현장 방제작업 지원 요청 - 주기적인 상황 보고 전파	● 피해 및 복구상황 모니터링 ● 현장 및 중대본·지대본 상황보고서 전파
대응 소관 부서	● 부서장 · 실무자 정위치 ● 초기상황 파악 및 보고 - 사고현황 및 사고대응 현황 파악 - 사고해역 주변 현황 파악 - 사고정보 파악	● 초기정보 입수, 추가상황 파악 내부보고 및 전파 - 피해규모 및 대응상황 등 파악, 관계기관에 전파(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경, 지자체 등) ● 인력 및 장비 지원 사항 파악 ● 상황판단회의 주관 ● (필요시) 관계기관에 인력·장비 출동요청	● 재난안전대책지원본부 근무자 발령 요청, 반별 편성 - 비상대책반 종합상황실 점검, 대책지시 - 중대본·지대본 지원·협조체계 구축 - 인력, 장비, 물자 등 부족분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필요시) 지역사고수습본부에 인력 파견	● 사고원인조사 및 제방방대책 마련 ● 사고지역 피해 현황 조사 ● 사고지역 복구
사장 · 부사장	<b>초기상황 확인</b> ● 초기상황 확인 및 초동대응 지휘  <b>조치사항 지시</b> ● (필요시) 긴급조치 지시	<b>초기대응 점검 및 조치사항</b> ● 사고 상황 진단 및 대처상황 점검 - 피해현황, 현장조치사항, 대응태세 확인 ● 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필요성 판단 ● 기관장 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b>비상대책반 지휘</b> ● 비상대책반 운영 총괄 - 비상대책반 운영방식 검토 - 비상대책반 종합상황실 점검, 대책지시 - 지역사고수습본부 지원 지시 - 피해확산 방지 및 조기수습을 위한 지시 ● 복구 및 안전조치 이행 특별지시 ● (필요시) 현장방문 및 피해상황 확인	● 비상대책반 해체 결정 ● (필요시) 현장방문 및 수습상황 점검 ● 피해보상 관련 업무분장 및 역할 조정 ● 유관기관 사고수습 협력 ● 재난복구 협력 총괄 - 재난합동조사단 협력(소속직원 연락관 파견)
담당부서 실무장	● 초기상황 확인 및 초동대응 지휘 ● 대응부서에 긴급조치 지시 ● 2차 피해 가능성 판단 및 보고(사장/본부장) ● 상황기록유지 및 보고	● 위기경보 발령단계 결정 ● 해양수산청, 해경 및 지자체 대처상황 점검 및 필요 사항 검토 · 지원 ● 관계기관(해양수산청, 해경, 해군, 지자체 등) 핫라인 유지	● 사장 · 본부장 보좌, 비상대책반 운영 - 비상대책반 상황회의 주관 - 실무반별 역할 분담 및 조치사항 점검 - 중대본·지대본 대처상황 점검, 지원 필요사항 검토, 지원 ● 비상대책에 관한 관계부서 협의	● 응급복구 등 수습상황 점검 ● 피해복구 자원 등 파악 · 지원
대변인	● 상황보고 확인 - 언론 모니터링 등 보도내용 확인 - 내부보고자료 수신	● 보도자료 작성 및 브리핑 준비 ● 현장 대변인과 핫라인 유지 - 현장 대변인 :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지명	● 위기관리 홍보대책반 구성(기획조정실) ● 상황보고 확인, 지대본 및 지수본 관련 언론대처계획 설정 지원 - TV, 인터넷 등 언론 보도 모니터링 및 부정확 · 이확인 보도 (오보 및 유언비어 등) 대처 ● 보도자료 작성	● 단계별 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 사고대응 수습상황 홍보(국민불만 해소) ● 사장 브리핑 및 인터뷰 준비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 III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 선박사고 대응 주요 협업기능

기능	① 재난상황관리	② 긴급생활안전지원	③ 긴급 통신지원	④ 재난자원 지원	⑤ 교통대책	⑥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주관부서	재난안전실, 물류전략실	경영지원부	항만시설부	물류전략실	물류단지부, 여수지사	경영지원부
연계부처	해양경찰청, 해군, 지자체 등	지자체 등	지자체 등	해양경찰청, 해군, 지자체 등	해상교통안전센터, 지자체 등	지자체 등
주요 업무	<p>&lt;사고 총괄 지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수습 추진상황 보고(대내·외)</li> <li>· 각 실무반 활동상황 지원</li> <li>· 사고 기록 및 유지(보고서 작성)</li> <li>·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상황 전파</li> <li>·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유지</li> </ul>	<p>&lt;재난발생지역 유가족 대책업무 지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상자 후송·처리상황 파악 및 지원</li> <li>· 유가족 대책업무 지원(연락, 보상, 장례 등)</li> </ul>	<p>&lt;긴급 통신 관련 행정지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와 연계하여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관련 행정지원</li> <li>· 지자체와 연계하여 긴급통신 장비 보급 관련 행정지원</li> </ul>	<p>&lt;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자원 지원 협조요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경찰청, 해군, 지자체 등에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자원 지원 요청 (인력·장비, 수색·구조 등)</li> </ul>	<p>&lt;재난발생지역 교통소통대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인근 해역 운항 및 부두 접안 통제 실시(항만물류반)</li> <li>· 항행안전방수 요청 (해상교통안전센터)</li> <li>· 해상 부유물 장애물 제거 총괄 (해양수산환경반)</li> </ul>	<p>&lt;재난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및 전염병 방역서비스 지원 협조요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와 연계하여 통해 재난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및 전염병 방역서비스 지원</li> </ul>

기능	⑦ 재난현장 환경정비	⑧ 자원봉사관리	⑨ 사회질서유지	⑩ 수색,구조,구급	⑪ 재난수습홍보
주관부서	물류전략실, 여수지사	경영지원부	각 부서	물류단지부, 여수지사	경영지원부
연계부처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등	지자체 등	지자체 등	해양경찰청, 해군, 지자체 등	지자체 등
주요 업무	<p>&lt;재난현장 방제현장 현황파악 및 예찰활동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제현장 및 인력 관리</li> <li>· 방제장비 현황파악 등 지원계획 수립</li> <li>· 해양오염 예찰활동 및 지원</li> <li>· 해양선박사고 발생 지역 해상의 부유물 및 해상 쓰레기 수거</li> <li>· 수색·구조·수습 현장 투기관리</li> </ul>	<p>&lt;자원봉사자 동원 및 배정, 기술인력 지원 협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와 연계하여 재난지역 자원봉사 관리 지원</li> </ul>	<p>&lt;교통통제, 현장통제, 피해지역 치안유지 요청 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명구조 및 사고해역 인근 주민긴급 대피 지원 요청(총괄반)</li> <li>· 사상자 신원 파악(항로표지반)</li> <li>· 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 예방 활동 요청(총괄반)</li> <li>· 교통통제 및 현장통제 요청(총괄반)</li> </ul>	<p>&lt;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사망실종자 수색 협조 요청 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경찰청, 해군, 지자체 등에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자원 지원 요청 (인력·장비, 수색·구조 등)</li> <li>· 인명구조 활동지원(항만물류반)</li> <li>· 방제 활동지원(해양수산환경반)</li> </ul>	<p>&lt;재난관련 언론대국민 홍보 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시 현장 언론취재지원센터 설치</li> <li>· 유가족 브리핑</li> <li>·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등 위기대응 홍보</li> </ul>

### IV 해양 선박사고 관계기관 주요 임무

부처	주요 임무		
	초기대응	지수본·중수본	중수본·중대본
해양수산부	· 재난징후 감시활동 집중 강화 · 장·차관, 관련 실·국장, 담당부서 및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등에 보고·전파	· 직원 비상소집 및 상황판단회의(자세이팅회의) 개최 ·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등 사고대응 총괄지휘 체계 구축 · 선박사고 원인분석을 위한 조사체계 구축 등
지방해양수산청	· 재난징후 파악, 보고·전파(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등) 및 초동조치 · 보고체계 및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 확인·점검 등	· 재난상황 모니터링 강화 · 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본부장 : 지방해양수산청장)	· 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해상본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사상자 긴급구조 및 방제 지원
국립해양조사원	· 사고해역 해양관측 및 예측(조석, 조류 등) 활동 집중 실시 · 사고해역 항행정보 발령 등	· 사고해역 해양관측 및 예측(조석, 조류 등) 활동 집중실시 강화 · 사고해역 항행정보 발령 지속 실시 등	· 사고해역 실시간 해양관측 및 예측(조석, 조류 등) · 사고해역 수로측량 및 항행정보 발령 등
국립수산과학원	· 피해예방을 위한 수산 자원조사 및 연안 어장환경 모니터링 활동 강화 · 수산과학조사선 종합상황실 상시 운영 및 전파체계 유지	· 피해예방을 위한 수산과학조사, 연안 어장환경 모니터링 등 시연조사 활동 모니터링 집중 강화 · 수산과학조사선 종합상황실 운영 강화(24시간), 상황 전파체계 유지	· 사고 대응체계 가동 및 보고·전파체계 유지 · 사고해역 수산과학조사, 연안어장 환경 모니터링 등 정밀 수산과학조사 활동 실시 · 오염도조사 및 유해, 위험성 평가 지원 등
어업관리단	· 어업지도선 등을 통한 조업어선 안전 조치 · 재난징후 파악, 보고 및 초동조치 이행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가동 등	· 어업지도선 등의 수색·구조 협조 지원	· 어업지도선 등의 수색·구조 협조 지원 및 진행 상황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지속 보고
해양경찰청	·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전파 · 관할해역 내 해상교통관계 강화 · 구조세력 긴급출동 조치 및 현장 구조활동 전개 · (필요시) 구조 유관기관 지원 요청	·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전파 · 관할해역 내 해상교통관계 강화 · 구조세력 긴급출동 조치 및 현장 구조활동 전개 · (필요시) 구조 유관기관·단체 구조지원 동원 및 현장 지휘	·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전파 · 관할해역 내 해상교통관계 강화 · 구조본부 가동에 관한 통령에 따른 단계별 조치 · 현장 구조활동 총력 전개 및 해양오염 발생시 긴급방제 작업 · 구조 유관기관·단체 구조지원 동원 및 현장 지휘
국가안보실	·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대통령비서실	· 재난상황 종합평가, 초기·전락대응반 운영 · 대통령 지시사항 확인, 분야별 정책·전략적 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국민안전대책 등 총괄·조정	· 재난상황 종합평가, 초기·전락대응반 운영 · 대통령 지시사항 확인, 분야별 정책·전략적 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국민안전대책 등 총괄·조정	· 재난상황 종합평가, 초기·전락대응반 운영 · 대통령 지시사항 확인, 분야별 정책·전략적 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국민안전대책 등 총괄·조정
행정안전부	· 재난상황 모니터링	· 재난상황 모니터링 · (필요시) 범정부 재난대응 협업체계 가동 검토 등	· 자원봉사 활동 협조요청 및 취합 ·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교부 필요성 검토 등
지방자치단체	· 재난상황 접수 및 상황 판단 · 사상자 구조·치료 지원체계 및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점검 · 병력, 장비확장 등 사상자 진료·안치시설 및 차량, 장비 등 확인	· (필요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사고수습 지원 현장 상황실 설치, 응급진료, 피해 유가족 지원시설, 현장 정보통신 시설, 차량 지원 등 사고수습을 위한 행정적 지원 검토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 구조본부 가동에 관한 통령에 따른 단계별 조치, 응급진료, 피해 유가족 지원시설, 현장 정보통신 시설, 차량 지원 등 사고수습을 위한 행정적 지원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지원시스템 준비태세 확립 · 피해자(가족 포함) 및 사고관계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관리 및 심리상담 지원계획 검토 등	· 응급의료지원시스템 가동 준비 · 피해자(가족 포함) 및 사고관계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관리 및 심리상담 지원 준비 등	· 응급의료지원시스템 가동 · 피해자(가족 포함) 및 사고관계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관리 및 심리상담 지원 등 · 피해자 보호시설 방역 조치
국방부	· 초동대응에 동원 가능한 장비·인력 등 현황 확인 등	· 대응 인력·장비 등 출동태세 점검 · 긴급 지원요청을 받았을 경우 구조세력 현장 출동, 인명 구조조치	· 인명 수색·구조 방제 인력 및 장비 지원(담석 구조부대 등) · 응급환자 치료 및 수송 지원(지역 의무부대 등)
기상청	· 해양기상정보 제공	· 상세 해양기상정보 유관기관 제공	· 사고해역 및 인근지역 상세 기상정보 제공 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요청시) 확보가능 사고인근해역 광학위성자료 제공	· (요청시) 확보가능 사고인근해역 광학위성자료 제공	· 확보가능 사고인근해역 광학위성자료 제공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요청시) 확보가능 사고인근해역 광학위성자료 분석결과 제공	· (요청시) 확보가능 사고인근해역 광학위성자료 분석결과 제공	· 확보가능 사고인근해역 광학위성자료 분석결과 제공
경찰청	· 사고현장 인근 질서유지, 해안수색 지원 계획 수립 검토 · 사망자 신원확인, 유언비어 등에 대한 수사계획 수립 검토	· 사고현장 인근 질서유지, 해안수색 지원 계획 수립 검토 강화 · 사망자 신원확인, 유언비어 등에 대한 수사계획 수립 검토 강화	· 사고현장 인근 교통통제, 질서유지, 해안수색 지원 · 사망자 신원확인, 유언비어 등에 대한 수사

## V 비상연락망

### □ 해양 선박사고 대응 기관 비상연락망

○ 여수광양항만공사(대표전화 : 061-797-4300)

해당분야	부서명		연락처	
			전화	FAX
재난 총괄	주간	재난안전실	061-797-4482	061-797-4494
	야간 (공휴일)	당직자	061-797-4300	061-797-4502

### ○ 유관부처 및 기관

기관명	구분	전화	팩스
행정안전부	중앙상황실	044-205-1544	044-205-8890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044-200-5895~6	044-200-5886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당직실	061-650-6029 061-650-6026	061-654-2353 061-653-4434
여수해양경찰서	상황실	061-840-2242	061-840-2942
해양환경공단	여수지사	061-654-6432	061-654-6430
전남소방본부	상황실	061-286-0900	061-286-0910
광양소방서	상황실	061-798-0900	061-798-0910
여수소방서	상황실	061-680-0900	061-680-091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지부	061-654-5262	061-654-5265
한국선급	여수광양지부	070-8799-7800	070-8799-7819
여수항도선사회	상황실	061-660-1333	061-665-0202

### ○ 지방자치단체

구분	부서명	전화	FAX
전라남도청	해운항만과	061-286-6831	061-286-4794
광양시	재난종합상황실	061-797-4949	061-797-2593
여수시	상황실	061-659-4949	061-659-5829

기관명	부서	연락처	
		전화	팩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02-770-4380~5	02-770-4887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안전환경정책관실 상황실	044-200-2241 044-200-2348, 51 044-200-2860~1	044-200-2247 044-200-2367 044-200-2862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실	044-200-2810	044-200-2825
국가정보원	상황실	02-3414-9437	02-2187-0311
국방부	합참지휘통제실 재난상황실 재난관리지원과	02-748-0301~4 02-748-3181~3 02-748-5768	02-748-5795 02-748-5795 02-748-5778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	044-201-4679	044-201-5533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실 상황실	02-3150-2229, 1234	02-3150-3657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893	044-203-6971
기상청	해양기상과 예보정책과	02-2181-0741,0747 02-2181-0502	02-2181-0749 02-847-4419
보건복지부	비상안전담당관 (재난안전TF)	044-202-2652	044-202-3989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중앙119구급상황 관리센터	044-205-6119 044-320-0119	044-205-8877 044-205-871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100-6330	02-2100-6485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수색구조과 상황센터 기동방제과	032-835-2149 032-835-2345 032-835-2142 032-835-2195	032-835-2991 032-835-2849 044-858-8182 044-835-2994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 산업교통재난대응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5217 044-205-6332 044-205-1540~5	044-205-8954 044-205-8967 044-205-8890
통일부	정보상황실 비상안전담당관(상황실) 이산가족과(여선) 남북경협과(상선)	02-2100-5762 02-2100-5670~1,3 02-2100-5911 02-2100-5812	02-733-0926 02-2100-5674 02-2100-5819 02-2100-5829



**부록 2** 자체위기평가회의(상황판단회의) 보고서 및 작성요령

①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보고서

② 재난유형	해양 선박사고		
③ 경보내용	없음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④ 보고번호		⑤ 기관명	
⑥ 관련근거(출처)			
⑦ 통보기관			
⑧ 1. 관련상황/정보			
⑨ 2. 분석/판단			
※① 3. 조치사항			
※② 작성자	○○국·실	○○과 직책	(성 명) (전화)

- 작성요령

- ① 보고서의 종류 :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 상황판단회의 후 위기경보 없을 시 또는 위기경보 발령시 사용
- ② 위기유형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유형, 또는 간략하게 제목 서술
- ③ 위기경보 내용을 표시하거나 없을 시에는 빈칸으로 둠
- ④ 보고번호 : 부처에서 부여한 일련번호(년도-###, 2016-001)
- ⑤ 기관명 : 부처/기관명 기재
- ⑥ 관련근거 : 정보의 출처로서, 언론, 문서, 직무 등
- ⑦ 통보기관 : 관련보고서 전파 부처/기관
- ⑧ 관련상황/정보 : 부처 판단 결과
- ⑨ 분석/판단 : 부처 판단 결과
- ※① 조치사항 : 부처/기관의 조치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
- ※② 작성자 : 부처/기관의 부서와 직책 연락처 기재

**부록 3** 위기경보 발령문

**해양 선박사고 위기경보 발령문**

수 신 : 배부처 참조	
발 신 : 해양수산부장관	
<b>제목 : 해양 선박사고 위기경보 발령</b>	<b>배부처</b>
○ 발령 일시 : ○ 발령 수준 : 관심/주의/경계/심각 ○ 발령 사유 : - - ○ 조치 사항 가. 우리 부 조치사항 - - 나. 유관기관 조치사항 - -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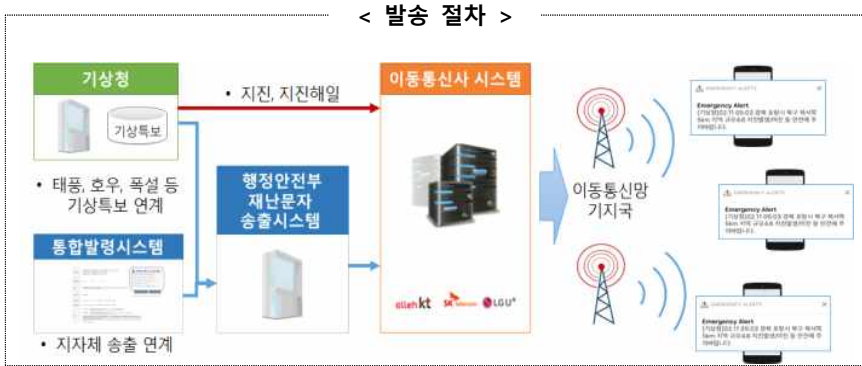
## 부록 6 위기상황 대국민 홍보·전파체계

### 1 긴급재난문자(CBS; Cell Broadcasting Service)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 및 제6항,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행정안전부예규)

### □ 시스템 개요

- (구축/운영) '06.6~9월(2G폰), '12.9~12월(4G폰) / '06.12월
- (송출목적) 휴대폰으로 전국 또는 해당지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등 신속 전파
- (대상단말) CBS 기능이 탑재된 2G, '13.1.1 이후 신규출시 4G 휴대폰  
※ 3G 사용자는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수신
- (송출용량) 1회 송출시 최대 60자(2G)/90자\*(4G, '18.12월부터 적용)  
\* 국제표준에 따라, 4G는 한글·영어·공백·특수문자 모두 2Byte(총 180byte)
- (송출지역단위) 시·군·구, 시·도, 전국
- (송출비용) 무료(통신사와 업무협약, '04.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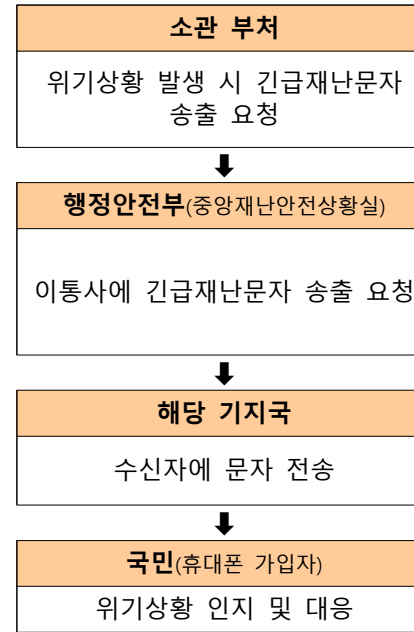


※ 지진, 지진해일은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2G는 행안부 시스템 활용)

### □ 주요기능

- 수신자 수와 관계없이 대량으로 실시간 동시에 전달
- 이동 중에도 휴대폰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재난정보 수신

### □ 송출절차(중앙부처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을 활용해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재난문자 송출 요청

• 긴급재난문자(CBS) 시스템 활용  
- 이통사 기지국을 통해 2G, 4G 재난문자 송출요청  
※ 3G 및 4G('11~'12년) 휴대폰은 안전디딤돌 앱 설치·수신

• 시·군·구 단위로 수신자 수에 관계없이 대량전달  
- 기지국 단위로 최대 90자 문자 전송

• 실시간 동시전달, 휴대폰 재난정보 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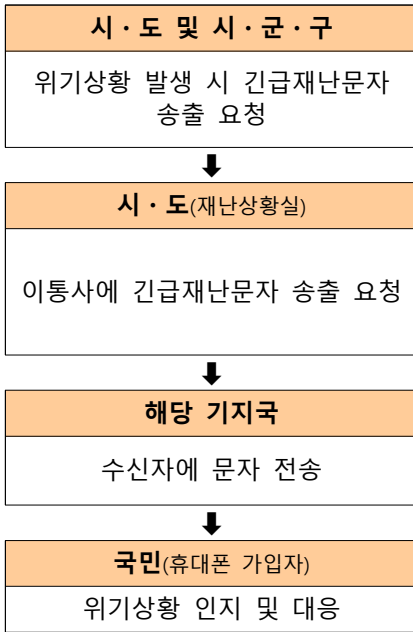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외부망, 인터넷망) : <https://cbis.safekorea.go.kr>



선택된 지역 : 선택된 지역에 나타나는 지역명은 발송대상으로 선택된 지역이며 X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선택이 해제되어 발송대상에서 제외 된다.



## □ 송출절차(시·도 및 시·군·구)



-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시·도(재난상황실)에 재난문자 송출 요청
- 재난관리시스템시스템 활용
  - 이통사 기지국을 통해 2G, 4G 재난문자 송출요청
  - ※ 3G 및 4G('11~'12년) 휴대폰은 안전디딤돌 앱 설치·수신
- 시·군·구 단위로 수신자 수에 관계없이 대량전달
  - 기지국 단위로 최대 90자 문자 전송
- 실시간 동시전달, 휴대폰 재난정보 수신

\* 재난관리시스템(업무망) : <https://www.ndms.go.kr>

## □ 표준문안 예시

- 대국민 재난문자 발송 필요 시 아래 문안을 참고하여 메시지 작성

○ **해양 선박사고 위험 상승 시**(관심단계 발령 시)  
 [해양수산부] 오늘 00:00부로 전 해상 태풍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높은 파고로 해양사고의 위험이 높으니 선박종사자, 해역이용객 및 인근 주민께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 선박사고 발생 시**(주의단계 발령 시)  
 [해양수산부] 오늘 00:00경 ○○(시군구), ○○(읍면동) ○○ 방향 ○○km(또는 마일) 해역에서 ○○사고로 해양 선박사고 위기경보 “주의” 발령되었습니다. 인근 선박종사자 및 해역 이용객께서는 2차 사고 등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해양경찰 등 현장세력의 안전조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선박·해역대피 명령 시**(경계·심각 발령 시)  
 [해양수산부] 오늘 00:00경 ○○(시군구), ○○(읍면동) ○○ 방향 ○○km(또는 마일)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로 해양 선박사고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되었으며,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인근 주민, 선박종사자 및 해역 이용객께서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해양경찰 등 현장 구조세력의 안전조치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대국민 통합 상황전파(실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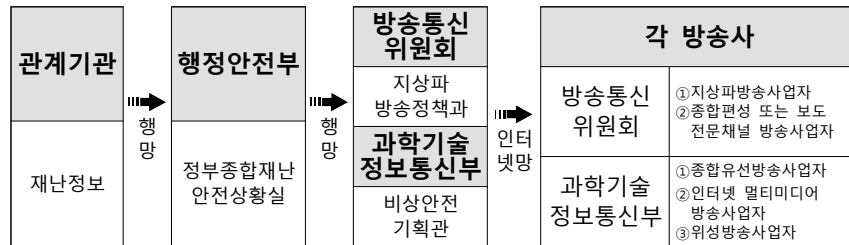
※ 실제 발송되는 페이지입니다. 화면 및 테스트는 불가합니다.

## 2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DITS; Disaster Information Transform System)

### □ 개요

- 재난(재난안전법 제3조) 및 재해(자연재해대책법 제2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상황을 전국 방송사에 실시간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 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요청 시 재난방송 의무 실시(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 □ 시스템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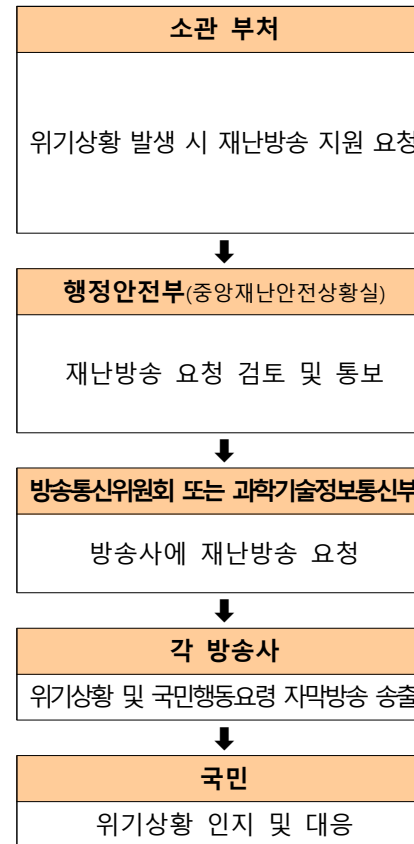
### □ 주요기능

- 재난방송 요청 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쳐 방송사로 자동전파
  - 전국 또는 국지적 재난별로 해당지역 방송사에 선택적 재난방송 표출 요청 가능



※ KBS, MBC, SBS, EBS, TV조선, JTBC, 채널A, YTN, MBN, 뉴스Y는 지진 등 긴급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방송 요청시 방송사에서 자막작업을 거치지 않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TV로 송출 될 수 있는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구축 운영

### □ 발송절차



- **NDMS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 재난방송을 통한 위기상황 및 대국민 행동요령 전파 요청
  - ※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에 자막송출 문안을 함께 작성하여 방송지원 요청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DITS) 활용**
  - 부처에서 요청한 위기관련 자막송출을 검토하여 방통위 및 과기정통부에 재난방송 요청
-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EDBS) 활용**
  - 즉시 연계되어 있는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 통보받은 위기상황 및 국민행동요령을 자막방송으로 신속하게 송출

### 3 민방위경보시스템 재난경보

#### □ 목 적

- 민방공 사태 및 재난상황 발생 시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체계에 따라 국민에게 신속한 경보전파(민방위기본법 제3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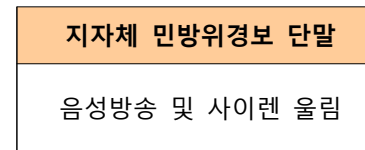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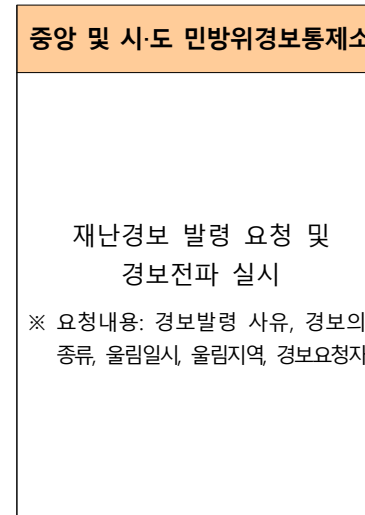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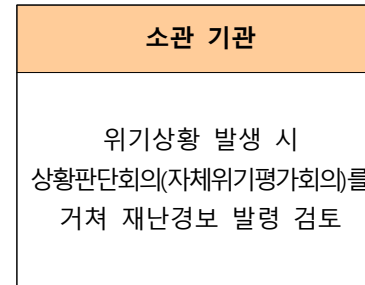
#### □ 주요기능

- 중앙과 17개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전국 경보단말(사이렌 2,304대) 올림
- 8개 중앙방송사 및 18개 정부주요기관 연결장비를 활용한 상황전파
- CBS(재난문자), DMB(지상파방송), TV자막 시스템과 연계 알림
  - ※ 재난경보(재난경계, 재난위험)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보단말만 이용하여 경보방송 및 사이렌 취명 실시

#### □ 민방위경보 종류

- 민방공경보 :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 재난경보 : 재난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해제

#### □ 전달체계도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경보 발령
  - ※ 재난경보: 재난경계, 재난위험, 재난경보해제
  - 전국단위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역단위 재난: 시·도지사(2개 시군 이상)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
  - 행정안전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이 경보통제소에 화상전화로 경보발령 통보
  - ※ 화상전화 고장 시 그 밖의 통신수단 이용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이 전용전화로 요청, 부득이한 경우 FAX 사용
  - ※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 장애 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로 요청

- 경보종류에 따라 음성방송 및 사이렌 올림
  - 재난경계경보: 음성방송
  - 재난위험경보: 음성방송+사이렌

#### 4 국가재난관리(NDMS) 상황전파시스템

##### □ 상황전파시스템 개념

-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간 재난상황의 실시간 전파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모든 재난발생 상황전파에 유용한 시스템

##### □ 상황전파시스템 구축현황

- 재난상황정보와 대응지시 등을 메신저 기반으로 실시간 전파
  - ※ 상황전파 범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산하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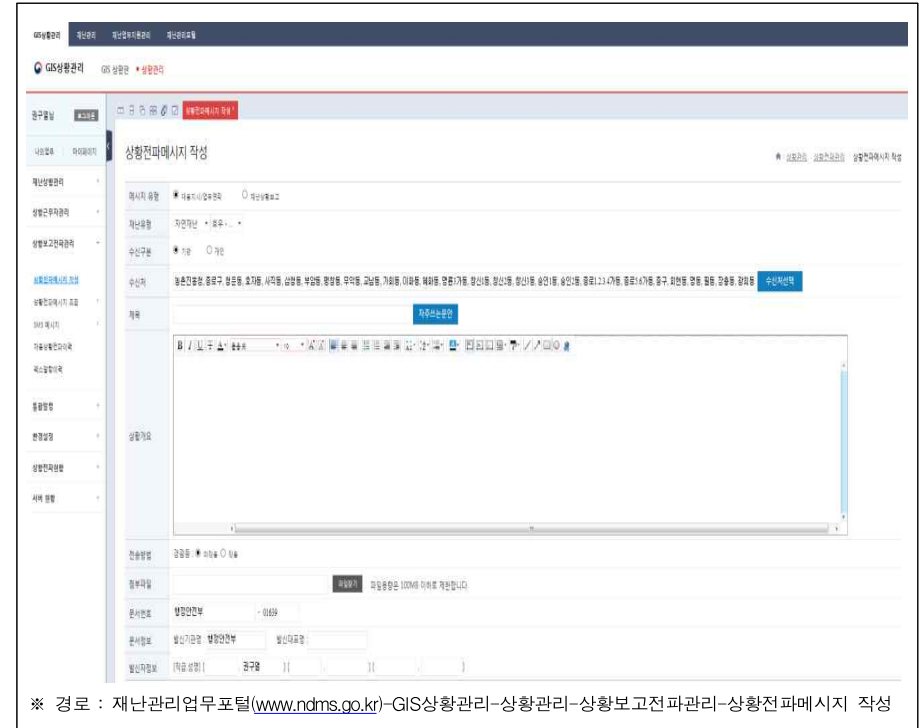
(18. 10월말 기준)

구분	합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정부산하기관
기관수	385	36	245	17	87
사용자수	16,157	1,522	11,403	2,354	878

##### □ 시스템 개념도



#### □ 메시지 작성 화면



※ 경로 : 재난관리업무포털([www.ndms.go.kr](http://www.ndms.go.kr))-GIS상황관리-상황관리-상황보고전파관리-상황전파메시지 작성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포털(<https://www.ndms.go.kr>, 외부망(인터넷망)], 문의(044-205-8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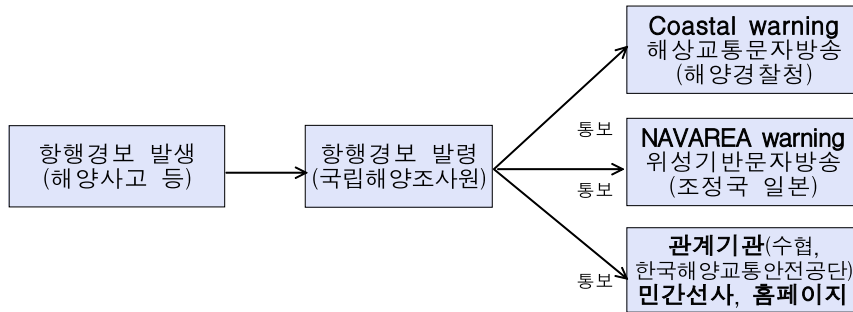
## 5] 항행경보(NAVIGATIONAL WARNING SERVICE)

○ (개요) 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하여, 사고발생, 해상사격 등 항행경보 사항을 선박에 제공(문자·음성방송)하기 위한 제도

○ (근거협약) SOLAS 제5장 제4규칙

\* 항행경보 각 당사국 정부는 위험의 인지를 접수하였을 때, 이를 신속히 이해 당사자에게 알리고 다른 관심 있는 정부에 통지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우리나라 항행경보 방송 흐름도)



○ (문자방송)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위성기반문자방송(SafetyNET)

- 해상교통문자방송(Navigational Telex) : 육상에서 300해리 이내의 연안 해역의 선박을 대상으로 문자방송수신기(NAVTEX Receiver)로 정보 제공

\* 연해구역 이상 운항 300톤 이상 선박, 원양어선에 수신기 의무설치



해상교통문자방송 서비스 구역(The Coverage of Korea NAVTEX)

## - 정규방송시각

송신국 (Transmitting Station)	송신국 식별코드 (Station ID)	방송시각(KST) (Broadcasting Time)	비고 (Remarks)
죽변(Jukbyeon) 37-03N, 129-26E	영문 (English)	V 0030, 0430, 0830 1230, 1630, 2030	-송신출력(Transmitting Power): 1kW -송신주파수(Transmitting Frequency) · 영문(English Language): 518kHz · 국문(Korean Language): 490kHz
	국문 (Korean)	J 0230, 0630, 1030 1430, 1830, 2230	
변산(Byeonsan) 35-36N, 126-29E	영문 (English)	W 0040, 0440, 0840 1240, 1640, 2040	-방송시간10분 (Each Broadcasting for 10minutes)
	국문 (Korean)	K 0240, 0640, 1040 1440, 1840, 2240	

- 위성기반문자방송 : 육상에서 300해리 이상의 외해선박을 대상으로 국제해사위성(INMARSAT)을 통하여 권역 내 일괄전송방식으로 정보 제공

\* 구역조정국이 해당 해역별내 운항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송 수단

## 6] 모바일 해사안전 네트워크(Mobile Maritime Safety network)

### □ 개요·현황

○ 연안을 주로 항해하는 소형선박 종사자의 경우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아 문자메시지 활용한 안전정보 전송이 가장 효과적

\* 어선 운항자 중 약 64%가 휴대전화를 통해 항해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기상정보를 활용('14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문조사 결과)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선박 소유자, 선장 약 5만명의 휴대전화를 통해 안전 문자메시지를 발송토록 데이터베이스 및 문자발송체계 마련·운영 중('16년~)

- 대형해양사고 발생, 안개 등 갑작스런 기상악화 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한 메시지 전파

- 선종별로 구분된 선박 소유자, 선장의 휴대전화로 안전 문자 메시지 발송체계 마련



## 부록 7 주요사고 사례

사고일	사건명(사고명)	선종	피해상황
'93.10.10	여객선 서해훼리호 전복 사고	여객선	사망 292명
'95. 7.23	유조선 씨프린스호 좌초 사고	유조선	기름 5,035kl 유출
'07. 2.14	화물선 제니스 라이트호 (ZENITH LIGHT) 침몰사고	화물선	사망 3명 실종 6명
'07. 5.12	화물선 골든로즈호, 컨테이너선 진생 충돌사고	화물선	실종 16명
'07. 7.12	화물선 오키드선호 침몰사고	화물선	실종 13명
'07.12. 7	예인선 삼성-5호·예인선 삼호-3호의 피에인부선 삼성 1호·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 충돌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유조선	기름 12,547kl 유출
'07.12.25	탱커선 이스턴 브라이트호 침몰사고	유조선	실종 14명
'08. 9.24	화물선 제우스호 좌초사고	화물선	실종 17명
'09. 2.25	일체형 압형선 정진호의 압항부선 석진호 조난사고	예인선	실종 5명
'09. 3.10	화물선 오키드피아호, 자동차운반선 시그너스 에이스 충돌사고	화물선	실종 16명
'09.10.18	해양폐기물 전용 수거선 환경1호 침몰사고	기타선	사망 4명 실종 1명
'10. 1.27	압항예선 삼봉11호, 압항 부선 삼봉12호 침몰사고	예인선	실종 10명
'10. 2.27	일체형 압항예선 오선 101호의 압항부선 오선9001호, 모래채취 운반선 제103 대양호 충돌사고	화물선	사망 3명 실종 2명
'11.11.21	산적화물선 브라이트 루비호 전복사고	화물선	실종 6명
'14. 1.31	유조선 '우이산호' 부두시설 접촉사고	유조선	기름 164kl 유출
'14. 4.16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내항여객선	사망 295명 실종 9명
'14.12. 1	원양어선 제501오룡호 침몰사고	원양어선	사망 27명 실종 26명
'15. 9. 5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	낚시어선	사망 15명 실종 3명
'16.2.28	연근해어선 동경호 전복사고	연근해어선	사망 2명 실종 5명
'17.1.10	연근해어선 주영호 전복사고	어선	사망 2명 실종 4명
'17.12.3	낚시어선 선창1호 충돌·전복사고	낚시어선	사망 15명
'18.2.28	연근해어선 근룡호 전복사고	연근해어선	사망 2명 실종 5명
'18.3.6	연근해어선 11제일호 전복사고	연근해어선	사망 4명 실종 4명
'19.1.11	낚시어선 무적호 전복사고	낚시어선	사망 4명 실종 1명
'19.11.19	연근해어선 대성호 화재사고	연근해어선	사망 1명 실종 11명
'19.11.24	양식장관리선 전복사고	연근해어선	사망 1명 실종 2명

## 부록 8 영상회의 시스템

### □ 개요

- (목적) 청와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주관기관, 중앙행정기관, 긴급구조기관(소방·해경),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황 공유, 범정부적 신속 대응
- (연결기관)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279개 기관과 연결

구분	연결기관(279개 기관)
중앙 (26)	·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 18부 · 5청(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245)	·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연계
재난관리 책임기관 (8)	·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화학물질안전원, 질병관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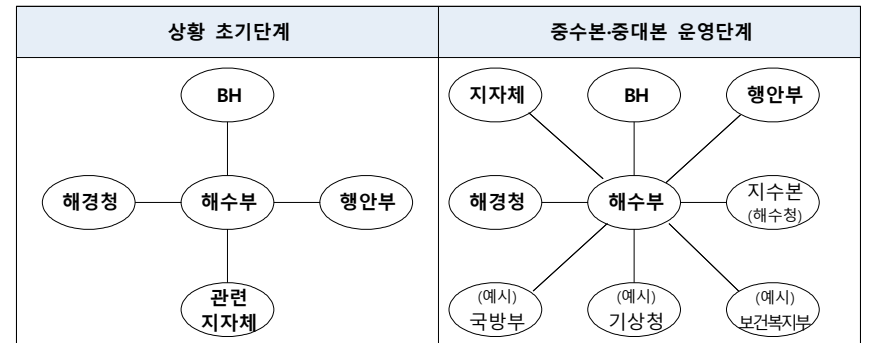
\* 해양수산부는 종합상황실에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운영 중(~'18.2)

### □ 영상회의 운영

※ 운영사례: 태풍 "솔라" 대처 긴급점검회의(VIP주제, '18.8.23) 등

- (대상회의) 초기상황판단회의, 상황판단회의,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중앙수습대책본부회의 등

### ○ (참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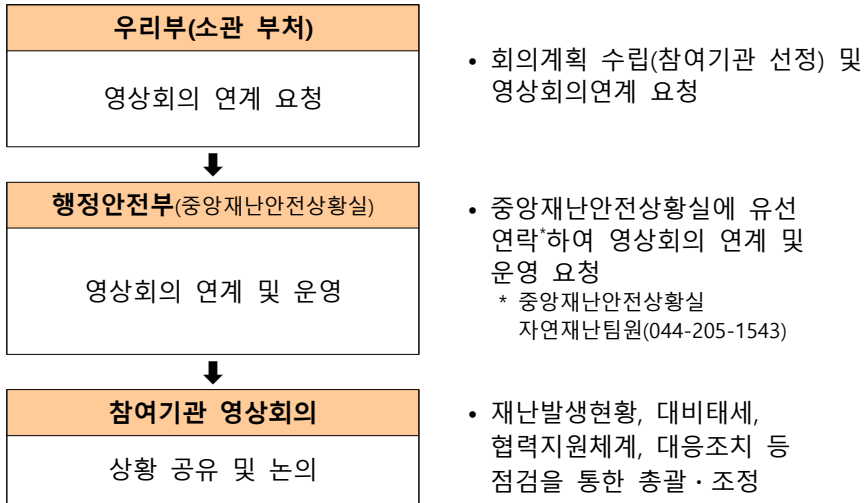
\* 재난의 규모 및 대응단계 등에 따라 영상회의 참여기관은 변동 가능

- (참석자) 회의 참석대상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판단

\* 예: 대통령 회의 주제 시 각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참석 등

- (회의내용) 재난의 규모에 따른 조치방향 및 재난관리 단계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총괄·조정
  - (대비태세) 중앙·현장(지역) 지휘·보고체계 구축, 재난 대비 실무매뉴얼 등 대응계획 점검, 재난 상황대응체계 강화 및 긴급전파체계 유지
  - (협력·지원체계) 관계기관 재난상황 전파·공유 등 협력체계 가동, 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및 민간 구조세력 현황점검 및 동원체제 구축
  - (대응조치) 재난수습에 필요한 구조·지원 세력 지휘, 중앙 사고수습본부 설치 등 사고대응 총괄지휘 체제 구축

□ 운영절차



- (운영방법) 행안부 중계시스템을 통해 전용망으로 연결
  - 대통령 주관 영상회의 주재 시 장관님이 세종 이외지역에 계실 경우 인근 시스템 구축기관 방문·이용토록 행안부 협의완료('18.2)
  -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시스템 미운영 기관과 영상회의 시 행정망(나라e음) PC 영상회의의 이용

**부록 9** 언론 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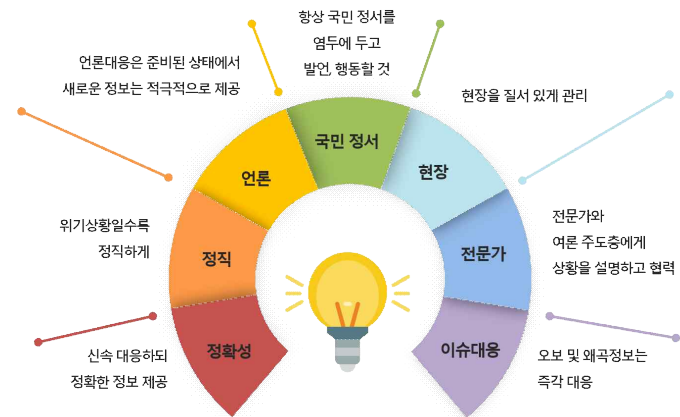
**I. 일반사항**

**1. 목적**

- 이 매뉴얼은 정부가 위기<sup>1)</sup> 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 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피해자를 배려하는 한편 △빠른 복구와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작성됨

**2. 기본 원칙**

- 위기관리 소통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아래의 7가지 대응원칙을 준수해 위기 인지 단계부터 복구, 회복에 이르기까지 상호배려와 지지, 사회적·정책적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위기'는 「위기관리 소통 매뉴얼」이 수록된 매뉴얼의 '재난'을 의미(예: 풍수해, 감염병 등)

### 3. 위기관리 소통 체계

#### 3-1.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

-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정하되, 설치되는 조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①본부장이 총리인 경우(「재난안전법」 제14조제4항) 총리가 지정하는 장관 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②본부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인 경우(「재난안전법」 제14조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행정안전부 차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 ◎ **(중앙사고수습본부)** 수습본부장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재난안전법」 제15조의2)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 ◎ **(현장)** 각급 통제단장이 지명하는 부기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공무원

※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1~3위를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좋음

-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는 대외적으로 해당 기관(또는 본부)의 유일한 공식 소통 창구로서, 위기와 관련된 모든 회의에 참석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상황을 장악하며 시의 적절한 홍보를 시행해야 함
  -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는 공식 브리핑,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위기의 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발표해야 함
    - \* (중대본·중수본) 현장 지원 및 범정부 대책 중심 브리핑
    - \* (방대본·현장) 구조 등 수습활동에 대한 상황 중심 브리핑
-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는 위기관리 소통의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과 실무자를 지정할 수 있음

#### 3-2. 위기관리 소통 전담 조직

- 상위 매뉴얼에 따라 설치되는 소통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가 지정하는 별도의 조직이 위기관리 소통 전담 조직이 됨
  -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13호 '재난 수습 홍보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포함함
- 별도의 조직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대변인실 등 평상시 소통업무를 담당하던 조직이 위기관리 소통 전담 조직이 됨

### 4. 위기관리 소통 업무

- 위기관리 소통 업무는 ▲여론 분석, ▲전략 기획, ▲소통 실행으로 구성되며 다음 표로 요약할 수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 II. 업무별 세부 내용에서 후술함

여론 분석	전략 기획	소통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론 상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보도 분석</li> <li>- 온라인 여론 분석</li> </ul> </li> <li>◆ 허위조작정보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확인 정보 감지 및 확인</li> <li>- 허위조작정보 대응</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시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상황별 메시지</li> </ul> </li> <li>◆ 매체별 소통전략</li> <li>◆ 근거자료 확보</li> <li>◆ 협업 관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자/전문가/이해관계자/영향력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정보 제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 브리핑 추진</li> <li>- 보도자료 배포</li> <li>- 공식 누리집/상담창구 마련</li> </ul> </li> <li>◆ 언론 지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지원체계 구축</li> <li>- 국내/해외 언론 지원</li> </ul> </li> <li>◆ 가용매체 활용하기</li> <li>◆ 민간과 협업하기</li> </ul>



## II. 업무별 세부 내용

### 1. 여론 분석

#### 1-1. 여론 상황 분석

##### □ 언론보도 분석

- (필요성) 위기 자체의 대응과 수습뿐 아니라, 대국민 소통계획 수립에도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줌
- (기본방향) 여론 분석 전담자를 지정, 다음 사항을 주기적으로 정리하여 관련 부서에 전달
  - 주요 신문(중앙일간지, 경제지 등)과 방송(지상파, 종편 등), 통신, 외신의 ▲논조, ▲제언, ▲비판을 주제별로 정리
  - 정리 주기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매일, 격일, 매주 등 정해진 시간(예: 오전 10시, 오후 5시)에 하는 것이 좋음
  - 정부의 공식 브리핑은 실시간으로 면밀히 점검, 언론 반응과 함께 발표자의 태도나 표정 등 개선사항도 전달

##### □ 온라인 여론 분석

- (필요성) 여론 주도층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는 언론보도와 달리, 국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살펴보기 좋으며, 실시간 반응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
- (기본방향) 온라인 분석 전담자를 지정, 다음 사항을 주기적(매일/기타)으로 정리하여 관련 부서에 전달
  - 주요 포털·커뮤니티 등 주요 온라인 게시글의 내용, 전반적 분위기, 제언, 우려점 등을 유형화하여 정리. 가급적 유형별로 현재 우세한 여론을 표시하는 것이 좋음
  - \* 정책여론 수렴시스템(big.pr.go.kr) 활용 가능
  - 정리 주기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온라인 여론은 수시

로 급변하는 만큼, 주목도가 높은 시기에는 1일보다 짧은 단위(예: 일 2회, 일 3회 등)로 분석하는 것을 권장함

[참고]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대책 마련에 필요한 경우, 일반 국민 또는 정책고객,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분석도 병행

#### 1-2. 허위·조작정보 대응

##### ※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기본 원칙

- (신속대응) 오보는 또 다른 오보를 부르고, 유언비어는 교차 인용되며 급속히 확산되므로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 (적극대응)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면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는 오보를 예방할 수 있음. 오보 대응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 오보 및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사실적 주장 → 반론청구권 / 명백한 오보 → 정정보도 청구, 소송 등)

##### □ 미확인 정보 감지 및 확인

- 여론 상황 분석 과정에서,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정보\*는 별도로 분류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진위여부 파악
  - \* 뉴스보도, 인터넷 게시글, 누리소통망(SNS) 소문 등
- 확인 결과, 단순 오보(misinformation)는 보도설명, 정정요청 수준으로 대응

##### □ 허위·조작정보 대응

-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는 의도적으로 오해를 야기하는 ‘틀린’ 정보로, 쟁점의 특성\*과 대응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의 수준과 방법 결정
  - \* 위법성이 명백한가, 내용이 복잡한가 등

\*\* 해명의 공신력(어느 기관에서 해명하는가), 속도(언제 해명하는가) 등

-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 수사 의뢰, 공식 브리핑을 통한 정정, 후속 콘텐츠 제작 등으로 대응하며, 하나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여러 대응 수단을 병행할 수도 있음

## □ 대응 시 유의사항

### ① 언론의 경우

- 공식 대응 전,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먼저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려는 노력 필요
- 통계 및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중하되 당당하게 대응

\* 면피용, 책임 회피용 해명자료는 없는 것보다 못함

- 해명자료는 다른 언론 매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배포하여, 허위조작정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② 온라인의 경우

-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는 확산속도가 빠르고 정정이 어려워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도·설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주로 언론에서 참고) 온라인에도 콘텐츠 게시(주로 국민들이 참고)
  - 설명자료를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 차트, 도표, 그래픽 등 가시성이 높은 객관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관계자 인터뷰 영상, 카드뉴스 등 연성 콘텐츠도 적극 활용하면 좋음

\* 설명자료의 형식이나 표현은 각 온라인 매체의 특성에 맞춰 전략적으로 변형할 수 있음

## 2. 전략 기획

### 2-1. 메시지 관리

#### □ 핵심 메시지의 선정 [참고1]

- 국민과 언론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 선정
- 짧고 간단한,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이야기(스토리텔링)가 담겨 있으면 더욱 좋음
  - \* 복문, 중문보다는 단문이 효과적이며,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메시지를 구성하는 것이 좋음
- 핵심 메시지의 부각을 위해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결합하는 것이 좋음

#### [참고] 메시지 개발 순서

- ① 핵심 단어를 먼저 선정 → ② 핵심 단어 또는 동의어를 이용해 1개의 문장 또는 문구 구성 → ③ 다른 사람(정책 대상자,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입장에서 홍보 메시지 생각 → ④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핵심적인 메시지를 3개 이상 개발 → ⑤ 개발한 메시지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 선택

#### □ 상황별 메시지 구성

- (핵심 메시지) 소통 기초와 핵심 메시지가 결정되면 모든 홍보물과 홍보 활동에 반영되도록 정부 내·외부에 널리 공유(필요 시 공문, 전화 연결음, 청사 옥외 현수막 등에도 활용)
- (정부 대응상황 안내)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 내역과 향후 계획은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해 적극 안내
  - 다만, 사생활 보호 침해 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대책은 근거 법령이나 선례 등을 함께 알림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이나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 (국민 행동수칙) 위기상황이 끝나지 않아 국민의 지속적인 주의와

행동이 요구되는 경우, 국민 행동수칙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해 전방위적으로 확산

- 행동수칙은 핵심 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작성
- 전 국민의 숙지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온·오프라인상의 모든 가용매체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확산

## 2-2. 매체별 소통전략

- (텔레비전·라디오·신문 등 언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위기의 진행 및 수습상황, 정부 대책 및 향후 계획, 주의할 점을 알려야 하거나 과도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활용
  - 언론 대담이나 시사기획, 뉴스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음
  - (누리집·누리소통망 등 온라인)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 오보·허위조작정보의 정정, 긴급 공지,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벤트 등이 필요한 경우 활용
  - (현수막·인쇄물 등 홍보물) 국민 행동수칙, 상황별 핵심 메시지, 슬로건, 치유와 공감의 표현 등의 반복적 노출이 필요한 경우 활용
- ※ 광고는 정부 대책이나 대응방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압축적이고 인상 깊게 전달해야 하는 경우, 사회적인 인식 또는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캠페인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면 좋음

## 2-3. 근거자료 확보

- 대국민 소통에 도움이 되는 각종 통계자료, 소관 핵심자료를 취합하고 적극 활용
- ▲과거 유사 사건·사고 자료, ▲기초 통계, ▲부처의 장·단기 계획, ▲감사자료 등 조직 및 정책 전반의 자료 사전 준비

- 필요한 경우,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국민 소통 활동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2-4. 협업 관계망 구축

### □ 관계자

- (기관 간 협의체) 정부 내의 통일된 입장(One Voice)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협조 체계를 구성하고,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
- \* (주의) 범정부 지휘 본부의 역할이 약해지면 각 부처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사안'을 공개하거나 '서로 다른 목소리'를 방출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현장지휘소]-[중대본]-[국조실]-[문체부(소통실)] 간 연락체계를 구축·유지하고 홍보 협력체계 구성
- 여러 부처가 관계된 사항은 협의회나 상시 연락망을 통해 정부 입장을 미리 정리한 뒤 발표. 기관별로 보유한 홍보 매체는 공동 활용하고, 주요 위기관리 대책은 함께 홍보
- \* (예) 감염병 확산 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예방수칙 공동 홍보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는 위기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어, 상시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소통 능력 향상 적극 지원

### □ 전문가

- (여론 형성의 주도자) 전문가는 위기 시 상황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설명하여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침
- ➔ 주요 전문가 등 여론 주도자들(opinion leader)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정보 적극 제공
- (위기해결의 조언자) 전문가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다양한 사항을 알려주고 제안할 수 있음
- ➔ 주요 전문가 집단(pool)을 구성해 향후 대책 마련과 메시지 수

립에 반영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할 수 있음

\* 위기 발생 전부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온라인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 이해관계자

○ 대국민 소통과 별개로, 특히 피해가 심한 집단이나 위기 해결과 깊게 연관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이고 충분한 소통 실시

\* (예) 감염병의 경우, △(특히 피해가 심한 집단) 취약계층·자영업자·소상공인, △(해결과 연관된 이해관계자)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 가능한 한 공식 브리핑에 앞서 피해자 협의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의체에서 조율된 의견을 반영한 뒤 브리핑 진행

- 피해자에게는 위로와 공감의 태도로, ‘말하기’보다 ‘듣기’에 집중하며, 위기로 인한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위기 해결대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충분한 사전 설득 과정을 거쳐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음

\* 편견이 심하거나 반감이 있는 관계자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소통해야 함

#### □ 영향력자(인플루언서)

○ 유명 블로거, 유튜버 등 영향력자의 의견은 그들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과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음

\* 초기 온라인 여론을 주도하는 영향력자들에게 정확하고 의미있는 정보를 지속 제공한다면 위기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3. 소통 실행

#### 3-1. 공식정보 제공하기

##### □ 공식 브리핑 추진 [참고2]

○ (필요성) 위기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국민 메시지 창구를 단일화하여 정부의 목소리를 하나로 유지하는 것임

- 위기 상황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우선 전달하고, 필요시 현장 책임자나 실무자의 추가 브리핑이나 인터뷰 등을 진행할 수 있음

\* 비공식적 경로로 상호 모순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수 있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함

○ (시점) 초기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향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좌우하는 만큼, 사건 개요와 수습 상황, 대책 마련 계획을 확보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공식 브리핑 실시

\* 첫 브리핑은 확인된 사실만을 발표하고, 진행 중인 위기에 대해 사태의 추이 등을 예단하는 발언은 자제

- 온라인의 발달로 위기 발생 직후부터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브리핑 준비

○ (정례화) 위기가 종료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개최해 수습 진행 상황 등 진전된 내용을 원활하게 제공

-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내보내는 정보에 대한 주목도가 큰 만큼, 일 1~2회, 정해진 시간에 브리핑 진행

- 위기 상황 중 희생자가 발생하면 최고책임자(대통령, 총리, 장관 등)의 명의로 위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좋음

### □ 보도자료 배포

- (필요성)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문서의 형태로 상세하게 알릴 수 있음
- (방식) 각 기관별 누리집 개별 배포와 공식 누리집(후술) 공동 배포 모두 가능
- (기능) ▲현황 및 정부대책의 사전 안내, ▲왜곡 보도에 대한 정정, ▲조치의 성과 등 위기와 관련된 부처의 최신 정보 전달

### □ 공식 누리집 마련

- (필요성) 공식 브리핑에서는 중요 사항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면, 공식 누리집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돕고, 정보를 축적함
- (방식) 특별 공식 누리집을 제작하거나, 기관 누리집을 공식적인 온라인 소통 창구로 일원화
- (기능) ▲현황, ▲사실 확인, ▲정부 대책, ▲부처 입장(반론·해명 자료 포함),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신뢰할만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
  - \* 중요 정보는 팝업, 배너, 별도코너 등을 활용해 찾기 쉽게 배치
  -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사이트나 포털 등에는 관련 정보를 고지하고 모든 문의는 공식 창구로 유입되도록 안내

### □ 상담 접수창구 마련

- (필요성) 위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대처 방안을 문의할 수 있는 공식 상담 접수창구(콜센터 등) 마련
- (방식) 기존의 유사 기능을 수행하던 접수창구를 적극 활용하면서, 인력 확충 및 운영시간 확대

## 3-2. 언론 지원하기

언론과의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는 위기관리 소통활동의 핵심!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 □ 개괄

- 최선의 위기관리를 위해 언론보도를 지원하고, 언론과 협력하는 업무를 강화해야 함
- 위기 보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황 및 정책 등 자료 제공, ▲재난보도준칙 준수 및 협조요청, ▲공동 현장취재 추진, ▲재난방송협의회 운영, ▲재난주관 방송사 및 국가 기간 통신사 활동 협력·지원 등의 업무 추진

### □ 내부 지원체계 구축

- 언론의 취재나 인터뷰 요청은 위기관리 소통 전담 조직에서 일괄 취합하여 정책부서에 전달
  - 위기관리 소통 전담 조직은 인터뷰의 주제와 일정을 확인하여 관련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실무부서에 전달하고, 담당자에게 기본적인 언론 대응 수칙과 요령을 사전에 숙지시킴
- 정책부서에서는 사전에 ▲기자 이름, ▲소속, ▲면담 주제 및 쟁점, ▲주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핵심 메시지, ▲예상질문과 답변, ▲관련자료 등을 꼼꼼하게 확인
  - \* 인터뷰 요령은 브리핑 요령과 유사함. 전화 인터뷰는 녹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고, 방송 인터뷰는 방송되는 시간을 고려해 10초 이내로 짧게 답변하는 것이 좋음(길게 답변한 경우, 핵심 내용이 편집되어 전달되지 못할 수 있음)

## □ 국내 언론 지원

- (사전 공지) 기자들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정보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브리핑 등 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함
  - 사전에 관계부처와 출입기자 명단을 구성하고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연락처 확보
- (현장 준비) 취재진이 몰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점검표를 작성하여 빠진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
  - (시설 설치) 다수의 기자가 출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본부, 현장 등)에 브리핑실과 취재지원센터 설치[참고3]
  - \* 기자(펜기자, 방송기자 구분)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브리핑실과 장비 등 지원 시설 점검
- (자료 공유) 브리핑과 관련된 자료는 기자들에게 배포·공유
  - \* (예) 대국민 메시지, 보도자료·배경자료, 성명서·설명자료·사과문 및 질답(Q&A), 통계자료, 재난보도준칙 등
- (요구 대응) 기자들의 문의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서면 등 활용), 알맞은 정보를 제공해 정보 수요 충족
  - 이해의 편의를 위해 그림·사진·영상 자료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로 제공
- (현장 관리) 취재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장은 언론의 출입 가능구역과 제한구역을 구분하여 혼란 예방
  - \*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장소나 위험지역 등 출입제한구역에는 취재제한선을 설치하고 적절한 안내 조치를 취해야 함
  - 필요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하고 홍보담당자의 인솔하에 현장을 방문·취재할 수 있도록 지원
  - \* 현장취재 기자들 중에는 취재기자명단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취재등록부를 마련하여 정보제공 대상에 포함

## □ 해외 언론 지원

- 외신 보도는 대외적 국가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제협력의 기반이 되기도 하며, 내·외신 보도는 상호 영향을 주므로, 필요한 경우 외신 담당관을 지정해 외신의 취재활동 적극 지원
  - \* 기자단 구성 시 외신기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신 취재지원 계획 마련
- 필요시 공식 브리핑을 번역하여 외국에 송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외신대상 공식 브리핑 마련

### 3-3. 가용매체 활용하기

각 부처에서 보유한 홍보수단(매체) 적극 활용

#### ○ 오프라인 매체

- 옥외 전광판, 현수막, 실내 영상패널, 기관별 홍보물 등이 있으며 소통실의 '보유매체 협업' 기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 온라인 매체

- 기관별/정책별 공식 누리집, 누리소통망, 온라인 기자단의 자체 채널 등이 있음

#### [참고] 온라인 소통 전략

##### ① 메시지는 단일하게, 형식은 다양하게

- 온라인 홍보도 전체적인 홍보 계획 속에서 한 목소리(One Voice)를 유지해야 함
- 온라인 콘텐츠의 핵심은 형식의 다양화이므로, 브리핑 등 정부 공식 입장을 텍스트뿐 아니라 한컷뉴스, 동영상, 플래시, 만화, 정보그림(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

##### ② 경청하라

- 10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9는 공감에, 1은 정보전달에 할애

- 정부가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진실되게 듣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면 국민과의 소통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③ 맞춤형으로 하라
  - 주부, 학생,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등 홍보 대상을 세분화하고, 각 대상이 주로 사용하는 매체를 통해 대상별 맞춤 정보를 차별화하여 제공
- ④ 맞서지 마라
  - 온라인 댓글 등이 부정확한 내용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내포하더라도 함부로 삭제하지 말고, 충분히 설명하는 등 추가적인 소통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좋음
- ⑤ 담당자의 대처가 정부의 대처로 해석된다는 점을 명심하라
  - 부처의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 및 누리소통망(트위터, 페이스북 등) 등에서 가볍게 이야기(답변)하는 내용도 의도와 관계없이 정부의 공식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는 점 유의
- ※ 정부 가용매체가 아닌, 사적인 온라인 계정이라고 해도 담당자나 기관장 등 정부 관계자가 올린 글은 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본질과 다른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기 쉬우므로 개인적 활동 또한 유의

### 3-4. 민간과 협업하기

-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쉽게 위기 관련 정보를 접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민간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와 평소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보다 대대적인 정책 홍보를 위해서는 민간 유력 채널에서 유료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참고1

### 위기관리 소통 메시지 작성 시 고려사항

#### □ 기본적인 고려사항

청자 [누구에게 하는가]	내용 [목적이 무엇인가]	매체 [어떻게 전달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일부</li> <li>○ 인구통계적 특성</li> <li>○ 위기와의 관련성</li> <li>○ 피해의 정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상황/사실의 전달</li> <li>○ 오보, 허위조작 정보 대응</li> <li>○ 관계자/국민의 협조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 브리핑(TV, 현장 등)</li> <li>○ TV, 라디오 등 방송</li> <li>○ 신문 등 인쇄</li> <li>○ 누리집, 누리소통망 등</li> <li>○ 기타(전화 등)</li> </ul>

#### □ 메시지 구성 예시

1.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
2. 사건개요 설명
  - (6하원칙) 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3. 사건의 원인 규명 노력 천명
4. 원상회복 노력 천명

## 1. 발표자(briefer)의 지정

- 공식 브리핑 발표자는 원칙적으로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로 지정함
  -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는 현재 상황, 정부 조치, 향후 계획 등 핵심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발표함
  - 핵심 메시지 발표자가 질의응답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업무 담당자 또는 전문가를 배석시켜 질의응답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발표자의 직함은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변인’ 보다는 직무형 직함(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 메시지의 중요성에 따라 발표자를 구분할 수 있음(예: 대통령, 총리 등)

## 2. 브리핑 준비

- 위기 상황에서 대국민 발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 핵심 메시지, ▲ 발표 내용, ▲ 발표 자세, ▲ 예상 질답, ▲ 참고자료(언급을 삼가야 할 주제와 용어, 위로나 유감 표현) 등을 준비
  - 브리핑은 ‘읽기’가 아니라 ‘말하기’임을 숙지하고, 사전 예행연습
  - 한 문장은 12~14개 단어로 구성하고, ‘첫째’, ‘둘째’ 등 발표문을 구조화하며, 종결어미를 자주 사용해 문장을 간결화
- 복장은 비상근무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이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한 화장이나 장신구 등은 피해야 함

## 3. 발표자의 자세

- (기본 자세) 여론은 유동적이므로, 진실한 자세로 일관되게 설득하면 변할 수 있다는 점 명심
- 위기 상황에서 국민은 정부에 대해 쉽게 분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함
- 정부가 사태수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강조해 문제해결 의지가 있음을 각인
  - \* 제대로 된 정보의 전달이나 대책 없이 정부 성과만을 나열하는 자화자찬식 발표는 지양
- 언론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대해야 함
  - \*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진정성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체에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임해야 함
  - 언론의 비판은 당연한 것으로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 됨
  - 언론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언론을 공평하게 대해야 함
- (감정의 통제)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침착하고 차분한 어조로 발표
- 피해자 등 국민 정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며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 유지
  - \* 변명이나 핑계로 해석될 만한 발언은 지양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송구함 표시
- 인적 피해는 물적 피해에 앞서 언급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
  - \* [!]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말실수는 정부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고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필요한 국민 협력의 동력을 저해함
- (실수 최소화) 모두가 예민한 상황인 만큼, 공식 석상에서 품행, 표정에 유의하고 자신도 모르게 웃음 등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

## 4. 브리핑 시 유의사항



- **(정확성)** 확인되지 않은 자료, 확정되지 않거나 부처 간에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사안은 발표해서는 안 됨
  - 브리핑 등 대국민·대언론 설명 직전까지 현장에 대한 최신 통계와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숙지해야 함
    - \* **[!] 데이터 오류는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과 언론의 신뢰 상실**
  - 주관적 감정이나 선부른 정무적 판단은 배제하고 객관적 지표와 사실을 중심으로 발표하며, 향후 사태 추이 등을 예단하지 않음
- **(투명성)** 위기 관련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고, 부득이하게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알려 공감을 얻어야 함
  - 부정적 사안이라도 알려져야 할 사실이라면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발표하며 전후 맥락을 충분히 설명
    - \* **[!] 문제가 있을수록 미리 알리고 대응해야 함(사후 해명은 공신력에 상처를 줄 수 있음)**
- **(적극성)** 언론에 보도되어 이슈화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자가 묻기 전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 제공
  - 언론 오보나 온라인상의 각종 유언비어, 비판, 거짓 정보 등에 대해 정확하게 해명하는 노력 지속
    - \* **[!] 기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제3자의 정보에 의존하게 돼 오보 가능성이 높아짐**
- **(일관성)** 정부의 발표나 입장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책이나 입장이 변경되면 합리적으로 설명·설득해야 함
  - **(기관 간 일관성)** 여러 부처가 관계된 사안은 반드시 조율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여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함
    - 다른 조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은 삼가야 함
  - **(내용의 일관성)** 한 번 발표된 내용은 그대로 지켜져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발표된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

\* **[!] 말바꾸기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

- **(신중성)**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정리된 자료를 기초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것
  - 위기의 원인이나 피해 상황에 대한 언급 시 신중을 기하고, 특정 집단의 반발을 야기하거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은 삼가야 함
    - 특히, 사고와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나 및 자극적인 표현은 피해야 함
  - 사전에 피해자 및 가해자 등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 결정
- **(용이성)**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쉽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
  - 업계에서 통용되는 전문용어나 약어, 영어 등 외국어의 사용을 삼가고, 언론이 정부 발표를 직접 인용해 기사화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발표

## 5. 상황별 질의응답 요령

- **잘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는 경우**
  - 발표자가 대답할 수 없는 전문적·실무적인 내용은 선불리 답변하지 말고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거나 추후 서면으로 답변
    - 추측성 답변이나 주관적 견해, 예단, 정보의 부분적 유출은 추후 불필요한 논란과 부정확한 보도를 야기할 수 있음
    - 통계수치의 정확성을 100% 장담할 수 없을 경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잠정’, ‘몇 시 경’,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등의 표현 사용
  - 현장에 없는 사람이나 조직을 인용하여 답변을 요구했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취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등으로 답변

□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을 질문한 경우

- 비보도요청(Off The Record)이나 단순 답변거부(No Comment)는 지양하고, 답변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

\* (예) “상황이 정리되면 추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 문제를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이해관계자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수 있어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비보도요청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제라도 무시될 수 있음
- 답변거부는 문제가 있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부정적 암시를 줌
- 의도적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이나 어투, 논리로 즉각적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감정을 배제한 채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하거나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응답

\* (예) “말씀하신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방대한 범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의 경우

- 답변은 결론부터, 간결하고 명확하게 발언
- 편집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강조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한번 더 되풀이
- 여러 질문을 동시에 받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답변이 가장 쉽거나 간단한 질문에 먼저 답변하고 나머지는 질문을 다시 확인

□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질문할 경우

- 잘못된 사실이나 현재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하는 경우, 해당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관련 내용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답변

\* (예) “그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근거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경우

- “이번 상황이 ‘예’나 ‘아니오’(혹은 ‘A냐 B냐’)로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전제한 후 이에 대해 성실하게 충분히 설명

□ 단언이나 확언을 요구하는 경우

- 확언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상황임을 언급한 뒤 위기관리 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 강조

\* (예)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피해상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입장이 결정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참고3**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를 다수 부처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 결정

□ 장소 선정

- 사고현장에 가깝고, 취재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며, 현장 대책본부의 활동이 노출되지 않도록 분리된 곳
- 취재진의 규모를 고려해 충분한 공간 확보 필요
- \* 취재지원실은 일반적으로 50명 이상 수용, 24시간 개방이 가능한 곳으로 선정하고 취재 편의를 위한 휴식 공간을 구비하는 것이 적합하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설치 시점 : 현장 사고대책본부 설치와 동시에 설치

□ 기능

- ① 수시 상황 브리핑 실시 및 보도자료 배포
- ② 언론 상황 파악 및 대응
- ③ 현장 취재단 지원
  - 취재 송고시설 마련 및 행정 서비스 지원
  - 사고현장 안내 및 취재제한선 준수 협조 요청

□ 역할분담

- (언론지원) ① 취재등록부 관리 등 언론 연락체계 유지, ② 보도자료 배포(이메일, 문자 등), ③ 언론 요구사항 파악 및 대응(공동 현장취재 수요 파악, 현장안내 등)
- (센터관리) ① 현장브리핑실·기자실 등 취재공간 확보 및 기사송고 시설 설치\*, ② 현장 취재제한선 설치 요청, ③ 공동 현장취재 관련 편의 제공(이동용 차량 준비 등)
  - \* 현장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장소나 시설 활용

(물품 예시) 마이크, 배경막(기관 로고 확인), 책상·의자, 화이트보드, 발표대, 전화,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등 송고시설, 취재등록부, 프린터, 팩스, 필기구, 지도, 음료수 등

**부록 10**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 공관 상황전달 체계

□ 목 적

- 주관기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 신변 보호 및 국가 간 신뢰 강화를 위해 대형재난 발생 시 외국인 사상자 인적정보를 각 국 대사관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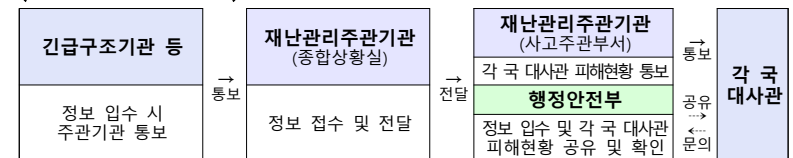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7조(사망, 후견, 재산관리, 난파 및 항공사고의 경우에 있어서 통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관계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에 동 당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a) 파견국 국민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망이 발생한 영사관할구역 내의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것

□ 통보내용

- 사상자 인적사항(이름, 나이, 국적 등), 부상정도, 주요 조치사항 등

□ 전달 방식

- (해양수산부) 선원 및 여객 중 외국인 사상자 있을 시 **사고유형 별 주관 부서(총괄반)**에서 인적사항(선원명부·승선자 명단) 파악하여 **행안부에 통보**
  - 사고수습기구 미구성 시 종합상황실에서 행안부에 공유
  - \* 외국인 사상자 정보 입수 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공유(재난안전법 제18조제5항)
-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외국인 사상자 정보 입수 시, 그 정보를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전달
  - (국제협력담당관실) 각 국 대사관과 외국인 피해현황 공유 및 확인



【 수 습 사 례 】

- ▶ '18.2.28. 어선 전복사고로 인도네시아 선원 사망자 발생 시 인적정보 제공, 영사관 통보
-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시신인계, 항공편으로 본국 인도 지원

□ 사건 통보 예시 (해경)

○○○

(○○○○ Korea Coast Guard)  
전화(Telephone) : 000  
팩스(Fax) : 000

수 신(To) : 베트남 대사관

제 목(Subject) : 사고사실 통보(Accident Notification)

1. **번사자(Personal Details of the deceased)**

성 명(Name) : 000  
 생년월일(Date of Birth) : 0000.00.00생  
 여권번호(Passport No.) : 0000  
 국적(Nationality) : 베트남

2. **발생 일시 및 장소(Date & Place of occurrence)**

발생일시 : 2000.00.00. 00:00경  
 발생장소 : 00-00.00N 000-00.00E(○○○도 남방 00 해리)

3. **발생 개요(Details of the incident)**

2000. 00. 00. 00:00경 00-00.00N 000-00.00E(○○○도 0 해리)  
 에서 어선 203현진호가 전복된 것을 인근을 항행하던 어선이 발견하  
 여 신고한 것임

4. **경찰 조치(Actions taken by the police)**

- 제203현진호 승선원 8명 중 6명 구조(1명 사망/5명 생존)
- 제203현진호 선원인 위 대상자는 제주 한라병원 후송, 저체온증  
 의 건강상태 양호함

사법경찰관(Officer in charge) 경위      **000**

**부록 11** 중앙수습지원단 표준편제와 임무

□ 목 적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대규모 재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함
- 주관기관 요청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중앙수습  
 지원단 파견조치

□ 중앙수습지원단 표준편제



□ 임 무

- 지역대책본부장 등에 대하여 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권고 및 조언
-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현장 상황 및 재난발생 원인 분석 보고
-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에 대한 보고 등

## 부록 12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해양선박사고)

### 선박 출항 전에는

- 승선시 또는 선내에서 행동을 할 경우에 안전운항을 위해 선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반드시 개찰구를 통하여 승선하여야 하며 인적사항을 승선권 또는 여객선 승선 신고서에 기재하여 이를 운송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객실을 배정받으면 비상대피 통로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상탈출 요령을 숙지합니다.
- 정원·화물적재 능력을 초과하여 승선·적재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운송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승선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선박 항해 중에는

- 선상의 난간에 기대거나 갑판에서 뛰는 행동, 지나친 음주와 소란 등의 행동은 해상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조타실, 기관실 등 선박의 조종과 직결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승무원의 허락 없이 출입, 기구 또는 장비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풍랑특보·강풍·폭우·대설 등으로 기상이 좋지 않거나 선체 동요가 심할 때는 객실 밖(갑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지정받은 객실을 담당하는 승무원의 얼굴과 이름, 연락처, 인터폰의 위치를 파악해 둡니다.
- 승무원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구명설비(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정 등) 및 소화설비의 위치와 수량을 파악하고 사용 방법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 객실에 갇힐 경우를 대비하여 탈출방법을 미리 생각해 둡니다.

### 선박 충돌, 침수 등 비상상황시에는

-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안내방송이나 승무원 또는 해양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차분한 가운데 질서있게 신속히 대피합니다.
- 대피시는 통로, 계단에서 질서를 지키고 침착하게 서로 협력하여 대피하도록 하고 가급적 노약자와 어린이를 먼저 대피시키도록 합니다.
- 배가 급격히 기울 경우 자동판매기, 캐비닛, 탁자, 캐리어 등의 미끄러짐이나 낙하, 유리파손 등에 의해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도록 합니다.
- 부상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승무원에게 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합니다.
- 고정된 물건을 꼭 잡아서 몸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비상상황 발생시 승무원 및 해양경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접 얻은 정보를 신뢰하고 결코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를 믿고 선불리 행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 폐쇄된 장소에 갇혔을 때는 인터폰 또는 119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부록 1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관**

기관명	부 서	전화번호	
지방해양수산청	부산	선원해사안전과	051-609-6543
	인천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97
	여수	선원해사안전과	061-650-6049
	마산	선원해사안전과	055-981-5102
	울산	선원해사안전과	052-228-5592
	동해	선원해사안전과	033-520-6149
	군산	선원해사안전과	063-441-2207
	목포	선원해사안전과	061-280-1647
	포항	선원해사안전과	054-245-1526
	평택	선원해사안전과	031-680-7225
대산	선원해사안전과	041-660-7637	
어업관리단	동해	안전정보과	051-410-1060
	서해	안전정보과	061-240-7951
	남해	안전정보과	064-780-2442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051-400-4331	
항만공사	부산	재난안전실	051-999-8494
	인천	재난안전실	032-890-0715
	울산	안전환경실	052-228-5435
	여수광양	재난안전실	061-797-4485
지자체	부산광역시	해운항만과	051-888-7647
	인천광역시	해양항만과	032-440-4813
	울산광역시	물류해양진흥과	052-229-5313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527
	충청남도	해양정책과	041-635-4763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과	063-280-4652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061-286-6832
	경상남도	항만물류과	055-211-4143
	경상북도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장 (독도해양정책과)	054-880-7764
	강원도	강원도환동해본부장 (어업진흥과)	033-660-8358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064-710-6354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02-2240-2331	

※ 행동매뉴얼 작성기관은 선종별 해양 선박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일반선박, 여객선, 원양어선, 연근해어선)에서 규정한 소관 책임과 역할에 따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운용할 수 있음

**부록 14**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중앙행정기관(가나다 順에 의함)

기관명	부 서	연 락 처
경 찰 청	위기관리센터	(전) 02-3150-2856
	(위기관리계, 평일·주간)	(전) 02-3150-2756 (팩) 02-3150-2661
	위기관리센터 (치안상황실, 365일·24시간)	(전) 02-3150-2229 (전) 02-3150-1234 (팩) 02-3150-3657 (팩) 02-3150-3658
고 용 노 동 부	화학사고예방과	(전) 044-202-7753, 7756 (팩) 044-202-8094
교 육 부	학교안전총괄과	(전) 044-203-6893 (팩) 044-203-6971
국 가 보 훈 처	운영지원과	(전) 044-202-5341~3 (팩) 044-202-5398
국 가 안 보 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전) 02-770-4380~5 (팩) 02-770-4887
국 가 정 보 원	상황실	(전) 02-3414-9437 (팩) 02-2187-0311
국 무 조 정 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전) 044-200-2241 (팩) 044-200-2247
	안전환경정책관실	(전) 044-200-2348,2351 (팩) 044-200-2367
	상황실	(전) 044-200-2860~1 (팩) 044-200-2862
국 무 총 리 비 서 실	민정민원비서관실	(전) 044-200-2810 (팩) 044-200-2825
국 방 부	재난상황실	(전) 02-748-3183~4 (팩) 02-748-5795
	합참지통제실	(전) 02-748-0301~3
	해본 지휘통제실	(전) 042-553-0330
	공본 지휘통제실	(전) 042-552-6644~5
국 토 교 통 부	육본 지휘통제실	(전) 042-551-0535, 0301
	국가교통정보센터	(전) 044-201-4679 (팩) 044-201-5533



기관명	부 서	연 락 처
기 상 청	국가기상센터	(전) 02-2181-0672~3 (팩) 02-836-6755~6
	예보정책과	(전) 02-2181-0493, 0508 (팩) 02-847-4419
	해양기상과	(전) 02-2181-0741,0747 (팩) 02-2181-0749
기 획 재 정 부	비상안전기획과	(전) 044-215-2680~5 (팩) 044-215-8035
	농림해양예산과	(전) 044-215-7351~6 (팩) 044-215-8051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운영지원과(주간)	(전) 044-201-1255 (팩) 044-868-0136
	당직실(야간, 공휴일)	(전) 044-201-1000 (팩) 044-868-0140
대 통 령 비 서 실	산업정책비서관(상선) 농어업비서관(어선)	(전) 02-770-7832, 7863 (팩) 02-770-4717, 4760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홍보담당관	(전) 044-203-2040 (팩) 044-203-3444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비상안전기획관실	(전) 02-2110-2165 (팩) 02-2110-0278
법 무 부	비상안전기획관실	(전) 02-2110-3012 (팩) 02-2110-0315
법 제 처	운영지원과	(전) 02-2100-2519 (팩) 02-2100-2781
보 건 복 지 부	비상안전담당관(재난안전TF)	(전) 044-202-2652 (팩) 044-202-3989
	응급의료과	(전) 044-202-2562 (팩) 044-202-3930
	질병정책과	(전) 044-202-2507 (팩) 044-202-3928
	정신건강정책과	(전) 044-202-2864 (팩) 044-202-3940
	야) 당직실	(전) 044-202-2117 (팩) 044-202-3985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종합상황실(주.야)	(전) 044-203-4002~5
소 방 청	119종합상황실	(전) 044-205-6119 (팩) 044-205-8860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 044-205-1119 (팩) 044-205-8877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비상안전담당관	(전) 043-719-1642~6 (팩) 043-719-1640
여 성 가 족 부	가족정책과	(전) 02-2100-6330 (팩) 02-2100-6485

기관명	부 서	연 락 처
외 교 부	해외안전지킴센터	(전) 02-2100-8566 (팩) 02-2100-7996
통 일 부	정보상황실	(전) 02-2100-5762 (팩) 02-733-0926
	비상안전담당관(상황실)	(전) 02-2100-5670~1, 3 (팩) 02-2100-5674
	이산가족과(어선)	(전) 02-2100-5911 (팩) 02-2100-5919
	남북경협과(상선)	(전) 02-2100-5812 (팩) 02-2100-5829
해 양 경 찰 청	해양안전과	(전) 032-835-2149 (팩) 032-835-2991
	수색구조과	(전) 032-835-2345 (팩) 032-835-2849
	기동방제과	(전) 032-835-2195 (팩) 032-835-2994
	상황센터	(전) 032-835-2142 (팩) 032-858-8182
해 양 수 산 부	해사안전관리과	(전) 044-200-5856 (팩) 044-200-5869
	해운정책과	(전) 044-200-5727 (팩) 044-200-5729
	연안해운과	(전) 044-200-5737 (팩) 044-200-5739
	원양산업과(원양어선)	(전) 044-200-5362 (팩) 044-200-5529
	어선정책팀	(전) 044-200-5527 (팩) 044-861-9479
	해양환경정책과	(전) 044-200-5283 (팩) 044-200-5299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전) 044-200-6114~5 (전) 044-200-6122 (팩) 044-200-6139
	종합상황실	(전) 044-200-5895~6 (팩) 044-200-5886
행 정 안 전 부	재난대응정책과	(전) 044-205-5217 (팩) 044-205-8954
	산업교통재난대응과	(전) 044-205-6332 (팩) 044-205-8967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전) 044-205-1540~5 (팩) 044-205-8890
환 경 부	화학안전과	(전) 044-201-6838 (팩) 044-201-6830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상황실)	(전) 042-605-7030~1 (팩) 042-605-7036
	야) 당직실	(전) 044-201-7440~1
한 연 국 항 공 구 우 주 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전) 042-860-2227 (팩) 042-870-3909
	야) 당직실	(전) 042-860-2114
한 기 국 해 양 과 학 원	해양위성센터	(전) 051-664-3136 (팩) 070-4275-1211
	야) 당직실	(전) 051-664-3000

□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야	부 서 명	전화	팩스
서울	주간	서울종합방재센터	02-726-2071~4	02-726-2044
부산	주간	해운항만과	051-888-7647	051-888-7649
	야간(휴일)	재난상황실	051-888-3041	051-888-3059
대구	주간	산업교통재난대응과	053-803-3111	053-803-5959
	야간(휴일)	119종합상황실	053-350-4064	053-350-4069
인천	주간	해양항만과	032-440-4813	032-440-8690
	야간(휴일)	119 종합방재센터	032-870-3139	032-870-3189
광주	주간	재해예방과	062-613-2680	062-613-4919
	야간(휴일)	119종합상황실	062-613-8087~9	062-613-8098~9
대전	주간	재난관리과	042-270-5990	042-270-4939
	야간(휴일)	119종합상황실	042-270-6181	042-270-6179
울산	주간	물류해양진흥과	052-229-5313	052-229-2969
	야간(휴일)	119종합상황실	052-229-4620~1	052-229-4519
세종	주간	치수방재과	044-300-5311~7	044-300-5319
	야간(휴일)	119종합상황실	044-300-8152~4	044-863-0119
경기	주간	해양수산과	031-8008-4527	031-8008-2639
	야간(휴일)	재난종합지휘센터	031-230-6623	031-230-2969
강원	주간	어업진흥과	033-660-8358	033-662-8810
	야간(휴일)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033-249-5370~1	033-249-4065
충북	주간	치수방재과	043-220-2452	043-220-2459
	야간(휴일)	소방종합상황실	043-220-4942	043-220-4949
충남	주간	해양정책과	041-635-4763	041-635-3072
	야간(휴일)	종합방재센터	041-635-3119	041-635-3080
전북	주간	해양수산정책과	063-280-4652	063-280-2819
	주간	119종합상황실	063-280-3119	063-280-3879
	야간(휴일)	해운항만과	061-286-6832	061-286-4738
전남	주간	119종합상황실	061-286-0901	061-286-0910
	야간(휴일)	독도해양정책과	054-880-7764	054-246-9058
경북	주간	119종합상황실	054-880-6432~3	054-880-6419
	야간(휴일)	항만물류과	055-211-4143	055-211-4119
경남	주간	119종합방재센터	055-211-5522~4	055-211-5339
	야간(휴일)	해운항만과	064-710-6354	064-710-6359
제주	주간	119종합상황실	064-710-2119	064-710-4119
	야간(휴일)	119종합상황실	064-710-2119	064-710-4119

□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구 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중부지역 (6)	인천VTS	032-728-8250	032-728-8850	
	평택VTS	031-8046-2550	031-8053-7789	
	경인VTS	032-728-8252	032-728-8452	
	대산VTS	041-950-2550	041-663-0349	
	경인연안VTS	032-835-2556	032-835-2956	
	태안연안VTS	041-950-2552	041-950-2452	
동해지역 (2)	동해VTS	033-680-2550	033-680-2850	
	포항VTS	054-750-2550	054-750-2850	
서해지역 (6)	군산VTS	063-467-1375	063-467-1953	
	목포VTS	061-241-2550	061-241-2850	
	완도VTS	061-550-2550	061-550-2450	
	여수VTS	061-840-2552	061-840-2852	
	여수연안VTS	061-840-2450	061-840-2650	
	진도연안VTS	061-288-2550	061-544-4469	
남해지역 (5)	울산VTS	052-230-2650	052-230-2850	
	부산VTS	051-664-2750	051-404-2623	
	부산신항VTS	051-663-2550	055-545-0406	
	마산VTS	055-981-2550	055-981-2850	
	통영연안VTS	055-647-2550	055-647-2950	
제주지역 (1)	제주VTS	064-801-2550	064-801-2850	



**부록 15** 소속기관 비상연락망

□ 소속기관

기관명	주야	부서	전화	팩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51-609-6543	051-609-6529
	야간(공휴일)	당직실	051-609-6230	051-609-6819
제주해양관리단	주간	선원해사안전팀	064-720-2648	064-720-2602
	야간(공휴일)	당직실	064-720-2610	064-720-2613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97	032-884-3564
	야간(공휴일)	당직실	032-880-6222	032-882-4642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61-650-6047	061-654-2456
	야간(공휴일)	당직실	061-650-6026	061-653-4434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55-981-5080/5100	055-242-1260
	야간(공휴일)	당직실	055-981-5050	055-246-8459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52-228-5580	052-228-5559
	야간(공휴일)	당직실	052-228-5504	052-228-5712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33-520-6146~9	033-520-6140
	야간(공휴일)	당직실	033-520-6200	033-520-6209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63-441-2207	063-441-2352
	야간(공휴일)	당직실	063-441-2208	063-441-2358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61-280-1640/1647	061-280-1655
	야간(공휴일)	당직실	061-280-1701	061-280-1703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54-245-1526	054-242-1326
	야간(공휴일)	당직실	054-245-1666	054-245-1623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31-680-7224	031-680-7229
	야간(공휴일)	당직실	031-680-7290	031-680-9030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41-660-7637	041-663-0347
	야간(공휴일)	당직실	041-660-7621	041-660-7785
국립수산과학원	주간 및 야간(공휴일)	수산정보 종합상황실	051-720-2066~8	051-720-2069
	주간	해도수로과	051-400-4331	051-400-4194
국립해양조사원	주간	당직실	051-400-4119	051-400-4190
	주간 및 야간(공휴일)	안전정보과 (상황실)	051-410-1060~1 (051-410-1069~71)	051-410-1065 (051-410-1074)
동해어업관리단	주간 및 야간(공휴일)	안전정보과 (상황실)	061-240-7950~2	061-240-7958
서해어업관리단	주간 및 야간(공휴일)	안전정보과 (상황실)	064-780-2442~7	064-780-2458~9

**부록 16**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등

기관명	주야	전화	팩스	
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주간	051-999-8494	051-999-3179
		야간	051-999-3114	051-999-3295
	인천항만공사	주간	032-890-0715	032-726-0315
		야간	032-890-8000	032-890-8109
	울산항만공사	주간	052-228-5435	052-228-5449
		야간	052-228-5300/4100	052-260-5305
여수광양항만공사	주간	061-797-4485	061-797-4497	
	야간	061-797-4300	061-797-450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간	02-2240-2323~4	02-2240-3027	
	야간	02-2240-2323~4	02-2240-302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주간	044-330-2447 (해양사고예방센터) 044-330-2371~5 (운항관리실)	044-330-2339 (해양사고예방센터) 044-330-2379 (운항관리실)	
	야간	010-2627-1212 (해양사고예방센터) 010-9914-7910 (운항관리실)	044-330-2339 (해양사고예방센터) 044-330-2379 (운항관리실)	
한국선급	주간	070-8799-8200	070-8799-8219	
	야간	010-8807-7338	070-8799-8219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주간	031-389-2131	031-389-2183	
	야간	010-8504-7534	031-389-2183	
해양환경공단	주간	02-3498-8600	02-3462-7707	
	야간	02-3498-8600	02-3462-7707	
한국선주협회	주간	02-739-1551~7	02-739-1562	
	야간	010-4097-0912	02-739-1562	
한국해운조합 (공제보상팀)	주간	02-6096-2112~4	02-6096-2129	
	야간	02-6096-2200~1	02-6096-2129	

□ 유관 업·단체

번호	단체명	직위	성명	전화	Fax	휴대전화
1	한국해운조합 여수지부	지부장	김근표	640-4001	663-1151	-
		보험(사업지원팀)		640-4022	663-1151	-
2	해양환경공단 여수지사	지사장	진흥재	654-6431	654-6430	-
3	여수항도선사회	회장	강철민	660-1383	666-0322	
		상무	김용철	660-1383	666-0322	010-9328-5287
		상황실	-	666-1333	-	-
4	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 여수지부	지부장	홍환표	654-5262	654-5265	010-4232-2465
		검사원	김몽주	654-5262	654-5265	010-5293-8750
		운항관리센터장	임상호	662-9720	662-9719	010-3644-3471
		녹동 운항관리센터	조시원	844-9012	844-9014	010-8201-3262
5	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 고흥지부	지부장	남정조	844-5394	844-1369	010-6535-6180
		검사원	김대준	844-5394	844-1369	
6	(사)한국선급 여수·광양지부	지부장	김성주	070-8799-7818	070-8799-7819	010-4079-4637
		검사원	백승현	070-8799-7818	070-8799-7819	010-2025-8432
7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여수지부	지부장	신승호	681-3551	681-3552	010-9871-4757
8	수협중앙회 여수어선안전조업국	국장	정석훈	642-4915	643-5842	
		과장	정기동	642-4915	643-5842	
9	수협중앙회 고흥어선안전조업국	국장	김동규	842-2601	842-2606	
10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지도계장	이태홍	640-3018	641-2673	
11	여수항운노조	조직부의원장	최광성	662-6920	665-8656	010-6211-3528
12	순천항운노조	쟁의부장	김학성	723-3115	723-3105	010-3647-4229
13	광양항만항운노조	차장	김승현	792-0777	792-2003	010-8551-2741
14	(주)한국탱카안전공사	팀장	장일하	683-1100	683-1102	

□ 해상여객운송사업체

번호	회사명	전화	Fax	비고
1	(유)한림해운	666-8092	665-8093	
2	(주)남해고속	842-6111	842-6113	
3	(주)삼도해운	832-3434		
4	(주)에이치해운	070-4647-3107		
5	(주)오션호프해운	662-773	662-4500	
6	(주)좌수영해운	662-1185	662-1186	
7	(주)인천해상	666-8092	665-8093	
8	(주)풍진해운	843-1171	842-1172	
9	(주)한일고속	662-8002	662-8006	
10	(주)해광해운	555-9088	555-9089	
11	태평양해운(주)	662-5454	662-5456	
12	평화해운(주)	844-4358	842-5659	

□ 내항화물운송사업체

번호	회사명	전화	Fax	비고
1	(유)금창해운	010-8624-8250	662-3009	
2	(유)신세계오션	010-7533-3900		
3	(유)운화건설	683-1385	685-7945	
4	(유)한반도해양	010-7135-9499	0303-3130-0912	
5	(유)한흥해운	683-5409	684-2999	
6	(유)해운유조	642-4788	642-4787	
7	(유)흥진해상	662-7712	662-7714	
8	(주)거명해운	654-6005	662-9400	
9	(주)광양해양환경	793-2420	793-2421	
10	(주)광우종합건설	642-9311	642-9317	
11	(주)광진건설	061-642-9316	642-9317	
12	(주)금우해운	061-666-7088		
13	(주)나래해운	761-2234	761-2236	
14	(주)통신	653-8221	653-8220	
15	(주)동우건설	681-1014	061-681-1015	
16	(주)보성해운	061-662-6744	061-653-7972	
17	(주)상진해상급유	653-8221	653-8220	
18	(주)석진	792-7781~2	792-7789	

19	(주)세윤선박	061-666-2505	061-662-9400	
20	(주)세윤선박	061-665-5189		
21	(주)수광	642-6220	643-6220	
22	(주)에이치엔	691-5656	691-2727	
23	(주)옥주급유	664-4001		
24	(주)우국	642-6220	643-6220	
25	(주)우국건설	061-642-6220	061-643-6220	
26	(주)원창에너지	653-0077	653-0076	
27	(주)이레상운	061-663-3331	061-663-3332	
28	(주)진성	061-662-6744		
29	(주)진성해상	061-791-1532	061-791-2310	
30	(주)케이시	061-920-8090		
31	(주)케이에이치제이	061-686-0913	0303-3130-0912	
32	(주)하나환경	061-643-0523	061-644-0523	
33	(주)화성	061-662-3511	061-662-7880	
34	(합)대일마린	663-0228		
35	13해진호	010-9430-4399		
36	2황해호	010-3613-4547		
37	강남유조	682-5365	682-5364	
38	거금호	010-3636-2778	844-2787	
39	고려해상화물운송	010-7315-3522		
40	광성실업	051-804-5617		
41	광양선박(주)	798-7700	798-7788	
42	그린오션텍	010-6663-3346	0303-3441-3346	
43	금경해운	0110-6610-4790		
44	기선2일광호	643-6614	641-4420	
45	김학주	641-2053		
46	김형섭	644-1367		
47	남성유조	666-1751	662-1751	
48	대성호	010-4690-9484		
49	대진항운	010-4603-8001		
50	대한시멘트(주)	798-8504	795-0001	
51	덕일호	641-6805		
52	동백호	010-6733-1129		
53	동부마린	641-4973		
54	동인개발(주)	641-2780		
55	디엔엘shiping	061-662-5501		

56	명가카훼리호	010-5026-9520		
57	박경심	842-3641	844-3641	
58	박종기	643-8848		
59	박희정	844-0882		
60	상진유조	061-653-8221	061-653-8220	
61	선경호	010-6250-9083		
62	세진마린	061-662-2227		
63	승리2호	010-8628-3501	261-8211	
64	승리5호			
65	승찬호	010-2460-4103	061-664-3339	
66	아시아해상급유(주)	654-0129	02-508-5750	
67	알파해운(주)	02-756-2901	02-756-2903	
68	여광해상	795-1666	726-1775	
69	여문호	010-8565-5698		
70	여수압해호	010-6630-9080	681-4106	
71	여수해상서비스	662-9322	662-9311	
72	여수해상용달	662-9322	662-9311	
73	연합항운	010-2764-5479		
74	오승해운개발	010-5029-8057	684-6803	
75	우간난	010-6429-8284		
76	우진호	010-3623-6199		
77	윤환태	010-3613-5065		
78	이순신호	664-3542	664-3543	
79	일등호	010-4617-5177		
80	제2명진호	641-2922		
81	제98보명호	642-5553	643-1186	
82	주식회사 우도	061-651-3111	061-654-8422	
83	지에스칼텍스(주)	02-2005-6596	02-3404-5103	
84	케이엠씨해운 주식회사	061-798-7700	061-798-7788	
85	태창해운(주)	654-3090	654-1880	
86	태평양해운(주)	662-5454	662-5456	
87	태평양호	010-8616-0837	663-8666	
88	평화해운(주)	061-843-2300	842-5659	
89	한선해운(주)	692-0615	692-0619	
90	해성수중	010-4690-9484		
91	해성호	010-6291-8639		
92	허브마린(주)	061-807-3334	807-3335	
93	현대shiping	010-7377-2668	663-8666	
94	효동항업(주)	665-7968	666-1494	

□ 해운대리점

번호	상 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1	(유)조영해운	061-685-3888	061-685-8188	
2	(유)푸른바다	061-842-2002	061-842-8008	
3	(주)광명해운	010-5715-2837	061-685-8188	
4	(주)남우진흥	061-688-5308	061-688-5316	
5	(주)누리마린	061-685-2398	061-685-2397	
6	(주)뉴글로벌해운	061-651-2123	061-651-0789	
7	(주)루맥스해운	061-794-8765	061-794-8768	
8	(주)모든	1588-6435	761-6570	
9	(주)반도해운	061-651-8902	061-652-6336	
10	(주)삼주로지스	061-795-3626	061-795-3629	
11	(주)수양해운	010-8192-4860		
12	(주)신명해운	061-654-5343~5	061-654-5346	
13	(주)신성해운	061-662-4452	061-662-4453	
14	(주)씨앤씨해운	061-793-0550	061-793-0560	
15	(주)오션마린	061-793-5231	061-793-5230	
16	(주)유달마린	061-793-3198	061-794-3198	
17	(주)이지마린	061-654-7614	061-666-7612	
18	(주)조해운	010-7721-4219	050-4130-4219	
19	(주)진성해상	061-791-1532	061-791-2310	
20	(주)창세해운	061-791-4095	061-791-4096	
21	(주)토탈마린	061-691-5470	061-691-5471	
22	(주)팬스코	061-791-6543	061-791-6544	
23	(주)퍼스트에이젠티	061-654-9301~3	061-654-9304	
24	(주)하니해운	061-654-0988		
25	(주)하버마린서비스	010-7600-2773	070-7500-4494	
26	(주)해강해운	010-9453-6612		
27	(합)남도운수	061-794-0177	061-665-0881	
28	(합자)여진해운사	061-793-8600	061-793-8604	
29	광양삼원해운(유)	010-6205-2483		
30	광양에이젠티(주)	061-795-3626	061-795-3629	

31	남해해상(주)	061-643-4201	061-643-4205	
32	노아선박(주)	061-665-4400	061-665-4404	
33	대운해운(주)	061-867-2435	061-867-2455	
34	동아해운(주)	061-666-6900	061-666-6903	
35	두성해운(주)	061-652-3453	061-666-1494	
36	마린스트(주)	061-662-8551	061-664-1512	
37	명도해운(주)	061-683-2345		
38	명보(주)	061-685-6172		
39	벤자민해운(유)	061-921-9951	061-921-9952	
40	비티에스마린 주식회사	010-9345-4779		
41	상지해운(주)	061-650-2700	061-650-2730	
42	서보해운(주)	061-686-0171	061-692-2306	
43	서우해운(주)	061-660-8800	061-663-8810	
44	선양해운(주)	061-664-5855	061-643-8820	
45	싱크로해운(주)	061-691-8760	686-0054	
46	에스와이해운 주식회사	010-2013-0441		
47	엘앤씨마리타임(주)	061-655-1551	061-655-1221	
48	엠제이로직스(주)	061-793-8680		
49	엠제이산업(주)	061-795-3695	061-795-9938	
50	여수선박(주)	061-666-0882	061-665-0881	
51	연성해운(주)	061-793-2025	061-793-2026	
52	와이케이해운 주식회사	010-2389-9321		
53	은파해운(주)	061-794-6776	061-794-6775	
54	주식회사 세바해운	061-653-7123	061-653-7178	
55	주식회사 씨맨해운	010-8787-3737		
56	진양선박(주)	061-665-1094	061-664-0662	
57	케이엠씨해운 주식회사	061-798-7700	061-798-7788	
58	태원해운(주)	061-685-1307	061-685-1309	
59	하나해운(주)	061-795-7335	061-795-7339	
60	해왕해운(주)	061-792-4477	061-792-4478	
61	허브에이젠티(주)	061-654-9661	061-654-9660	
62	효동항업(주)	061-665-7968	061-666-1494	

□ 하역업체

번호	회 사 명	전화	Fax	비고
1	(유)조은골재	061-683-3445	061-664-7363	
2	(유)피케이엘	061-654-9603	061-654-9605	
3	(주)동방	798-2534	798-2537	
4	(주)동양	794-4181	794-4183	
5	(주)여수탱크터미널	686-3207	686-3210	
6	(주)포스코(POSCO)	790-2953	790-4899	
7	(주)한진(호남지역본부)	792-5403	791-2172	
8	GS칼텍스(주)	680-2581-4	680-2589	
9	OCI(주)	061-798-6071	061-798-6105	
10	(주)농협물류	688-5315	688-5305	
11	(주)로텍스	793-9960/7451	793-7454	
12	(주)마린글로벌리	686-5901	686-5900	
13	(주)석포물류	664-3015	664-3018	
14	(주)세광		791-5080	
15	(주)신창	792-9571	795-9571	
16	(주)케이씨티시	055-290-3600	055-290-3690	
17	(주)포스로지텍	798-8853	798-8857	
18	(주)하버마린서비스	651-8550	651-8553	
19	(주)한국해운	061-686-6609	692-0081	
20	(주)한유	061-792-1551	792-7577	
21	광양선박(주)	798-7700	798-7788	
22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주)	061-797-0286	061-797-0229	
23	금호티앤엘(주)	808-3321	808-3329	
24	남해화학(주)	688-5628	688-5570	
25	대주기업(주)	792-2445~6	792-3511	
26	대주중공업(주)	061-755-0060	061-755-3704	

27	동방에스엔에스(주)	663-0020~1	663-0010	
28	두원산업(주)	751-6077	751-6078	
29	보임코퍼레이션(주)	686-6420	686-6422	
30	삼우중공업(주)	061-780-3660	061-780-3600	
31	세방(주)	798-7300	798-7410	
32	씨제이대한통운(주)	797-5040	797-5049	
33	에스엠상선광양터미널(주)	815-1518	797-6699	
34	에스와이탱크터미널(주)	686-3611	685-0504	
35	여수국제항만(주)	680-4800	680-4809	
36	여수페트로(주)	061-691-2961	061-691-2964	
37	여천엔씨씨(주)	688-6114/6201	685-6190	
38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	688-9154	688-9159	
39	일신해운(주)	795-5665	795-5666	
40	주식회사 이원(E1)	686-3222(212)	686-3227	
41	창영산업(주)	791-6658	791-5641	
42	포스코에너지(주)	02-3457-2072	02-3457-2115	
43	포스코터미널(주)	793-7411~3	790-6386	
44	포트엘(주)	061-792-9423	061-792-9429	
45	한국국제터미널(주)	798-1857	792-3422	
46	한국석유공사	688-8757	686-8759	
47	현대글로벌비스(주)	795-4214	795-4210	
48	효동항업(주)	665-7968,70	666-1494	
49	휴캠스(주)	680-4606	680-4620	

□ 선박금융업체

번호	회 사 명	전화	Fax	비고
1	(유)금양에너지	643-5512	643-5513	
2	(유)금창해운	662-3009	662-3009	
3	(유)대흥석유	665-5461	665-5462	
4	(유)삼일(구.삼이유업)	061-662-0033	061-662-0034	
5	(유)신영에너지	686-3377	665-3222	
6	(유)태성에너지	010-3180-3823		
7	(유)한려유조	061-666-7979	061-666-7900	
8	(유)흥진해상	662-7712	061-662-7714	
9	(주)대신석유	663-3392	662-3395	
10	SK네트웍스(주)	692-6365~6	692-6367	
11	(주)거영해운	654-6005	662-9400	
12	(주)경풍	051-466-9252	051-466-9250	
13	(주)대화유업	665-3221	665-3222	
14	(주)동신	653-8221	653-8220	
15	(주)명진	691-5717	691-5718	
16	(주)보성해운	662-6744	653-7972	
17	(주)비에스이	051-973-5151	051-973-5150	
18	(주)상진해상금융	061-653-8221	061-653-8220	
19	(주)세윤선박	665-5189	662-9400	
20	(주)에이스환경	653-8838	653-8837	
21	(주)에이치비에너지	692-6353	692-6354	
22	(주)옥주금융	666-3458	663-4785	
23	(주)우리상사 (구:청해진)	061-651-7811	061-652-0597	
24	(주)원창에너지	653-0077	653-0076	
25	(주)이레상운	663-3331	663-3332	
26	(주)진성	665-5151	665-5152	

27	(주)창승에너지	906-9977	904-9977	
28	(주)코스코상운	654-1257	654-7297	
29	(주)한국석유물류	655-4207	655-4209	
30	(주)한빛이앤에스	692-6251	692-6252	
31	(주)한유	792-1552~4	792-7577	
32	(주)현대페트로	683-0306	683-0422	
33	(주)호남상운	685-6500	0303-3445-6994	
34	(주)화성	662-3511	662-7880	
35	그린에너지(주)	643-2247~8	643-2249	
36	남선석유(주)	642-5757	642-6060	
37	동광유업(주)	02-761-3880	02-780-0730	
38	동부석유(주)	755-6354	755-4988	
39	디앤엘씰핑	662-5501	662-5502	
40	상진유조	653-8221	653-8220	
41	성신에스티에이(주)	041-681-5504	041-681-5557	
42	성원석유(유)	651-8820	651-8821	
43	신진해상금융(주)	691-7636	691-7182	
44	아시아해상금융(주)(구:(주)신성)	02-508-5751	02-508-5750	
45	에스엠에너지(주)	051-583-8823	051-583-8825	
46	에이치비씨(주)	051-247-1700	051-247-1703	
47	엑스포주유소	663-7999	663-8999	
48	오션렉스코리아(주)	02-3775-2211	02-3775-2215	
49	와이앤지씰핑	662-5501	662-5502	
50	월드에너지(주)	666-6100	666-6103	
51	좋은에너지(주)	653-7668	653-7669	
52	진양에너지(주)	061-665-2495	665-2496	
53	한신해운	651-6914	651-6913	
54	해안석유(주)	051-462-3456	051-442-3455	

## 부록 17 재난현장 대피시 안전취약 계층 특성별 대피 고려사항

- 주관부서 : 비상대책반 총괄통제부, 비상대책반 지원부
- 지원부서 : 비상대책반 운영대책부, 비상대책반 복구대책부
- 협업기관 : 여수·광양경찰서, 여수·광양시 등 지자체

### 1. 안전취약계층 유형별 특징

#### ○ 시각장애인

- 자신의 힘만으로 피해 상황을 아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시각정보에 의한 긴급사태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숙한 지역 내에 있더라도,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도움 없이는 평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대피소 등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이동 등의 행동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혼자서는 신속하게 행동할 수 없다).
-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청각장애 등 다른 장애도 있는 중복장애인이 있다.

#### ○ 청각장애인

- 음성정보를 전달받기 어렵거나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시각정보가 아닌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고, 음성 대피유도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긴급시에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어렵다.
- 겉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지체장애 등 다른 장애도 있는 중복장애인이 있다.

#### ○ 시청각중복장애인

- 대피소 등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이동 등이 어렵다  
(단독대피가 어렵다).
- 장애의 상태(전맹전농, 약시전농, 전맹난청, 약시난청)별로 정보수집 방법이 다르며, 상황판단이 어렵다.

#### ○ 언어장애인(실어증 등)

- 긴급시에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어렵다.
- 겉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 지체장애인

-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 특히, 하지장애인 등은 자력으로 대피하는 것이 어렵다.

#### ○ 내부장애인

- 겉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자력 보행이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심장·신장·호흡기 등 기능장애로 인해 인공투석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항상 의약품을 소지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 항상 의료기기(인공호흡기, 산소봄베, 가래흡입기 등)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 ○ 지적장애인

-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혼자서는 이해 또는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긴급사태 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환경 변화에 크게 동요하는 경우가 있다.

#### ○ 정신장애인

-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신적 동요가 격렬해지는 경우가 있다.
-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 평소에 복용하고 있는 약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

○ 고차뇌기능장애인

- 동시에 여러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둘 이상의 지시를 받으면 혼란하는 경우나, 음성으로 받은 지시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 방금 전의 기억 또는 목적지나 장소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 긴급시에도, 궁금한 것이나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위험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가 있다.
- 혼자서는 이해 또는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환경 변화에 따른 동요를 보이고,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경우나, 매번 지시받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는 경우나, 직접 지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걸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답변이 원활하므로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할 수 있다”, “알았다”라고 자신있게 답변하지만 실제로는 행동할 수 없다.
- 갑자기 흥분하거나 화를 내거나 참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
- 자신의 피로를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발달장애인

- 환경이 평소와 다르게 변하는 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서투르므로, 불안한 상태에서 침착성을 잃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어 패닉을 일으키는 경우 등이 있다.

- 의사소통이 서투르므로, 정보를 한꺼번에 받으면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경우나 자신의 어려움을 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 상상하는 것이 서투르므로, 대피의 필요성이나 위험한 장소 또는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청각·촉각 등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하여 특정 소리를 싫어하여 귀를 막고 두려워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밖에, 편식하거나 특성 옷만 입거나 몸에 닿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감각이 둔감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처나 상태 불량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답변이 원활하므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각의 질병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 치매노인

- 시간·장소·사람을 파악하는 데 혼란하는 경우가 있다.
- 식사했다는 사실을 잊고 다시 음식을 요구하는 등 최근에 한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 말을 하지 못하거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주변에 있는 물건의 용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렵다.



- 옷을 잘 갈아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  
(상기 증상은 환경 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쉽다)

○ 임신부

-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으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2. 안전취약계층의 특성별 배려 사항**

○ 시각장애인

- 시각에 의한 긴급사태 등의 인지가 불가능하거나 한순간에 인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음성에 의한 정보전달 및 상황설명이 필요하다.
- 일상생활권 밖에서는 간병인이 없으면 대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피유도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
- 중복장애인인 경우, 장애상황에 따른 추가 지원 요청이 있을 수 있다.

○ 청각장애인

- 음성에 의한 대피명령 및 대피유도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수화·요약필기·문자·그림 등을 활용한 정보전달 및 상황설명이 필요하다.

○ 시청각중복장애인

- 시각 또는 음성에 의한 긴급사태 등의 인지가 어려우므로, 점화(點話, finger braille), 촉수화(觸手話, tactile signing), 지문자(指文字, fingerspelling), 손바닥에 글씨 쓰기 (print-on-palm), 확대문자(large print) 등 개인별 장애상

황을 고려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한 정보전달·상황설명이 필요하다.

- 일상생활권 밖에서는 간병인이 없으면 대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피유도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
- 혼자 있으면 모든 정보가 차단되는 것을 고려한다.

○ 언어장애인(실어증 등)

- 자신이 처한 상황 등을 말로 전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수화·필담 등을 활용한 상황파악이 필요하다.

○ 지체장애인

- 자력보행이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휠체어 등의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이 경우, 유지관리도구(공기주입, 펌프수리, 공구)도 필요하다.

○ 내부장애인

- 자력보행이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휠체어 등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휴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료기관 등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 인공배설기구 장착자인 경우에는 인공배설기구용 기구가 필요하다.

○ 지적장애인

- 긴급사태 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환경 변화에 의한 정신적인 동요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짧은 단어나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전달하여 사태의 이해를 도모하는 동시에,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을 진정시키면서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신장애인

- 재난 발생 시 정신적 동요가 격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분을 진정시키는 배려가 필요하다.
-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평소부터 스스로 약의 종류를 파악하도록 지도하며, 의료기관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 고차뇌기능장애인

- 기억장애 등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전에 본인의 증상을 파악하여 행동요령이 기재된 메모를 전달하고,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발생할 일 등을 여러 번 반복하여 설명하는 등 본인의 증상에 맞는 유도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긴급사태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짧은 단어나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전달하여 사태의 이해를 도모하고,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재난 발생 시에는 정신적 동요가 격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분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 음식·물자 배급을 기다리지 못하고 화내거나 소란피우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족 대신에 줄을 서주거나 별도배급 등의 대응을 통해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발달장애인

- 앞으로 일어날 일이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일정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추상적인 단어는 피하고,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전달한다. 귀로 들은 것보다 눈으로 본 것을 잘 이해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본인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실물·사진·그림이나 단어 등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하면 안 되는 것, 가면 안 되는 장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거나 패닉 등을 일으킨 때에는, 기분이 진정되도록 조용한 장소를 확보하거나 개인실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텐트나 파티션·골판지로 주위의 공간과 구별하는 등의 고안이 필요하다. 청각과민인 경우에는 헤드폰 또는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마음에 드는 것을 준비하는 등을 통해 진정된 상태로 지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부상 또는 상태가 좋지 않다는 민원이 없어도, 몸 상태를 대강 확인하거나 식사·수면 중인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 지체장애가 있거나 외견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각의 병태나 증상에 따른 대피유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 인공호흡기나 인공투석 등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만성질환자가 많고, 의약품을 확보하는 데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치매노인

- 긴급사태 등의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환경 변화에 의한 정신적인 동요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을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안전취약계층의 특성별 정보전달 시의 주요 배려 사항**

○ 시각장애인

- 시·군·구의 홍보, 그 밖에 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온 때에는, 반드시 알린다.
- 알기 쉬운 어조로 전달한다.
- 음성 정보로 여러 번 반복한다.
- 점자나 확대문자 외에, 점화나 촉수화, 지문자, 손바닥에 글씨 쓰기 등 둘 이상의 방법을 조합한 의사소통을 취하여 정보 제공에 노력한다.
- 시청각중복장애인통역사·보조인을 대피소 등에 파견한다.
- 둘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장애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 청각장애인

- 정면에서 입을 크게 움직이면서 말한다.
- 문자나 그림을 조합한 필담으로 정보를 전달한다(항상 필기구를 준비해둔다).
- 시청각중복장애인통역사·보조인, 수화통역자 및 요약필기자를 대피소 등에 파견한다.
- 게시판·팩스 및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대피소에 문자다중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 시청각중복장애인

- 생활환경이나 장애상황, 장애발생 시기 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다.
- 의사소통 방법은 점자(점화), 수화(촉수화), 지문자, 필담, 손바닥에 글씨 쓰기, 음성 등이며 둘 이상의 조합으로 의사소통한다.
- 시·군·구의 홍보, 그 밖에 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온 때에는, 반드시 알린다.
- 점화나 촉수화, 지문자, 손바닥에 글씨 쓰기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전달한다.
- 시청각중복장애인통역사·보조인을 대피소 등에 파견한다.

○ 지적장애인

- 구체적이고 짧은 단어로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한다.
- 그림·지도·문자 등을 조합하여,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를 배려한다.

○ 고차뇌기능장애인

- 행동요령, 중요한 설명·예정은 메모로 전달한다.
- 그림·지도·문자 등을 조합하여,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 말을 할 수 없어 곤란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을 추측하여 선택지를 주거나 그림·지도를 활용하는 등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를 배려하여, 초조해하는 때에는 조용한 장소로 유도하여 침착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묻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메모를 붙여놓거나, 반복하여 설명한다.

○ 발달장애인

- 추상적인 단어는 피하고,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단어로 확실하게 전달한다. 발달장애인의 이해도에 따라 실물이나 사진, 그림, 단어 등 시각적인 형태로 전달한다.
- 미리 알릴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한 한 사전에 전달한다.
- 큰 목소리를 무서워하는 등의 경우가 있으므로,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건다.
- 한꺼번에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말을 걸어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 하면 안 되는 것, 가면 안 되는 장소, 만지면 안 되는 것 등이 있는 경우, 사전에 그것을 확실히 전달한다. 「×」 등의 표지나 마크를 사용하여,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 회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있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태를 파악하여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 치매노인

- 구체적이고 짧은 단어로 천천히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별 대피유도 시 주요 고려 사항

○ 시각장애인

- 안부확인파 대피소로의 대피유도(보행지원)를 누가 할 지를 사전에 결정해둔다.
-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확보한다.
- 일상생활권 내에서도 재난 시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인지도(認知地圖)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배려한다.

○ 청각장애인

- 수화 또는 문자정보로 상황을 설명하고 대피소 등으로 유도한다(필기구 등을 준비한다)

○ 시청각중복장애인

- 안부확인파 대피소로의 대피유도(보행지원)를 누가 어떻게 할지 사전에 본인에게 전달하여 결정해둔다.
- 점화나 촉수화, 지문자, 손바닥에 글씨 쓰기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대피소 등으로 유도한다.
- 약간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지원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외톨이가 되었다는 불안을 느낄 수 있으므로,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등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 언어장애자(실어증 등)

- 수화 또는 문자정보로 상황을 설명하고 대피소 등으로 유도한다(필기구 등을 준비한다).

○ 지체장애인

- 자력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휠체어나 환자운반카 등의 이동용구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용구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들것·리어카를 사용하거나 업어서 대피시킨다.

○ 내부장애인

- 평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확보 및 의약품을 휴대한다.
- 자력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휠체어나 환자운반카 등의 이동용구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용구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들것·리어카를 사용하거나 업어서 대피시킨다.

○ 지적장애인

- 혼자 있을 때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는, 긴급하게 보호한다.
- 피해 상황이나 대피소 등의 위치를 짧은 단어나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유도한다.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이 진정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신장애인

- 피해 상황이나 대피소 등의 위치를 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무리가 없는 방식으로 유도한다.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내어 기분이 진정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고차뇌기능장애인

- 피해상황이나 대피소 등의 위치, 행동요령이나 중요한 설명·예정이 기재된 메모를 전달하고, 그림·지도·문자 등을 조합하여 유도한다.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이 진정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묻더라도, 반복하여 설명한다.
- 길이나 건물 안에서 헤매는 경우가 있으므로, 목적지까지 동반하는 등 필요한 유도를 행한다.
- 부상을 입었으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의 주된 증상뿐만 아니라, 신체상황 등 주변에서 청취하는 등 잘 확인한다.

○ 발달장애인

- 사전에 대피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행선지, 이동 소요시간, 동행하는 사람 등에 대해 설명한다.
- 앞으로 일어날 일(할 일, 갈 곳 등)이나 행동요령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말로 확실하게 전달한다.
- 한꺼번에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대화한다.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 휠체어나 환자운반카 등의 이동용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 평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확보 및 의약품을 휴대하도록 철저히 주지시킨다.

○ 치매노인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이 진정되도록 유의하며 지원한다.

○ 임산부

- 행동 능력은 떨어지나,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다.
- 대피 중의 생활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피유도가 필요하다.
- (대피소에서의 유의점)
  - 의료보험 서비스의 제공이나 심리지원 대책 등이 필요하다.
  - 충분한 영양(영양식품 등)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거실의 온도를 조정(신체를 차갑게 하지 않도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부록 18 선박사고 발생 시 대피시설

□ 위치 및 장소

- 여수광양항 낙포부두 현장 안전감독관실

\* 소파 및 냉난방기 등 구비 완료



대피소 외부



대피소 내부

**소관 부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난안전실**

연락처

전화) 061-797-4480

팩스) 061-797-4494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